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法學碩士 學位論文

東北亞海域에서의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of the North-East  
Asian Sea



2015年 08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海洋政策學科

朴 大 和

本 論文을 朴大和의 法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印)



委員 (印)

委員 海 洋 大 學 校 (印)

2015年 06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 목 차

그림 목차 .....	iii
Abstract .....	iv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b>제2장 한국과 주변국의 해양경계획정 현황 .....</b>	<b>5</b>
제1절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현황 .....	5
제2절 한국과 일본 간의 해양경계획정 현황 .....	6
I. 해양경계획정 원칙 .....	6
II.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응방안 .....	8
제3절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현황 .....	21
I. 해양경계획정 원칙 .....	21
II.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응방안 .....	23
<b>제3장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검토·분석 .....</b>	<b>36</b>
제1절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 .....	36
I. 사실관계 .....	36
II. 판결내용 .....	38
III. 검토·분석 .....	44
제2절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 .....	46
I. 사실관계 .....	46

II. 판결내용 .....	47
III. 검토·분석 .....	56
제3절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 .....	59
I. 사실관계 .....	59
II. 판결내용 .....	60
III. 검토·분석 .....	68
제4절 페루와 칠레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 .....	71
I. 사실관계 .....	71
II. 합의된 해양경계선에 대한 판결 .....	72
III. 해양경계선의 방향 및 결론 .....	75
IV. 검토·분석 .....	78
제4장 양자협정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 사례 .....	81
제1절 중국과 베트남 간의 해양경계협정 .....	81
I. 사실관계 .....	81
II. 협정의 주요내용 .....	82
III. 검토·분석 .....	84
제2절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의 해양경계협정 .....	90
I. 사실관계 .....	90
II. 협정의 주요내용 .....	92
III. 검토·분석 .....	93
제5장 동북아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방안 .....	96
제1절 사법기관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해결 방안 .....	96
I. 해양경계획정의 방법 .....	96
II.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	96
III. 관련 사정의 고려 .....	98

제2절 양자협정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해결 방안 .....	103
I. 어업획정 .....	103
II. 해양경계협정 .....	105
제6장 결론 .....	107
참고문헌 .....	111

## 그림 목차

<표 1> 경계획정선(Black Sea) .....	46
<표 2> 경계획정선(니카라과 v. 콜롬비아) .....	58
<표 3> 경계획정선(방글라데시 v. 미얀마) .....	68
<표 4> 경계획정선(페루 v. 칠레) .....	76
<표 5> 경계획정선(중국과 베트남) .....	85
<표 6> 경계획정선(노르웨이와 러시아) .....	94
<표 7> 한국과 중·일의 어업협정 .....	104

# A Study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of the North-East Asian Sea

*by Park, Dae-hwa*

*Department of Maritime Law and Policy*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Abstract

Those countries located in the Northeast Asian sea have not agreed to the maritime security and boundaries and tried to set it saying their own claims. As the law of the sea develops, the principle of maritime security and boundaries has changed from natural extension to distance and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related countries become able to calculate the reserves through researches. Also, those countries located in the Northeast Asian sea are trying to keep their national security based on stronger military power from a rapid economical growth.

Like this, the maritime security and boundaries is necessary through peaceful negotiations for the peace of the Northeast Asian sea as their concerns are getting complex on the sea as time goes.

For the maritime security and boundaries, there are two solutions; the first one is to solve through the machinery of law

and the second one is to solve through conversation of related countries. Solving through the machinery of law is an extreme measure chosen when it cannot be solved through conversation and the agreement is to make the security and boundaries agreement through efforts of accomplishing their own demands.

Those countries located in the Northeast Asian sea area have negotiated for a long time by many people on the maritime security and boundaries and their results have been showed in the Joint Continental Shelf Agreement and the Fisheries Agreement. If any country tries to make the maritime security and boundaries ignoring agreements made by long time negotiations as in the above, it could cause more severe disputes as all the problems that each country claims will show up to the surface eventually.

In leading cases of the machinery of law, they respected past agreements made by related countries and made the maritime security and boundaries. In cases of both countries' agreements, they respected the existing agreements and decided the boundary by choosing the middle line that each country claimed. Most of all, the boundary agreement through agreements of both countries considered related countries' benefits fairly as much as possible.

Thus, the maritime security and boundaries agreement that countries around the Northeast Asian sea area should be made by a peaceful way and should be based on the agreement made by a long time negotiations.

As the conclusion, surrounding countries of the Northeast Asian sea should made the boundaries agreement for the sea that each country does not agree and the method should follow the recent trend of according to the agreement made by the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I.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동북아해역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해양경계확정을 맺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이루고자 주변국과 어업협정을 맺었으나 배타적경제수역내에 존재하는 해저자원 개발 및 그를 위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각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선의 중첩해역에서 침예한 대립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해당 해역에서의 자원개발은 경계확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동북아해역에 해양과 접한 국가들은 그들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바다의 국제법으로 여겨지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해석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해양에 대한 정책은 해양 관할권 확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보다 미리 인식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 넓은 해역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바다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의 상당부분을 간직하고 있으며, 양 또한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해수 그 자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인 셈이다. 더욱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2%에 해당하는 것이 바닷물이고, 우리가 육지에서 이용하는 지표수는 0.1%이며 지하수는 0.6%에 불과하다.<sup>1)</sup> 물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은 물 없이 살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 힘입어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물 소비량도 늘어나게 되어 현재 유엔연합에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다에는 바닷물 이외에 별다른 자원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바닷물 외에도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해조류, 어류, 갑각류 등 생물자원도 풍부하여 미래 수산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바다는 위에서 언급된 물과 생물자원을 가지면서도 해저에는 무생물자원, 즉 석유, 천연가스, 메탄수화물과 같은 화석연료와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을 다량 함유한 망간단괴, 망간각 그리고 구리, 아연, 금, 은 등을 다량 함유한 해저열수광상 등이 있다. 또한 모래, 자

1) 김용서·강성현, 「해양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안산:계백북스, 2012.), 18~19쪽.

갈 등의 골재와 얇은 바다의 표사광상에 분포하는 금, 백금, 주석 그리고 해수 중에 녹아 있는 우라늄, 리튬, 중수소, 붕소 등도 비생물자원에 속한다.<sup>2)</sup> 이렇듯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바다가 다량의 자원의 보고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비교적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자원이 풍족하지 못하여 경제의 상당 부분이 수출로서 만들어 지고 수출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가 경제의 흥망이 결정된다. 일제 하 식민지 시대를 겨우 버텨낸 우리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6·25전쟁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후 국가발전에 힘을 쏟는 나머지 경제 발전에 있어 해양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그러나 1969년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ECAFE)가 황해와 동지나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의 해양에 대한 관심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빠르게 해양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매년 해양에 투자되는 자원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sup>3)</sup>. 특히 관련 해역에 대한 선행조사 및 자료수집, 해양자원에 대한 조사 작업 활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시행되어져왔다.

우리의 서쪽에 위치한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여러 나라와 해양경계 획정<sup>4)</sup> 및 도서영유권<sup>5)</sup> 분쟁에 휩싸여 있으며, 경제발전이 힘입어 더욱 그들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광활한 영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의 그들의 활동 범위를 확보하고자 그들만의 논리로 우리나라와의 해양경계획정에서는 더 많은 바다를 주장하고 있으며, 도서영유권 분쟁에서는 그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섬나라인 일본은 영토에 비하여 광대한 바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별반 다름없이 그들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sup>6)</sup> 우리나라와 맺은 한일대륙붕협정<sup>7)</sup>은 2028년이면 무효가 된다. 일반인에게도

2) 김용서·강성현, 앞의 책, 22~23쪽.

3)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에서 계획한 제2차 해양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관련 예산은 2013년도 1조 3,176억엔에 이른다.(2012년 예산액 : 1조 3,320억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일본 제2차 해양기본계획”, 정책연구소 정책자료 13-02(2013.5.), 93쪽.

4) 일본-중국간 해양경계획정 및 대륙붕경계획정 분쟁, 한국-중국간 해양경계획정 및 대륙붕경계획정 분쟁

5) 일본-중국간 센카쿠 도서 영유권 분쟁, 중국-기타5개국간 Sparty 도서 영유권 분쟁

6) 일본의 영해와 경제수역 면적은 1996년 07월 20일 이전에 각각 38만km<sup>2</sup>/360만km<sup>2</sup>이었으며, 1997년 01월 01일 직선기선 선포 이후에는 각각 43만km<sup>2</sup>/447만km<sup>2</sup>로서 기존 보다 각각 5만km<sup>2</sup>/87만km<sup>2</sup>의 해역이 늘어났다. “일본이 97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포함한 까닭”, OhmyNews,

잘 알려진 7광구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치며 우리나라와의 경계획정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태도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에 대한 관심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1998년 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 체결 당시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논란을 뒤로 한 채 현재 양국과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sup>8)</sup> 진행 중에 있다.

미래의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며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원빈국이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자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바다는 매우 중요한 미래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래자원을 가진 바다를 두고 우리나라와 주변국들 간에 진행 중인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각국의 주장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분쟁의 대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해양의 중요성과 잠재성은 이미 각종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해양의 중요성과 잠재성을 인식하고 천연자원의 보고인 해양자원의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과거에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주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인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우리의 국익과 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하며 주변국과의 평화적이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일 3국의 올바른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한·중·일 3국의 올바른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이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

2010.09.14.

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8)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중국과 16차례, 일본과 11차례에 걸쳐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논의의 성과는 없었으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중간선을 그어서 양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깃 섬이 뭔데···韓·中·日, 서로 먹겠다고”, 매일경제, 2012.09.21.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2장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의 현황 부분으로서 한·중·일 3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의 현황과 향후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검토·분석 부분으로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페루와 칠레 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라고 약칭함.) 및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라고 약칭함.)의 판결내용을 검토·분석한 후, 향후 한·중·일 3국 간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4장은 양자협정을 통한 해양경계획정의 해결 사례 부분으로서 중국과 베트남 및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의 해양경계협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분석한 후, 향후 한·중·일 3국 간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5장은 동북아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방안 부분으로서 상기의 검토·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동북아해역에서의 한·중·일 3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의 방향을 살펴본다.

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전체의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한·중·일 3국의 올바른 해양경계획정의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먼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내·외 해양법 관련 서적 및 연구 논문을 1차적 자료로 채택하여 검토·분석하고, 또한 ICJ 및 ITLOS의 판결 원문을 충실히 살펴보는 한편,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각종 전문지에 게재된 자료 등을 2차적 자료로 활용한다.

## 제2장 한국과 주변국의 해양경계획정 현황

### 제1절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현황

동북아해역에 위치한 우리나라와 그 주변국들은 1969년 유엔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황해와 동지나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해양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해저자원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륙붕에 대하여 동북아 각국이 설정한 경계선은 서로 중첩되어 있으며 그러한 경계선 설정에 대한 원칙 또한 서로 상이하였다. 우리나라와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국가로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가간의 갈등은 협약에 따라 평화적 절차, 즉 외교적 방법이나 사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국가는 해당 해역에서 해양경계획정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9)</sup>

우리나라는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일환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에 규정된 잠정협정(provisional arrangements)인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체결로 인하여 해양생물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이익보호 등을 해결하였다.<sup>10)</sup> 한중어업협정은 체결 당시 양국이 각각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제정한 상태에서 자국의 경제수역 관련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시작되어 협상의 결과로서 체결된 협정이므로 본래 목적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 획정이라 하겠다.<sup>11)</sup> 1997년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일본수산업계의 반발<sup>12)</sup>과 당시 집권 정부의 차기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본의 통고에 의

9) 이창위,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제17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2009.11), 87쪽.

10)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08월 03일 서명되었고 2001년 06월 30일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일본과의 한일어업협정은 3년간의 교섭 끝에 1997년 09월 25일에 타결되었다.

11) 한·중어업협정에서 해당 수역은 각각 배타적경제수역,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 등 4종류로 분류되었으며, 이중 과도수역은 2005년 06월 30일자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포함되었다.

12) 일본에게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본의 어업전과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로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일본 연근해 어장 남획 우려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였다. 김현수, 「해양법총론」(서울:청목출판사, 2010), 138쪽.

해 체결되었다. 동해에서는 대륙붕제도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고 해저지형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양국의 갈등은 없었다. 다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무리한 주장으로 인하여 주변해역의 경계획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간수역을 두었으며, 그 안에는 독도가 포함되었다. 해당 수역은 크게 배타적어업수역과 중간수역으로 나누어지며, 중간수역의 설정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다소 넓은 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은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각국의 해양 관련 기관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자국의 해역을 지키기 위한 순시선 및 해상항공기의 감시 강화, 해당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의 시행 등이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해당 해역에서 상당한 투자를 앞세워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통하여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sup>13)</sup>

## 제2절 한국과 일본 간의 해양경계획정 현황

### I. 해양경계획정 원칙

우리나라와 일본이 해양경계획정을 맺어야 하는 해역은 동해와 동중국해이다. 두 해역에서 양국의 경계획정에 대한 원칙은 서로 다르며 그로 인하여 경계획정에 어려움이 있다. 각국이 주장하는 원칙을 살펴보면, 한국은 동해와 황해에서 대륙붕에 대하여 중간선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입장과 같다. 따라서 동해에서 특별한 걸림돌이 없으면 한국과 일본이 해양경계획정을 맺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

13) 중국은 1970년~1980년대 초에 대규모 해양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오키나와 해구와 남중국해 중부 대륙사면에 대하여 지구물리/지형/해양퇴적물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991년~1995년도 사이엔 대륙붕과 인근해역을 탐사하여 자원평가를 하였으며, 1996년~2001년도 사이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탐사를 수행하였다. 2006년~2010년도 사이엔 해양경계지역에 대하여 유전/가스전/메탄하이드레이트/심해저 자원탐사 개발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본은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하여 매년 막대한 해양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일본의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따르면 3차원물리탐사선에 의한 석유/가스부존조사(13,391백만엔),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리/제공체제 정비(1,073백만엔), 대륙붕 연장신청 관련 대응(21백만엔/2007년도엔 11,661백만엔), 해양안전 해상방위력 유지/순시선정/항공기 정비(240,981백만엔), 이도 보전(6,875백만엔) 등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양희철, “한반도 주변해역 경계획정 추진 방향”, 한국해양조사협회 발표자료(2010.11), 11쪽.

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하여 그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독도와 울릉도 중간을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의 해양 경계획정이 쉽지 않다. 현재 한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화 시도에 대하여 독도는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니며 한국의 영토임을 명백하게 알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포기한다면 동해에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원칙이 양국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다른 해역에 비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해역이다. 다만 동해에서 기점의 차이가 존재하며 한국은 독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을 주장하며,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다.<sup>14)</sup>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다.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 한국은 동 해역에서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륙붕의 자연연장설을 주장하나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를 부인하고 동해와 같은 중간선원칙을 주장한다.<sup>15)</sup>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장은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대륙붕의 자연연장을 인정하는 판결의 영향을 받았다. 이 판결은 1969년 이후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영향<sup>16)</sup>을 미쳤으며 그 중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에도 나타난다. 동 협정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서게 되었다. 하지만 동 협정은 2028년에 기한이 다하며 현재의 경계획정의 추세는 그 협정의 체결당시와 비교하면 한국에게 다소 불리한 형세이다.

14) 우리나라는 초기에 울릉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주장하였으나, 2006년 06월에 입장을 바꾸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울릉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을 주장한 이유는 독도를 우리나라 측 수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독도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암석으로 간주하여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이창위, “일본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국제법학회 논총」 제45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2009.08), 203~208쪽.

15) 일본은 국내법인 영해법과 어업수역에 관한 법률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등 각 해역에 대한 경계획정에는 외국과의 합의에 따라 중간선 이외의 선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선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나타나며, 동 회의에서 일본은 등거리·중간선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같이 동 원칙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해 경계를 획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국가도 중간선 이원의 범위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Satya N. Nandan and Shabtai Rosenn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82 A Commentary, Vol II, 1993, pp.956~960.

16) North Sea Continental Shelf, ICJ Reports 1969.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sup>17)</sup>에 잘 나타나 있다. 동법에 따르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라 하였으며, 대항하거나 인접한 국가와의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200해리의 거리의 중요성 보다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고 하였다.<sup>18)</sup> 반면 일본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개념은 별반 차이가 없으나, 주변국과의 중첩해역이 있을 시에는 중간선까지의 해역이 자국 해역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중간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sup>19)</sup>, 이는 곧 두 지역에 대한 단일경계선 획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원칙은 경계획정의 분쟁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례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는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왔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선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여 동 협약 상에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명시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sup>20)</sup>. 그러나 동 협약 상에 경계획정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기관들은 해양경계획정에 관련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관습법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sup>21)</sup> 해양경계획정의 경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육지의 자연연장설과 중간선원칙이 널리 적용되었으나 현재의 추세는 형평의 원칙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변국과의 동중국해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국제사법기관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널리 인정 받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경계획정관련 규정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I.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응방안

17) 1996. 8. 8. 법률 제5151호, 1996. 9. 10. 시행, 대통령령 제15, 145호.

18)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

19)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20) 三好正弘, 「日韓大陸棚共同開發協定と國連海洋法條約」,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89호, 국제법학회(2001.06), 329쪽.

21) 백진현,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변천과 한반도 주변 영역의 경계 문제」, 「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91.04), 29쪽.



## 1.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단일경계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각국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경계선을 설정할 경우 두 국가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관계로 서로 중첩되는 해역이 나타나며, 특히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는 대륙붕에 대한 육지의 자연연장설을 주장함으로써 200해리 이원의 영역을 주장함에 따라 일본과의 입장차이가 있다. 문제는 설령 양국 간의 경계획정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일본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가 다름에 따라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관할국가 가 서로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두 국가간의 관할규제로 인하여 관리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기 두 제도에 대하여 그 경계를 달리 주장하는 한국과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 일본이 체결한 1974년 한·일 대륙붕협정에서는 동중국해에서 일정 지역에 대하여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였다. 1974년 한·일 대륙붕협정은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의 영향으로 대륙붕 경계획정 시 육지의 자연연장설과 중간선원칙을 같이 적용하여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많은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받아들이고 육지의 자연연장설의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일본은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중간선원칙을 고수하고 단일경계선을 주장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해에서는 일본의 중간선원칙에 따른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단일경계선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입장이 없으나 동중국해에 대하여는 육지의 자연연장을 강조하며 일본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중간선원칙과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단일경계선 주장을 부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원칙은 일본에게는 육지의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중국에게는 일본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중간선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동중국해는 주변국 모두의 해양경계선이 중첩되는 해역으로 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이 아닌 중첩국 모두의 해양경계선이 정해져야 하는 바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원칙의 주장은 주변국으로부터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장처럼 단일경계선이 아닌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이 달리 설정될 경우, 주변국과의 경계선 획정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에 의한 경계선 설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을 만드는데 참가한 많은 국가들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이 서로 일치해야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체결된 국가 간의 해양경계협정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경계선을 채택하고 있다.<sup>22)</sup> 따라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경계획정을 위하여 주변국들과 단일경계선 획정을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해역의 평화와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다른 가입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세라 생각된다.

## 2. 직선기선

영해기선(baseline)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실제로는 모든 해양수역의 경계선이 출발하는 기준선이다.<sup>23)</sup> 영해기선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대륙적해도에 표시된 연안의 저조선인 통상기선과 해안의 형태나 특성에 따라 영해기선으로 설정되는 직선기선<sup>24)</sup>이 있다. 일본은 1996년 6월에 개정·공표된 자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관련해역에 직선기선을 적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직선길이는 최대 63해리로 제한하였고, 직선기선의 방향과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과의 각도는 일반적으로 20°이내에서 제한하였으며, 섬과 본토와의 거리는 최대 60해리 이내로 제한하였다.<sup>25)</sup> 그러나 일본의 위와 같은 직선기선 설정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직선기선의 내용과 상이하므로 일본의 자국 법에 따른 직선기선의 설정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sup>26)</sup>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되는 직선기선의 적용으로 기존보다 영해면적은 5만km<sup>2</sup>증가하였으며, 직선기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선이 되는 까닭으로 동 수역 또한 87만km<sup>2</sup>증가하였다.<sup>27)</sup>

무엇보다도 일본의 직선기선 설정 방식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1항인 해안선이 길게 굴곡하고 돌입하거나 인근의 해안에 연하여 일련의 도서가 산재하는 경우에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2항부

22) W. Langeraar.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Areas: A New Approach",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17 No.3(1986.07.), p.393; K. P. Beauchamp. "The Management Function of the Ocean Boundaries". *San Diego Law Review*, vol.23(1986.), p.23.

23)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총론), 30쪽.

24)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직선기선>

25) 김현수, 「해양법각론」 (서울:정목출판사, 2010), 33쪽.

26)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각론), 36~42쪽.

27) "일본이 97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포함한 까닭", OhmyNews, 2010.09.14.

터인 부차적 요건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마치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직선기선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차적 요건을 성실히 준수하면서도 그 부차적 요건이 주변국에게 인정되기 위해선 필수요건인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1항을 따르지 않는 일본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선기선의 설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가입국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와의 해양경계획정 협정시에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다.

일본의 직선기선 설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선기선 설정 전의 과정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직선기선과 만구폐쇄선 설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과도한 직선기선의 설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만(Bays)이라 함은 그 해안이 단일국가에 정하는 만에 한하여 적용되며 뚜렷한 굴곡으로서 그 입구의 넓이에 비하여 내륙해를 포함할 정도로 굴곡하고 해양의 단순한 굴곡이상인 것을 말하며 만약 굴입 면적이 그 굴입의 입구를 연결한 선을 직경으로 한 반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다.<sup>28)</sup>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을 만이라 하여 만입 폐쇄선을 그었으며<sup>29)</sup>, 이를 직선기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정되어야 할 해역보다 더 넓은 해역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부적절한 직선기선의 설정으로 인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적합한 직선기선을 설정하여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원칙을 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한 경우보다 더욱 넓은 해역이 일본 측 해역에 포함되며 더욱이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와 중첩되는 해역에서 경계선이 우리 쪽으로 상당히 이동하게 된다.<sup>30)</sup>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 시에 우리나라의 직선기선이나 만구폐쇄선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일본의 타협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확보한 일본의 부당한 직선기선과 만구폐쇄선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적합하도록 하여 부당한 직선기선을 재설정시켜 해양경계획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 3. 도서와 비도서

28) 유엔해양법협약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29)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각론), 36~42쪽.

30)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각론), 39쪽.

경제적, 군사적<sup>31)</sup>으로 많은 가치를 지닌 독도<sup>32)</sup>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함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섬의 법적 지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역사적 기록물에는 독도를 삼국사기의 신라 이사부 군주의 우산국 정복 기록(서기 512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미국의 영토로 나타내며, 일본의 고지도에서도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표기하였다.<sup>33)</sup> 다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편입되기 직전부터 일본의 고지도에 독도를 포함하는 해역인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의 패망 후 몇몇 서류상 반환 내용에 독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자료가 충분히 존재하고 1997년 신한·일 어업협정 당시 중간수역에 포함된 독도가 울릉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에서 우리 측 해역 안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양경계선 획정 시 유리한 입지 확보를 위해 이용하고자 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7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선의 기준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인 까닭으로 우리의 영토로 여기는 독도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여기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 하겠다. 이후 2006년 08월 우리 정부는 독도의 중간수역 포함 논란을 뒤로 한 채 이를 무마시키기라도 하듯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천명하였다.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으니 1997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에 독도가 위치한 만큼 1997년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2006년 우리정부의 배타적경제수역 범위 설정에 독도 기점 천명은 일본에게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겠으며, 1997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존속하는 한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관련된 법적 입장은 결정적으로

31) 독도의 경제적인 면에서 에너지원 확보, 풍부한 어족자원, 해양과학 전초기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군사적인 면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를 억제하는 전략적 가치와 해양법상 도서인 독도는 12해리 영해를 가지므로 우리나라의 작전수역과 방공식별구역의 확대에 국가 방위에 유리한 이점을 제공하는 군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진호, 「독도 영유권 분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경기도 과주:한국학술정보(주), 2011), 30~43쪽.

32) 독도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1-96번지(101필지)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울릉도와의 거리는 87.4km, 울진군 측면에서는 216.8km이다. 해도상 기점으로 독도에서 오키군도까지 최단거리는 157.5km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East Sea)에 위치한다. 총면적은 187,554㎡로 동도 73,297㎡, 서도 88,740㎡, 89개의 돌섬·암초 25,517㎡로 이루어져 있다. “울릉군지”(2007), 울릉군청, 60~61쪽.

33) 김현수, 「세계도서 영유권 분쟁과 독도」(서울:연경문화사, 2009), 381-384쪽.

훼손된 채 남아 있게 되었다.<sup>34)</sup> 그러나 우리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sup>35)</sup> 역사적 근거 자료와 식민지 시대 전후의 일본의 부당한 독도 편입을 미루어 볼 때 독도는 분명 우리의 영토이며, 정부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04월 18일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구속력 있는 강제 절차’인 동 협약 제2절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어느 국가가 제소를 한다하더라도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등에서 재판을 받을 법적 의무는 없다.<sup>36)</sup>

따라서 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의 영토이므로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논쟁 보다는 독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양국 간에는 독도 뿐만 아니라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지 의문인 섬들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sup>37)</sup>라 하겠다. 오키노토리시마는 한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시 중첩해역 발생의 기점으로 작용하지 않으나 이를 완전한 섬으로 인정할 시 섬 주변에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으로 모든 국가가 공해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섬의 완전한 법적 지위의 향유는 곧 200해리 바다의 향유를 의미하는데<sup>38)</sup> 그렇다면 독도는 법적으로 완전한 섬일까?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는 분명 해양경계획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까닭은 현재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가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섬에 대한 조항이 애매모호 하여 상황에 따라 혹은

34) 이진호, 앞의 책, 413쪽.

3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국가 기관에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등이 있다.

36) 김현수, 앞의 책(세계도서영유권 분쟁과 독도), 391쪽.

37) 오키노토리시마 섬은 16세기 유럽인에게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그 최초 발견자의 이름을 따라서 더글라스 암초(Douglas Reef)라고 명명되었다. 1931년, 세계 2차 대전 기간 중에 일본 제국은 오키노토리시마 섬을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하였다. 오키노토리시마는 히가시코 섬(東小島, 면적: 1.6m<sup>2</sup>), 기타코 섬(北小島, 면적: 6.4m<sup>2</sup>), 미나미코 섬(南小島, 인공 환초)으로 구성되며 환초 보강 공사를 1987년부터 시작하여, 히가시코 섬과 기타코 섬은 콘크리트로 가장자리를 보강 공사 및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히가시코 섬과 미나미코 섬 사이의 산호초 지대에 헬기 착륙장을 가진 구조물이 설치되었다. <http://ko.wikipedia.org>.

38)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의 정의)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sup>39)</sup> 섬에 대한 적용에 있어 과거와 현재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겠다. 2006년 우리 정부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을 주변국에 천명하였으나, 그 이전에 일본과 맺은 신한·일 어업협정에서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2006년 이전에는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적용에 있어 섬이 아닌 암석으로 여긴 것으로 보이며, 2006년 독도 기점 설정을 천명을 계기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향유하는 섬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독도에 대한 문제는 영유권 분쟁은 없다 치더라도 마주보고 있는 두 국가의 거리가 400해리 이내의 상태에서 독도가 섬으로서 200해리 경제수역을 가지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인정되거나 혹은 도서가 아닌 비도서로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것이다.

독도와 비슷한 상황은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해역과 중첩되지 않는 일본 남쪽 태평양 지역에 오키노토리시마를 비롯하여 미나미토리시마<sup>40)</sup>도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유지되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예로 들겠다. 오키노토리시마는 1931년부터 일본이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침식작용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인간이 거주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경제생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설정은 불가하다고 하겠다. 다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영해는 인정된다고 하겠다.<sup>41)</sup> 일본 정부는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따르는 도서로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다.<sup>42)</sup> 이는 오키노토리시마와 비교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상 도서로서 더욱 설득력이 있는 독도에 대하여 암석으로 여기고 최근에서야 도서로서 주장하는 한국정부와 대조적이라

39)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도서제도)

40) 행정상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東京部 小笠原村)에 속하며 도쿄의 남동쪽 1,800km의 거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1.51km<sup>2</sup>이다. 일본의 최동단의 섬으로 유명하며 좌표는 북위 24°16'59" 동경 153°59'11"이다. 일본의 섬 중 유일하게 일본해구(日本海溝)의 동쪽에 있으며, 역시 유일하게 태평양 플레이트 상에 있다. <http://ja.wikipedia.org/wiki>

41) 박찬호, “섬의 국제법상 지위 : 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2002.10.), 37쪽.

42) 중국과 한국은 이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다.

하겠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자세가 과연 시사하는바가 무엇일까 고민해 본다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독도를 도서로 해야 할지 암석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즉 독도를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따르는 도서로 한다면 분명히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주장도 합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동해에서 조금이나마 더 넓은 해역을 얻으려다가 태평양 일부의 넓은 해역을 일본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그 해역에서 조업 가능한 막대한 어획량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한 예로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를 비롯하여 한국정부의 2006년 06월 독도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 기점 설정에 대응하여 과거에는 동 수역의 기점 설정에서 배재하였던 토리시마<sup>43)</sup>에 기점 설정을 한다고 하였다.<sup>44)</sup> 만약 토리시마에 대하여 동 수역의 기점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동중국해에서 경계선이 다소 우리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해역이 줄어들게 된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독도를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따르는 도서로서 주변으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향유한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동중국해에서 일본은 동 해역에서 암석인 섬들에 대하여 200해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상 완전한 도서로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이익일까? 답은 부정적이다. 결과를 예측하자면 동해에서는 기존에 일본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일본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우리의 해역이 좀 더 확보되겠지만 동중국해에서는 경계선이 한국 쪽으로 이동하여 기존의 해역을 잃게 될 것이다.<sup>45)</sup> 더욱이 일본이 주장

43) 일본 큐슈의 서쪽에 위치한 무인도로서, 주소는 나가사키현고의 토시토리시마이고 좌표는 북위 32°14' 37", 동경 128°06' 16"이다. 큐슈의 서쪽에 위치한 고토열도의 남쪽 섬 후쿠에로부터 남서 약 60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북암(北岩), 중암(中岩), 남암(南岩)의 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면적은 50m<sup>2</sup>에 불과하다. 바다낚시터로 유명하지만 날씨나 파도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대략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서 고토열도에서 낚시를 위한 배가 운항하고 있다. <http://ja.wikipedia.org/wiki>.

44) 이창위, 앞의 논문(일본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216쪽.

45) 일본이 한국측의 독도 기점 주장을 용인하고 한국이 일본측의 토리시마 기점 주장을 용인하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보다 약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양 도서를 다 무시할 경우에 비해 대략 한국은 2만km<sup>2</sup>를 얻는 반면 일본은 3만6천km<sup>2</sup>의 경제수역을 얻는다고 한다. 이창위, 위의 논문, 216쪽.

하는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해역의 공해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을 받아들임으로서 그 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어업자원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69년 유엔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므로<sup>46)</sup>, 동 해역에서의 해양경계선 획정 시 경계선의 양보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자원 확보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기점으로의 설정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적극적인 기점 설정에 대한 주장 보다는 울릉도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독도를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두도록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이익이라 사료된다.

#### 4. 한·일어업협정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최초의 한·일어업협정<sup>47)</sup>을 맺었으며, 동 협정은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동 협정에서 해당 수역은 연안주의의 어업전관수역과 기국주의의 공동규제수역으로 나뉘었다.<sup>48)</sup> 동 협정의 주요 설정 수역을 살펴보면,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서 12해리까지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업전수역과 관할수역 밖의 주변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여 동 수역에서는 주요 어업의 어선 규모, 어로기(漁撈期), 최고 출어어선 수, 집어등(集魚燈)의 광도(光度), 총어획기준량 등이 규제되며, 이외에 공동규제수역 외연(外延)인 동경 132° 서쪽으로부터 북위 30° 이북에 공동자원조사 수역이 설정되었다.<sup>49)</sup>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한국의 어로 기술이 발전하고 어선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원양어선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 어선들의 조업 기술과 방법의 발달로 일본근해에서의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 자국의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없다고 여기고 새로운 어업질서를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일

46) 이석용, “우리나라와 중국간 해양경계획정”,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2007.08), 260쪽.

47)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최원목, 「국제법기본자료집」(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443쪽.

48) 정갑용 외,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 82쪽.

49) 이진호, 앞의 책, 392쪽.



본 의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한 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동 협약에 따르는 새로운 어업질서의 확립을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다.<sup>50)</sup> 이러한 일본의 태도변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에 따라 공해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추세가 반영되어 있으며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을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sup>51)</sup> 현실에 맞추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국내법에 적용 또는 개정해야 하였다. 그리하여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고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어선의 남획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일본은 한국에 교섭을 요청하게 되었고 한국은 교섭에 응했다. 교섭 과정에서 양국은 전관수역의 범위를 34해리, 35해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와 동해에서의 동쪽 한계선을 135도, 136도 중 하나를 결정하는 문제만<sup>52)</sup> 남겨두었으나 일본은 협상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1997년 말 결렬된 한일어업협상을 마지막으로 1998년 01월에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본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 본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sup>53)</sup>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협정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으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자세와 양국 간의 이견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협상 결렬 통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sup>54)</sup>

한국은 협상 결렬로 인하여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곧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았다.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관리 하에 있었던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협정 종료 통보에 보복조치로 일본 주변수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어업자율규제 조치를 정지시켰으나 그 해 1998년 07월 02일 동 조치를 재개하였다. 상기 조치의 재개는 그 당시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하에서 외환위기 탈출을 위해서

50) 박찬호·이석용,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6.03), 6~95쪽.

51) 유엔해양법협약에 한국은 1983년 03월 14일에 서명, 1996년 01월 29일에 비준하였으며 일본은 1983년 02월 07일에 서명, 1996년 06월 20일에 비준하였다.

52) 이석우 외,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학영사, 2005), 37~39쪽.

53)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10조 2항

54) 사실 일본의 어업협정 결렬 당시 한국은 국가 경제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관리체제에 있었으며 그러한 위기의 결정적 원인 제공은 일본이 1997년 김영삼 정부와 어업협상 과정 중 양국 간의 의견대립이 심할 때 그해 말 일본의 단기자금 회수조치가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을 하게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한국에서 바라볼 때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동보다 더 비난의 대상이라 하겠다.

는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어업자율규제조치의 정지 후 1998년 01월 일본의 사토오 교오코 자민당 국제 어업문제 특별위원장<sup>55)</sup>이 한국을 방문하여 어업자율규제조치의 정지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 당시 외환위기를 등에 업고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일본에 보복조치로 행한 어업자율규제조치의 정지를 철회하였다. 그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경색되었으나 1998년 10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듯이 진행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신한·일어업협정은 양국에 의해 1998년 09월 24일 타결되고, 1998년 10월 08일 가서명되었다.<sup>56)</sup>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해에 중간수역을 설정하였으며, 양국 연안의 전속적 관할수역의 범위는 일본의 주장대로 35해리<sup>57)</sup>로 타결되었다.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은 동경 150° 30'이며 서쪽 한계선은 131° 30'으로 하였으며<sup>58)</sup>, 대화퇴의 서쪽 부분 1/3 정도를 북쪽한계선에 포함시켰다. 중간수역에서의 조업단속은 각 해당국의 국적선 만을 규제하기로 함으로서 기국주의를 적용하였으며,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sup>59)</sup> 동중국해에도 동해와 유사한 중간수역이 설정되었으며 적용규정 또한 동해에 설정된 중간수역의 적용규정과 내용이 같다.<sup>60)</sup>

위와 같이 동해와 동중국해에 설정된 중간수역은 현재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동해에서 중간수역 내에 독도가 위치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하겠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며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라고 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태도는 과연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

55) 1998년 01월 한일 간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동 협정에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주장을 내세운 대표적인 인물이다.

56) 1997년 말까지의 한·일간 어업협력실무협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 토의하자고 하였으며(이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 잠정적합의수역(35번 점 이북)을 설정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상태였다.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서울:㈜북21, 2004), 429쪽.

57) 일본의 1965년 한일어업협정 종료를 통보 받은 한국은 그 후 일본과의 교섭에서 관할수역의 범위를 24해리로 하자고 하였으며 이를 일본이 수긍하지 아니하고 35해리를 고집하여 교섭의 진전이 없자 양보하여 34해리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제안 역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최종 협정에서 또 한 차례 양보하여 35해리로 타결하게 되었다.

58)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신한·일어업협정) 제9조.

59) 위의 협정 부속서I의 제2항.

60) 위의 협정 부속서I의 제3항.

지 않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교섭 진행 과정 중에 양국 간에 교섭 진전을 높이기 위하여 해역의 일부를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교섭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의 모습은 협상과정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 내에 위치시키는 것은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공동규제수역과 공동자원조사수역 내에 울릉도와 독도를 위치시킨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 하겠다.<sup>61)</sup> 물론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동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이 적용대상<sup>62)</sup>이고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어업 이외의 문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63)</sup> 그러나 협정 체결 전까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였던 일본이고, 양국이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국내법에 도입시킨 후 맺는 협정에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동 협정을 체결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본다.<sup>64)</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 내에 독도를 포함시켜 한국의 독도 영유권 훼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65)</sup> 이 논란의 대상이 과연 한국과 일본의 해양경계획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 고려하여야 한다. 더욱이 동 협정은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염두하고 체결하였으며, 협정 내용이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내용과 유사<sup>66)</sup>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결정에 미칠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과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후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고려하여 경계선 획정을 시도하였으나, 일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며, 배타적 경제획정은 뒤로한 채 어업협의를 별도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sup>67)</sup> 이렇듯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은 한국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으

61) 신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수역 내에 독도가 위치하는 것이 한국의 영토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려했다면 중간수역 내에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언급해 두었다면 한국의 입장이 더욱 확실했을 것이다.

62) 위의 협정 제1조.

63) 위의 협정 제15조.

64) 1997년 말까지 한국과 일본 간의 어업협력실무협회의 진전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의 현상적 우위가 훼손되는 문제에 대한 아무런 보장조건도 확보하지 않고 일본 측 안(案)을 수용(受容)하였다고 한다. 김영구, 앞의 책, 429쪽.

65) 독도본부,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우리영토, 2007), 10~94쪽.

6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신한일어업협정) 제7조.

67) 김영구, 앞의 책, 427쪽.

며,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로 기술되는 교과서의 발행을 저지하지 않으며, 외교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경계선의 기준으로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를 주장하며 두 섬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sup>68)</sup>하고 있기 때문에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은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 획정은 어업협정을 배제하고 교섭에 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협정 내용 자체가 유엔해양법협약<sup>69)</sup>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에 대한 내용이 유사하고 협정 규정에도 중간수역을 제외한 협정수역은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sup>70)</sup> 한국은 독도에 대한 명확한 기술을 하지 않은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과거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종료 통보와 같은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은 양국 간의 교섭에 의해서 체결된 협정으로서 상대국의 의견 수렴없는 일방적인 종료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도 힘들뿐더러 수준 높은 외교적 자세도 아니라 하겠다.<sup>71)</sup> 설령 동 협정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양국은 협정 체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독도, 어업,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획정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한국 정부에 과제로 제시될 것이며 이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어야 함으로 양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시 원점부터 접근해야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획정에 있어서 한국이 현재 양국이 따르는 1998년 신한·일

68)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중국과 16차례, 일본과 11차례에 걸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논의의 성과는 없었으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중간선을 그어서 양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깃 섬이 뭇데...韓·中·日, 서로 먹겠다고”, 매일경제, 2012.09.21., 2014년 06월 13일 한국과 중국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中 해양경계획정 회담 3년 만에 재개”, 세계일보, 2014.06.13.

69) 유엔해양법협약은 2014년 09월 현재 가입국이 166개국에 이른다. 한국은 1996년 01월 29일에 일본은 1996년 06월 20일에 비준하였다. <http://www.itlos.org>.

70)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신한·일어업협정) 제2조 ~ 제9조.

71)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종료 통보는 그 당시에 한국과의 어업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한국 정부가 협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과의 다방면에 걸친 선린관계를 저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진호, 앞의 책, 392쪽.

어업협정의 내용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을 보면 한·일 중간수역을 제외한 해역에 대하여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sup>72)</sup>, 앞으로 양국은 중간수역에 대한 경계선 획정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동해와 동중국해에서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 획정은 해결되리라 본다.

동해에 설정된 중간수역의 문제엔 경계선 획정의 기점이 무엇인지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경계획정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상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향유할 수 없는 섬에 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일본의 해양정책을 고려하고 독도에 대한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를 따르는 섬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이 누릴 수 있는 해역을 비교하였을 때 독도의 영유권은 유지하면서 경계선 획정 시 독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Zero effect)<sup>73)</sup>를 적용하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중국해에서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을 따르는 섬일 경우 이에 대응하여 일본이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sup>74)</sup> 한국이 다소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 또한 Zero effect인 경우 동해에서 한국과 일본의 해역 배분차이가 가장 적어 양국이 가장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sup>75)</sup>

### 제3절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현황

#### I. 해양경계획정 원칙

72) 위의 협정 제2조, 제6조, 제7조.

73) 국가간의 조약과 국제재판소 판례등에 의하면, 양국의 육지영토 경계선 부근이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문제의 수역 중앙부에 위치하는 도서로 양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나 폐쇄해나 반폐쇄해 같은 좁은 수역의 중간선이나 인접국간 등거리선 설정 시 그 너머에 위치하는 조그만 도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계선에 대한 효과가 부정된다. 이 경우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해당하는 일종의 암석으로서(무인고도) 일본과의 경계획정 시 고려되어야 할 특수사정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독도의 가치를 완전 배제시키는 경우이다. 김형수, “독도를 고려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해양환경공학회(2006), 137쪽.

74) 2006년 한국 정부가 경계획정의 기준을 독도로 한다고 천명하였을 때 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동지나해(East China Sea)에서 토리시마를 기점으로 경계선을 설정하겠다고 하였다. 동해역에서 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하게되면 일본이 한국보다 다소 유리한 입장으로 한국보다 더 많은 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75) 김형수, 앞의 논문, 138쪽.

황해에서 한국과 중국은 대항국으로서 서로의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 양국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한다면 서로 중첩되는 해역이 생긴다. 따라서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서 합의로서 해양경계선 획정을 해야 한다.<sup>76)</sup> 그러나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동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원칙이 서로 다르며 황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출발선인 직선기선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sup>77)</sup> 이러한 중국의 자세는 동중국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사실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1972년 이전까지는 상당히 애매모호 하였으나, 1972년에 열린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회의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표명되었다.<sup>78)</sup> 이 후 1996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의 배타적경제수역 개념을 수용하였으며, 1998년에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법’을 공포하였다.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회의에서 표명된 중국의 입장과 이후 공포된 국내법 및 문헌조사를 통해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을 요약해 보면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합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모든 관련 요소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이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형평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일련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중요 판례에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하였다.<sup>79)</sup> 여기서 중국이 표명하는 형평의 원칙에 대하여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며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또한 없다. 다만 학술자료를 통하여 중국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경계선 획정 시에 고려사항으로 제기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짐작 할 수 있을 뿐이다.<sup>80)</sup>

76)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77) 1992년 중국 영해법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과 달리 통상기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영해폭은 12해리로 하되 기선으로서는 이웃하는 기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만든 직선기선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일반적인 영해의 폭을 규정하는 의미의 통상기선과 그 외의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직선기선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중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78) 이석용, 앞의 논문, 261쪽.

79) 양희철, “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2012.09), 113쪽.

80) 중국이 형평의 원칙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동지나해(East China Sea)에서 해저지형을 고려하는 즉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에 따라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까지 뻗어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황해(Yellow Sea)에서는 Silt line, 해안선의 길이, 비례성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 II.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응방안

### 1.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단일경계선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으로서 중첩해역이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계획정 시 중첩해역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배타적경제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가 한계이지만 대륙붕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200해리 이원의 거리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데 있다.<sup>81)</sup> 해양경계획정 시에 한국과 중국이 중첩되는 해역은 황해와 동중국해이며 이 중에서 특히 동중국해에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대한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대륙붕에 대하여 200해리 이원의 거리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원칙에 기초하고 있다.<sup>82)</sup> 한국은 이러한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원칙을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sup>83)</sup>, 이에 대해 중국은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중간선 원칙에 따르게 되면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단일경계선 설정은 어려움이 없으나, 중국의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설에 따르게 되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선이 다르게 설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한 해양경계획정이 양국 간에 체결되는 것도 어렵겠지만 설령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200해리 이원에 설정된 대륙붕에 대한 자원개발에 대하여 상대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sup>84)</sup> 이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과 그 상부수역의 관할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동중국해에서는 한국이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의 원칙은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였고, 공평한 경계획정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중국이 모두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를 주장

81)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82)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원칙은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 언급하였으며 이 원칙은 한국과 일본의 1974년 남부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관한 한일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각론), 192~193쪽.

83) 해양경계획정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 해역에서 일본에게는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원칙을 주장하고 중국에게는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 한국의 자세는 상당히 이중적이라 하겠다.

84)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상부수역 또는 상공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9조.

하며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에 따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연장원칙을 서로 공평하게 배제하여 경계선을 획정한다면 서로 공평한 결과를 얻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양경계획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은 중첩해역에 대하여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이 서로 일치하는 단일 경계선이 올바르다고 하겠다.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을 만든 국가의 대다수가 단일경계선이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체결된 해양경계협정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경계선을 채택하였다.<sup>85)</sup>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중간선 원칙에 따른 경계선 설정의 주장보다는 중국의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원칙에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세계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평화에 앞장서야 할 중국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

## 2. 직선기선

한국은 1977년 12월 31일 공포된 ‘영해법’을 통하여 영해기선에 대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의 적용원칙을 밝혔으며<sup>86)</sup>, 그 후 ‘영해법 시행령’을 공포하여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해안에서 가장 바깥 도서를 연결하는 직선을 직선기선으로 사용하여 그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규정하였다.<sup>87)</sup>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도입 후 24해리 접속수역 조항을 추가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었으며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의 사용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중국은 1958년 ‘영해선언’과 1992년 02월 25일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기준선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나, 유엔해양법협약 도입 이후 제정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영해의 폭을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하였으며 기선은 직선기선을 채택하여 획정한다고 하였다.<sup>88)</sup>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도

85) W. Langeraar.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Areas: A New Approach”,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17 No.3(1986.07.), p.393; K. P. Beauchamp. “The Management Function of the Ocean Boundaries”. *San Diego Law Review*, vol.23(1986), p.23.

86) 한국의 영해법 제2조.

87) 강효백, “한-중 해양경계 획정문제-이어도를 중심으로-”, 제86차 중국학연구회 정기 학술발표회, 중국학연구회(2008), 187쪽.



입 이후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므로 표면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과 다른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8)</sup> 이러한 중국의 직선기선의 사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상에 나타나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의 적용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것<sup>90)</sup>이므로 직선기선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기선설정 시 기준이 되는 기점들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몇 가지 요건<sup>91)</sup>을 충족해야만 기선설정의 기점으로서 인정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직선기선 설정 전 과정인 기점설정에서부터 유엔해양법협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점설정 및 직선기선 설정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나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와 비교했을 때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몇 가지 있다. 한국의 기점은 포항 앞바다를 시작으로 하여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의 태안반도 앞으로까지 연결되며 총 23개로 구성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안에 가까이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있는 경우’에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해안에 가까이 근접한’의 의미는 거리상으로 본토와 24해리 이내여야 함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sup>92)</sup> 이로서 기점들 중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인 홍도, 소흑산도이나 이 섬들이 본토와의 거리 24해리 이내에 위치하므로 직선기선 적용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설정한 직선기선 중 그 길이가 국제사법기관의 판례<sup>93)</sup> 길이인 44해리를 넘는 곳이 7번과 8번 기점 사이(약 53.6해리), 13번과 14번 기점 사이(약 71.7해리), 16번과 17번 기점 사이(약 53.6해리)이므로 한국의 직선기선 설정의 문제는 중국에 비하여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다.<sup>94)</sup>

88) 중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2항.

89)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직선기선 설정의 자연조건으로 해안선이 길게 굴곡이 지고 잘려들어간 경우, 해안선에 아주 가까운 곳에 해안선을 따라 흩어진 섬들이 있는 경우, 삼각주와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심히 불안정한 경우라 하였다.

90)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각론), 46~48쪽.

91)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2항~제5항, 중국이 설정한 49개의 기점들 중 기점 9번과 10번은 단순한 모래톱에 불과하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를 충족하지 못한다.

92)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각론), 53쪽. 및 Limits in the Seas, No.106(1987), p.22.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59584.pdf>) 참조.

93) Fisheries Case, ICJ Reports 1951, pp.116~128.

94) 중국의 직선기선은 총48개이며 그 중 48해리 이상의 직선기선은 16개로 비율로는 33%에 해당한다. 김백수, 최운수, 박병문, 정찬동, “한반도 주변의 영해기점 및 기선에 관한 연구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GIS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GIS학회(2008.11), 335쪽.

한국과 중국의 직선기선 및 기점설정에 대한 문제는 양국이 가입하고 국내법에 적용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하는지의 여부가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시에 핵심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유엔해양법협약을 잘 준수하여 직선기선의 설정을 행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인 직선기선의 길이가 44해리를 넘는 기점 13번(절명서)과 기점 14번(소흑산도)의 기선은 판례의 길이와 큰 차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남쪽에 제주도가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점 16번과 기점 17번을 잇는 기선은 동 기선의 육지 측에 다수의 도서가 존재하는 만큼 동 기선의 내측수역이 내수제도에 종속될 만큼 육지본토에 충분히 인접한 것으로 여겨진다.<sup>95)96)</sup>

국제사법기관의 판례나 국제관행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기점설정과 직선기선의 적용은 한국과 비교할 경우 상당히 자국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이 수용할 의무는 없다.<sup>97)</sup>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직선기선의 적용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상에 부적합함을 제기하면서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직선기선을 설정하게 함으로서 양국 간의 형평을 유지하여 과도한 직선기선으로 불평 등한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 3. 한·중어업협정

2001년 06월 30일에 발효한 한·중어업협정은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이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합의가 미루어짐에 따라 각 국의 12해리 이원의 해역에서 무질서한 조업으로 인한 해양수산자원고갈, 어민의 피해 증가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도입한 후 양국이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제74조 제3항에 규정된 잠정협정(provisional arrangement)이며, 협정이 적용되는 수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서 협정 자체가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98)</sup> 더욱이 한국과 중국이 협정 체결 전부터 국내법으로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었으며, 한·중어업협정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입각하여

95)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각론), 53쪽.

96)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3항.

97) 이석용, 앞의 논문, 275쪽.

98) 이석용, 앞의 논문, 270쪽.

황해와 동중국해에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도입을 합의하고 각각의 해역에 중첩되는 지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한 것으로 볼 때<sup>99)</sup>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으로 여겨진다고 하겠다. 실제로 해당 해역은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권원이 중첩되는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 제도가 적용되었다.<sup>100)</sup> 또한 설정된 과도수역은 협정 효력 발생 후 4년이 경과하면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2005년 06월 30일자로 각국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한·중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도입에 따른 동 수역 내에서의 어업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협정이다. 그러므로 아직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경계획정을 맺지 못한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한·중어업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경계선획정을 통하여 미해결로 남은 양국의 해양경계선획정을 마무리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획정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과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업협정을 먼저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 협상으로 이루어온 업적을 무시하고 다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여 경계선 획정을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양국의 노력<sup>101)</sup>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한·중어업협정으로 각국에 포함된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을 맺음으로서 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중국의 부당한 기점과 직선기선의 설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평한 경계선이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4. 도서와 비도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를 지속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을 제외하고 만조 시에 수면 상에 있고, 물로

99) 김영구, 앞의 책, 464쪽.

100)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각론), 290쪽.

101) 한·중어업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1993년 12월부터 19차례의 회담 후에 1998년 11월에 협정문에 가서명하였으며 이후 정식서명을 위한 몇 차례 교섭 끝에 2000년 08월 03일에 협정에 대한 정식서명이 이루어지고 2001년 06월 30일에 발효되었다.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인 도서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과정 속에서 각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달하는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을 향유할 수 없는 암석, 수중 암초 등에 대하여 기점을 설정하고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보다는 중국의 주장 내용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주장은 황해에서는 홍도와 소흑산도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도서로서 해양경계획정 시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up>102)</sup> 반면 동중국해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제주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의심할 여지없는 도서로서 200해리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향유하는 완전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기점들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많이 없고 홍도와 소흑산도의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양국 간의 평화적인 대화로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다수 파악되었다. 중국의 주장은 200해리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향유하는 도서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하여 기점설정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직선기선이 적용되지 않아야 할 해역에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그 길이 또한 과거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에서 인정된 길이를 훨씬 뛰어넘는 길이를 설정하여 해양경계획정을 주장하고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 서도 안 된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이 설정한 49개의 기점들 중에서 몇몇은<sup>103)</sup> 200해리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는 섬으로서<sup>104)</sup> 동 섬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해당한다. 중국은 경계획정에서 섬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섬이 중국의 연안에 인접하여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섬이 육지의 연안에 인접하여 해당 국가의 기점이 되면 그 기점으로 만들어진 직선기선은 영해와 접속수역,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선이 되며, 그 기점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sup>105)</sup> 이

102) 이석용, 앞의 논문, 272쪽.

103) 중국은 기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위치와 명칭으로 해도 상에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04) “국제법 무시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시사저널, 1996. 및 강효백, 앞의 논문, 189~192쪽 참조.

처럼 직선기선의 설정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관계없이 200해리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기점은 하이자오(통다오)<sup>106</sup>와 서산다오(위산다오)<sup>107</sup>이다. 위 두 기점은 육지로부터 각각 69해리, 70해리 떨어져 있어서<sup>108</sup>, 위 기점 부근이 양자강 하구로서 해안선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직선기선의 기점으로는 부적합하다.

한국과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시에 한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도서와 비도서에 대한 유엔해양법상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이 설정한 영해 기점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상에 부적합함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한 기점들이 도서인지 비도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동해에서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할지라도 도서로서 200해리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암석으로서 상기 수역을 주장할 수 없는지를 고민해야 하듯이<sup>109</sup>, 한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기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하여 동 기점들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적합한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러한 정보를 중국과의 교섭 시에 활용하여 중국의 주장에 대응하여야 하겠다.

## 5. 해저지형

한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관계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 해역에서 중간선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제법의 기초위에서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해양경계

105) 김백수, 최윤수, 박병문, 정찬동, 앞의 논문, 334쪽.

106) 하이자오(Haijiao, 海礁)는 통도(Tong Island, 童島), Taibujiao (泰簿礁), Taijiao (泰礁)로 알려져 있고 Zhoushanqundao(저우산 군도)의 북동쪽 북위 30°44'6" 동경 123°09'24"에 위치하며 중국영해 기점이다. <http://en.wikipedia.org/wiki/Haijiao>

107) 서산다오(Sheshan Island, 佘山島)는 Chongming Island로부터 동쪽으로 3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상하이 행정구역 관할 하에 있으며 중국인민해방국해군(中國人民解放軍海軍)이 지키고 있다. 130년 된 등대가 동 섬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05년 11월 01일에 중국영해 기점으로 되었다. [http://en.wikipedia.org/wiki/Sheshan\\_Island](http://en.wikipedia.org/wiki/Sheshan_Island)

108)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직선기선의 기점은 육지로부터 충분히 가까운 지점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109)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로서 인정되어 200해리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향유 할 수 있다하더라도 국제 관례 상 한국과 일본이 대항국으로서 400해리 미만의 거리에 위치하고 독도가 육지영토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계선에 대한 효과가 부정될 수 있다.(Zero Effect) 김형수, 앞의 논문, 137쪽.

선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sup>110)</sup> 그러한 원칙을 위해서 해저지형을 고려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경계획정에 있어서 해저지형을 고려하는 중국의 자세는 북해 대륙붕사건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과 동중국해에서의 경계획정에서도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를 주장하며 해저지형을 강조하고 자국의 대륙붕이 그 해구까지 뻗어있다 함으로서 동 해역에서 일본이 중국 측에 주장하는 중간선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황해에서는 대륙붕이 완만하여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는 해구의 존재는 양국 사이의 해역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주장하는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은 해저지형의 고려요소로서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 유무와 같은 사항이 아닌 황해와 양자강에서 흘러 내려온 퇴적물이 황해에 쌓이면서 형성된 Silt line을 제시하며 해양경계획정에 Silt line<sup>111)</sup>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Silt line에 대하여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주장은 없으나 중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경계획정의 고려요소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 주장의 내용은 퇴적물에 의해 형성된 Silt line을 해양경계획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12)</sup> 중국이 주장하는 Silt line에 따르면 황해에 쌓인 퇴적물의 3분의 2가 중국 측 해역이 되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sup>113)</sup>

중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시 서로 마주보거나 인접하는 국가와 중첩되는 경우에 국제법의 기초위에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경계선을 확정한다<sup>114)</sup>고 한 점을 볼 때 중국이 주장하는 Silt line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법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국제법으로는 160여 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할 수 있겠다.

110)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제2조.

111) 1972년 故박춘호 재판관이 출간한 '황해퇴적물의 표층 분포에 관한 자료'에서 동 재판관은 퇴적물에 대하여 'silt'라는 표현을 하였다. ECAFE Technical Bulletin(1969). p.19; Park C.H., "Continental Shelf Issues in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Occasional Papers*, No.15(1972.09), p.1, p.67.

112) 양희철, 앞의 논문(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의 고려요소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26쪽.

113) Jeanette Greenfield,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Oxford:Clarendon Press, 1992), pp.125~127.

114)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1998. 06. 26. 전인대상무위 통과 및 중국 주석 공포: 동일자 발효)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대륙붕에 관한 내용 중 퇴적물과 관련한 규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4항에 기술되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중국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내세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Silt line을 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선기선과 기점들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보면 대륙붕 경계획정 시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계선을 확정하라고 하였다. 즉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에 대한 권원과 함께 해당 국가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확장하려 할 때 그 확장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또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sup>115)</sup> 하겠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은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과학기술지침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다. 과학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이 대륙붕에 대하여 자연적 연장 또는 거리의 기준에 따라 외측한계를 결정하는 연안국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16)</sup>

그렇다면 중국의 잘못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할 수 없는 황해<sup>117)</sup>에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인 제76조 제4항을 적용하여 Silt line을 경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거나 경계획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황해에서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국제법에 기초한 공평의 원칙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해야 하며, 동중국해에서는 양국이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에 기인하므로 서로 같은 사항을 이유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는 양국은 서로 이견이 없으므로 중첩해역에 대하여 국제법에 기초한 공평한 경계선 획정을 추진해야 하겠다.

## 6. 해안선 길이의 비례성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선획정에 대하여 양국이 공통적으로 국제법에 기초한 공평한 경계획정을 추구한다는 점은 서로 같으나, 한국보다는 중국이 공평한 결과를 위

115) 양희철, 앞의 논문(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의 고려요소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27쪽.

116) 대륙붕한계위원회 과학기술지침서 2.1.

117) 황해(Yellow Sea)에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항국으로서 그 거리가 400해리 이내로 각국이 200해리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경우 중첩지역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비중을 많이 둔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고려사항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비례성원칙은 ‘육지가 해양을 지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륙붕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sup>118)</sup>, 해양경계획정에 널리 적용되면서 공평한 경계획정을 위한 기본요소로 되었다.<sup>119)</sup> 실제로 중국은 한국과의 경계획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양국의 해안선 길이의 비를 중요한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중국과 한국의 황해에서 해안선 길이의 비는 1:0.8이라고 주장하였다. 국가 간의 협의에 의해서 체결된 해양경계획정의 사례에서는 해안선의 길이의 비인 비례성을 고려하는 요소를 경계획정의 고려요소로 명확히 여긴 사례는 없으나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에서는 몇몇 사건에서 해안선의 길이의 비를 경계획정의 고려요소로 여긴 사례가 있다. 그 예로 1985년 리비아와 튀니지의 해안선 길이의 비가 31:69이었으며, 최종 대륙붕 경계획정 결과에서는 40:60이 되었다.<sup>120)</sup> 또한 1992년 캐나다와 프랑스 간의 경계획정에서는 그 비율이 15.3:1이었으며, 경계획정 결과에서는 16.4:1로 분할되었다.<sup>121)</sup> 2000년 이후의 판례에서는 카타르와 바레인의 사건에서 양국의 해안선 길이의 비는 1.59:1이라고 카타르가 주장하였으나, 그 비율이 중간선을 조정할 만큼의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다.<sup>122)</sup> 2002년에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는 해안의 길이의 비 차이를 이유로 경계선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재판부는 등거리선을 이동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다.<sup>123)</sup>

위와 같이 국가 간의 협정에서 해안선의 길이의 비를 명확히 고려한 예가 없고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안선 길이의 비 차이가 크지 않는 이상 경계획정의 고려요소로 여겨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이 주장하는 해안선 길이의 비 1:0.8은 경계획정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경계획정에 있어서 중국이 주장하는 공평의 원칙에 대한 고려사항으로서 비례성에 대한 주장을 수용할 의무가 없고 국제판례를 살펴보아도 현재 한국과 중국의 해안선 길이의 비율 차이가 별 의미가 없는 만큼 경계획정의 관련요소로 여길 필요는

118) 梁熙喆, “從國際海洋劃界原則和實踐論中國EEZ與大陸架劃界問題 — 以黃海和東中國海劃界問題爲中心 —”, 國立臺灣大學教 博士學位論文(2006), p.173.

119) 양희철, 앞의 논문(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의 고려요소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32쪽.

120) Tunisia v. Libya Case, ICJ Report 1985, para.73.

121) St.Pierre v. Miquelon Case, ICJ Report 1992, paras.61-62.

122) Qatar v. Bahrain Case, ICJ Report 2001, para.243.

123) Cameroon v. Nigeria Case, ICJ Report 2002, para.301.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7.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이어도는 마라도 서남쪽 149km, 중국 서산다오 북동쪽 287km,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도리시마(鳥島) 서쪽으로 276k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sup>124)</sup> 평균 수심 50m, 길이는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 정도의 크기에, 면적은 11만 3000평 규모로, 4개의 봉우리를 가진 수중 암초다. 국내 해양학계에서의 공식 명칭은 파랑도(破浪島)<sup>125)</sup>이다.<sup>126)</sup> 정확한 위치는 동경 125° 10′ 56.81″, 북위 32° 07′ 22.63″이며,<sup>127)</sup> 제주도민의 전설에서 등장하는 환상의 섬인 이어도는 날씨가 나쁠 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1900년 영국 상선이 소코트라(Socotra)호가 처음 발견하여 그 선박의 이름을 따서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로 불리어 졌다.<sup>128)</sup> 한국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도 주변조사를 마치고 2002년에 기지 구축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06월에 완공하였다.<sup>129)</sup>

한국과 중국은 최근에 이어도에 관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양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언론을 통한 양국의 처신에서 잘 나타난다.<sup>130)</sup>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입장은 외교부가 천명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어도(蘇石礁·쑤옌 자오, 이어도의 중국명)는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이므로, ② 한·중 간 영토분쟁은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다. ③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하여서 이미 한국에서 2000년과 2002년의 한·중 조약 국장 회담 및 해양경계획정회담에서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은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④ 중국의 국제문제 처리원칙은 공인된 국가법준칙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한 협상이라고 하였다.<sup>131)</sup> 사실 한국 또

124) 이어도연구회, <http://www.ieodo.kr/ieodo/ocean01.php>.

125) 2001년 01월 22일 한국 국립지리원은 ‘파랑도’를 ‘이어도’로 개명하였다.

126)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이어도.

127) 이어도연구회, <http://www.ieodo.kr/ieodo/ocean01.php>

128) 이어도연구회, <http://www.ieodo.kr/ieodo/ieodo.php>.

129) 이어도기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구 한국해양연구원)이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2003년 06월에 완공하였으며 높이 76m(수중40m, 수상36m), 연면적 약400평, 총중량 약3,400톤으로 총 44종 108점의 기상·해양·구조물 안전성·환경관측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130) “中이 이어도에, 日이 독도에 항모 보낸다면”, 조선일보(박호섭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2013.10.07.

한 중국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는 달리 이어도 주변해역에서 항공기를 통한 조사 및 감시비행을 행하며, 군함과 잠수함이 이어도 주변해역을 제집 드나들 듯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의 수중 암초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중국의 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중첩해역에서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주변해역에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의 선박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이어도 주변해역에서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하겠다.<sup>132)</sup>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을 향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이 수중 암초로 인정하는 이어도는 그 위치를 기점으로 하여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하는 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나 센카쿠 제도처럼 영유권 분쟁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한국과 중국이 해양경계선을 정하지 못하였고 서로가 마주보는 대항국가로서 그 거리가 400해리 이내인 관계로 해양경계선의 설정에 따라서 각국의 이어도 관할여부가 달라진다고 하겠다.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의 위치는 거리상으로 제주도 남쪽의 마라도에서 149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중국의 서산다오에서 287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계선 획정에 있어서 중간선원칙이 적용된다면 이어도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위치하게 된다.<sup>133)</sup>

따라서 한국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서 중간선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그 방법에 따르면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중간선 내에 한국 측 경제수역에 위치하므로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도발을 억제시켜야 하며 유엔해양

131) 김여선,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이어도 연구 학술세미나(2009.12).

132) 이어도기지 건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한국의 권리이며, 동 협약 제60조 8항에 따라 이어도기지는 도서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영해를 갖지 아니한다. 또한 그 존재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133)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기점은 무인암석인 하이자오(통다오, 童島)이었으나 현재는 유인도 해군기지인 서산다오(위산다오, 余山島)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거리가 더 멀어졌다. 강효백, 앞의 논문, 192쪽.

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지녀야 한다.<sup>134)</sup> 또한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한 문제가 현재의 독도나 센카쿠 제도처럼 분쟁지역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여<sup>135)</sup> 양국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134)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및 제60조.

135)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획정에 고려요소인 퇴적물에 의하여 중국의 해양 경계선내에 이어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일본이 한국에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듯이 이어도기지 역시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은 중국에게 2가지를 강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첫째는 이어도기지는 분명 수중암초로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해당 해역의 경계선 획정에 있어서 공평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중국의 주장(해저지형)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 제3장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검토·분석

### 제1절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석

#### I. 사실관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1997년 06월 02일 선린협력조약을 체결하면서 부속협정 제4항인 흑해에 있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협정의 체결을 위해 교섭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위 부속협정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속히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1997년 10월 22일 조약 발효 후 1998년 01월에 양국 간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교섭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양국 간의 전문가 차원의 10여 차례 협상을 포함하여 총 24차에 걸친 교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 09월 마지막 협상에서도 그 어떠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2004년 09월 16일 루마니아가 흑해에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소송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다.<sup>136)</sup>

이 사건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건이며, 이 사건에서 경계선이 획정되어야 할 해역은 흑해<sup>137)</sup>의 북서쪽 해역이다. 흑해의 북서쪽 해역에는 세르팡 섬이 존재하며 이는 만조 시 해수면 위에 있으며, 약 0.17km<sup>2</sup>의 면적과 약 2,000m 길이의 해안선을 가지고있다.<sup>138)</sup> 루마니아는 소장에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사이의 단일 해양경계선을 획정하여 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이하 ICJ)에 요청하였다.

이 사건에서 양국 간에는 ① ICJ의 관할권, ② 적용 가능한 법, ③ 현존하는 당사국 사이의 해양경계, ④ 관련 해안, ⑤ 관련 해역에 대하여 양국 간에 이견이 있었다. ① 관할권에 대하여 우크라이나는 ICJ가 다른 국가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136)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v. Ukraine), ICJ Reports 2009, paras. 17 ~19.

137) 흑해는 다다넬스해협, 마르마라해와 보스포루스해에 의해 지중해와 연결된 폐쇄해이며, 북위 40도 56분과 북위 46도 33분 사이, 동경 27도 27분과 동경 41도 42분 사이에 위치에 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남쪽으로 뻗어있으며, 흑해는 약 432,000km<sup>2</sup>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연안국들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Ibid., para. 15.

138) Ibid., para. 16.

으로부터 한 나라의 영해를 나누는 경계를 획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ICJ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139)</sup> 이에 대하여 ICJ는 당사국들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수 있는 관할권은 없으며 재판소의 관할권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미칠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계선의 일부가 한편으로 한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또 한편으로 상대국의 바다 쪽 영해 한계 사이의 경계로서 획정되게 하는 ICJ의 관할권 행사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40)</sup> ② 적용 가능한 법에 있어서, 루마니아는 소련과 체결한 합의의사록(1949년, 1963년, 1974년)이 당사국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협정이라고 하였으며, 1997년 부속협정에서 당사국들에 의해 인정된 원칙<sup>141)</sup>들은 양국 간 외교 교섭과 ICJ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모두 적용된다고 하였다.<sup>142)</sup> 또한 루마니아는 경계획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루마니아는 세르 광섬에 대하여 “선린 및 협력조약과 부속협정”의 내용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적용 가능한 법으로서 ICJ가 동 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루마니아의 1997년 부속협정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그 협정이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국제조약임을 인정하면서도 현 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49년, 1963년, 1974년 합의의사록과 1997년 부속협정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협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4항과 제83조 제4항에 규정된 협정이 아니라고 하였다.<sup>143)</sup> ③ 현존하는 당사국 사이의 해양경계를 나타내는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의 1949년, 1963년 및 1974년 합의의

139) Ibid., para. 24.

140) Ibid., para. 30.

141) ① 국가 실행과 국제 판례에 적용되었던,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규정된 원칙.

② 해안이 인접한 경우의 해역 경계획정에 적용된 등거리선 원칙과, 해안이 마주보는 경우의 해역 경계획정에 적용된 중간선 원칙.

③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가 실행과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적용되었던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수단.

④ 어떤 조약 당사국도 경계획정 지역에 인접한 타 당사국 영토의 어떤 부분의 주권에 대해서도 다룰 수 없다는 원칙.

⑤ 경계획정 지역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142) Ibid., paras. 32~33.

143) Ibid., paras. 37~39.

사록과 1949년, 1961년 조약 그리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2003년 조약의 효력에 대하여 루마니아는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크라이나는 그에 반대하였다. ④ 관련 해안에 대하여, 루마니아는 “관련 해안이란 특정 해역에 대한 권원을 발생시키는 해안”이라는 원칙을 원용하면서 우크라이나와 하천경계의 중점으로부터 사카린반도의 남쪽 말단 부분까지의 짧고 다소 직선적 형태의 해안과 사카린반도의 남쪽 말단으로부터 불가리아와의 경계까지를 자국의 관련 해안이라고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관련 해안이 3개의 구별되는 해역으로 구별된다고 하였으며, 첫 번째 구역은 루마니아와의 국경으로부터 확장되어 오데사의 정 북쪽에 위치한 지점까지, 두 번째 구역은 오데사의 정 북쪽의 지점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흑해의 북서부분을 따라 남쪽을 마주보는 연안지역이며, 세 번째 구역은 카르키니츠카만의 동단으로부터 사리히 곳까지의 크림반도의 서쪽 해안을 포함한다.<sup>144)</sup> 마지막으로 양국이 주장하는 ⑤ 관련 해역을 살펴보면 루마니아는 관련 해역이란 관련 해안으로부터의 투사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해역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북쪽해안, 즉 S지점과 타르칸쿠트 곳 사이의 북쪽해역의 해안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남서쪽 한계는 루마니아 남쪽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잠재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와 터키 사이에 위치한 남동쪽 삼각지역을 루마니아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투사 내에 있다는 이유로 관련 해역으로 포함하였다.<sup>145)</sup> 반면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 국경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오데사를 거쳐 동쪽으로 확장하여 카르키니츠만을 지나 남쪽으로 사리히 곳까지의 해안이 바라보는 해역을 관련 해역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남쪽 한계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영토국경이 흑해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제3국의 잠재적 이익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양국의 본토 해안으로부터 수직으로 그어진 직선이라고 하였다.<sup>146)</sup>

## II. 판결내용

이 사건에서 ICJ는 대륙붕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및 단일 경계선의 획

144) Ibid., para. 94.

145) Ibid., para. 107.

146) Ibid., para. 108.

정을 요청받았을 때 정해진 단계에 따라 진행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해진 단계는 최근 몇 십년동안 구체화되었으며<sup>147)</sup>, 그 첫 번째로 ICJ는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해역에 잠정적인 경계선을 설정하고, 두 번째로 그어진 잠정적인 등거리선의 조정이나 이동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형평한 결과를 달성할 것이다.<sup>148)</sup> 마지막 세 번째로서 ICJ는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되었거나 되지 않았을 수 있는 잠정적 등거리선이 양측 해안의 비율과 경계획정선에 관련된 각국의 관련 해역 간의 비율 사이의 어떤 현저한 불균형으로 인해 불형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ICJ는 위 사항에서 각각의 해역이 해안의 길이에 비례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sup>149)</sup>

### 1.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의 폭은 영해가 측정되는 기선으로부터 측정되므로 ICJ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을 위하여 각국의 기점들을 설정하였다. ICJ는 사카린반도와 수리나 제방의 육지 쪽 끝 부분을 기점으로 루마니아 해안에 있어서 기점으로 설정하였으며<sup>150)</sup>, 치강카 섬, 타르칸쿠트 곶, 케르존 곶을 우크라이나 해안의 관련 기점으로 설정하였다.<sup>151)</sup> ICJ는 설정된 기점들을 바탕으로 잠정적 등거리선을 설정하였다. 등거리선을 살펴보면 루마니아 해안에 위치한 수리나 제방의 육지 쪽 끝 부분과 우크라이나 해안에 위치한 치강카 섬의 남동쪽 끝 부분에 위치한 기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등거리선은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A지점(북위 44도 46분 38.7초, 동경 30도 58분 37.3초)에 이른다. A지점에서 다시 우크라이나 해안의 타르칸쿠트 곶에 위치한 기점의 영향을 받게 되는 B지점(북위 44도 44분 13.4초, 동경 31도 10분 27.7초)까지 이어진다. B지점에서 등거리선은 남남동 방향으로 진행되어 루마니아 해안의 사카린반도와 우크라이나 해안의 타르칸쿠트 곶과 케르존 곶에 위한

147) Libyan Arab 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ara. 60.

148)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I.C.J. Reports 2002, para. 288.

149) “그 해역의 분배는 결국 경계획정의 결과이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Denmark v. Norway), I.C.J. Reports 1993, para. 64.

150)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v. Ukraine), ICJ Report 2009, para. 141.

151) Ibid., para. 148.

기점들을 참조하여 산정된 C지점(북위 44도 02분 53초, 동경 31도 24분 35초)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등거리선은 C지점에서 185도 23분 54.5초의 방위각으로 남쪽방향으로 진행된다.<sup>152)</sup>

## 2. 관련사정

위와 같이 잠정적 등거리선이 설정되면, ICJ는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고자 동 선의 조정이나 이동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sup>153)</sup> 이 사건과 관련하여 ICJ는 관련 사정으로서 양국 간의 해안의 길이 사이의 불균형, 흑해의 패쇄적 성격과 그 해역에서 이미 설정된 경계선들, 경계획정 해역 내에 세르광 섬의 존재, 당사국들의 행위(석유와 가스 채굴, 어로 활동, 해군 순찰), 단절효과, 당사국들의 안보에 대한 고려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관련 사정으로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와의 해안 길이의 불균형을 이유로 잠정적 등거리선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루마니아는 해안 길이의 불균형이 잠정적 등거리선 조정의 사유가 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양국 간에 해안 길이의 불균형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ICJ는 양국의 해안의 길이는 잠정적으로 설정된 등거리선을 확인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잠정적 등거리선의 초기 설정과 관련하여 비례성의 원칙은 없다고 하였다.(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해안 길이의 비는 248km:705km로서 약 1:2.84)<sup>154)</sup>

두 번째 관련 사정으로서 ICJ는 흑해의 패쇄적 성격과 양국 간에 이미 설정된 경계선들을 고려하였다. 흑해는 육지로 둘러 싸여 패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그러한 사항을 관련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흑해와 관련하여 양국 간에 체결된 경계협정은 1978년 06월 23일 터키와 소련 사이에 체결된 협정<sup>155)</sup>과 1997년 12월 04일 체결된 레조프스카/무트루데강 하구에서의 경계획정과

152) Ibid., para. 154.

153)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I.C.J. Reports 2002, p.441, para. 288.

154)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v. Ukraine), ICJ Report 2009, para. 163. ICJ는 위의 예외로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육지·해양경계획정사건(I.C.J. Report 2002, para.301.), 그린란드와 안마이엔 사이의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사건(해안 길이 비는 1:9), 몰타와 리비아의 해양경계획정사건(해안 길이 비는 1:8)에서 해안 길이의 불균형이 잠정적 중간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흑해 내 양국 사이 해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협정<sup>156)</sup>이 있다. 루마니아는 위와 같은 협정들 또한 관련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ICJ는 앞서 기술한 흑해의 패쇄적 성격을 포함하여 이미 협정으로 설정된 경계선을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시키는 관련 사정으로 보지 않았다.

세 번째로 고려한 경계획정 구역 내에 세르팡 섬의 존재는 양국 간의 확연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에 대해 수자원이 없고 실질적으로 토양과 동식물도 없는 바위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으로서 12해리 영해만을 인정하였으며, 그 이원의 경계선 획정을 위한 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sup>157)</sup>을 들었으며 그에 따라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이 우크라이나의 해안지형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루마니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에 대한 합의된 12해리 영해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사정으로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고려가 불공평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경계획정에 있어서 아주 제한된 효과를 부여하거나 전혀 효과가 부여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이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 경계획정에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르팡 섬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12해리를 넘는 그 어떤 효과도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up>158)</sup>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와 반대로 세르팡 섬이 잠정적 등거리선을 획정하기 위한 기점을 발생시키는 기선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동 섬의 해안이 경계획정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의 부분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세르팡 섬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바위가 아니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된 섬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주장에 대하여 ICJ는 세르팡 섬의 존재가 잠정적 등거

155) 양국은 본 협정을 통해서 1978년 협정에서 합의한 대륙붕 경계가 그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경계선의 서쪽 끝 부분은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채 남았으며 이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하도록 하였다. Ibid., para. 175.

156) 위 협정은 터키와 불가리아 사이의 협정으로서 북위 43도 19분 54초, 동경 31도 06분 33초의 지점 및 북위 43도 26분 49초와 동경 31도 20분 43초 지점 사이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추가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획정은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교섭하도록 하였다. Ibid., para. 176.

157)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도서제도)

158) Ibid., para. 182.

리선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동안 ICJ는 경계선 획정에 있어서 불공평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작은 섬을 고려하지 않거나 해역에 대한 완전한 잠정적 권원을 그러한 섬에 부여하지 않았다.<sup>159)</sup> 세르팡 섬에 대하여 ICJ는 동 섬이 해안선의 일반적 형상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당사국 해안 사이의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을 위한 기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sup>160)</sup> 기점이 될 수는 없으나 설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이 필요한 고려요소 인지에 대하여 ICJ는 세르팡 섬의 권원이 우크라이나의 동쪽, 북쪽, 서쪽의 연안에 의해 생성되는 권원에 포함되는 점을 상기하며 설령 세르팡 섬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세르팡 섬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본토에 의해 생성되는 해역의 한계를 넘어서 관련 해역을 확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까닭으로 ICJ는 세르팡 섬의 존재가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르팡 섬이 12해리 영해가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해서 부여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며 경계획정에 있어서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하였다.<sup>161)162)</sup>

세 번째로 당사국들의 행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1993년, 2001년, 2003년에 석유와 가스 광상에 대한 탐사를 허가하였으며 2001년 이전에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배타적 어업수역 내에서 연안경비대에 의한 단속활동을 한 점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활동을 잠정적 등거리선 조정의 고려사정으로 주장하였다. 반면 루마니아는 관련 해역에서의 우크라이나의 국가활동은 관련 사정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63)</sup> 이에 ICJ는 당사국들 사이에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유효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음<sup>164)</sup>을 상기하고 현 사건에

159)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ara. 64;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I.C.J. Reports 2001, para. 219;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I.C.J. Reports 2007(II), para. 302.

160)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Report 2009, para. 149.

161) Ibid., para. 188.

162) 세르팡 섬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적용과 관련하여 ICJ는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다. 그 까닭으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사정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현 사건에서 세르팡 섬은 섬인지 바위(암석)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Ibid, para. 187.

163) Ibid., para. 193.

164) Ibid., para. 76.

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국가활동은 루마니아가 주장하는 경계선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국제재판소와 법원은 자원과 관련된 기준을 관련 사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sup>165)</sup>을 상기하며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국가활동이 관련 사정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네 번째인 단절효과에 대하여 루마니아는 자국이 제시하는 해양경계가 양국의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권원을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가 제시하는 선이 세르광 섬에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이 할당되지 않은 점, 남쪽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본토 해안이 법적으로 가질수 있는 해역을 박탈당한 점을 제시하며 이종의 단절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sup>166)</sup> 이에 대해 ICJ는 양국이 주장하는 경계획정 선이 서로의 권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ICJ가 설정한 잠정적 등거리선은 당사국들 해안의 권원을 상호 균형 있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할 까닭이 없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 고려 사항인 당사국들의 안보사항에 대하여 ICJ는 당사국들의 적법한 안보에 대한 고려는 경계획정선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sup>167)</sup>, 현 사건에서 ICJ가 설정한 잠정적 등거리선은 각 당사국의 적법한 안보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할 관련 사정이 아니라고 하였다.<sup>168)</sup>

### 3. 불균형심사

ICJ는 앞서 판결에 따른 경계획정선과 관련하여 각각의 해안 길이와 할당된 해역을 고려했을 때 어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CJ는 다양한 법정들과 동 재판소 스스로가 해안선 길이에 어떠한 불일치가 경계선을 불공평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그러한 불일치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지난 수년간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즉 각각의 사건에 따라 ICJ의 판결은 달리하였다.<sup>169)</sup> 이 사

165) Award of 11 April 2006, RIAA, Vol. XXVII, p.214, para. 241.

166)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v. Ukraine), ICJ Report 2009, paras. 199~200.

167)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ara. 51.

168)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v. Ukraine), ICJ Report 2009, para. 204.

169) Ibid., para. 213.

건에서 ICJ가 측정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각각의 해안 길이의 비율은 대략 1:2.8이며,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관련 해역의 비율은 1:2.1이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ICJ는 해안 길이와 관련 해역의 비율의 차이가 경계선을 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다.<sup>170)</sup>

### III. 검토·분석

이 사건은 폐쇄해인 흑해에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해양경계협정으로 도서 문제를 다룬 특별한 사건이다. 이는 동북아 해역에서 도서 문제로 인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관련국들이 참고할 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판결내용에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획정의 방법으로서 최근 몇 십 년 동안 구체화된 3단계(three stage)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ICJ의 3단계 방법은 첫째, 잠정적 등거리선을 설정하고 둘째, 관련사정을 고려하고 셋째, 불균형 심사(disproportionality test)를 실행하는 것이다.

둘째,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을 위하여 ICJ는 기점을 설정하였다. 기점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기점 선택의 변화가 감지되었고 세르팡 섬에 대하여 기점 설정을 부인하였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점 설정 시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기점을 재판소가 검토하여 활용하였으나 근래에는 해당 수역의 지리를 고려하여 소수의 기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sup>171)</sup> ICJ는 세르팡 섬에 대한 기점효과를 부인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독도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05월 이후 우리나라는 동해에서 해양경계선을 독도를 기준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르팡 섬에 대하여 기점의 효과를 부인한 동 사건의 판결은 우리의 독도를 기준으로 한 해양경계선의 주장에 의문을 남긴다.

셋째, ICJ는 관련 사정으로서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관련국의 해안선의 길이, 기 존

170) 해안 길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잠정적 중간선의 조정이 필요한 사례로서 안마이엔과 그린란드의 해양경계획정 사건(비율은 대략 1:9, I.C.J. Reports 1993), 몰타와 리비아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비율은 대략 1:8, I.C.J. Reports 1985)이 있다.

171) 이석용, "ICJ의 흑해해양경계획정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징 분석", 「서울법학」, 제20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2012.11.), 28쪽.

재하는 경계선, 당사국들의 행위(석유와 가스광상에 대한 탐사 및 연안경비대에 의한 단속활동), 단절효과, 세르광섬의 존재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나 그 어느 것도 관련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세르광 섬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동 섬의 권원이 우크라이나의 동쪽, 북쪽, 서쪽의 해안에 의해 생성되는 권원에 포함되므로 설령 그 섬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에 해당되는 섬이라 할지라도 본토에 의해 생성되는 해역의 한계를 넘어서 관련 해역을 확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ICJ의 세르광 섬에 대한 불명확한 판결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를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sup>172)</sup>에 따른 섬으로서 동해에서 일본과의 해양경계선 설정 시 기준이 되고 있지만 현 사건의 판결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과연 독도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향유하는 섬인지에 대한 일본의 의문이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관련 사정으로서 해안길이 불균형을 검토함에 있어서 여러 사건에서 ICJ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경계획정 방법, 즉 3단계(three stage)에서 두 번째 단계인 관련 사정에서 고려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이동 또는 조정하는 방법과 마지막 단계에서 불균형 심사를 통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이동 또는 조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단계인 관련 사정에서 해안길이의 불균형을 고려하였고 현 사건에서 불균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당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해안길이 비는 1:2.84(248km:705km)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임할 경우 해안 길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마지막 단계가 아닌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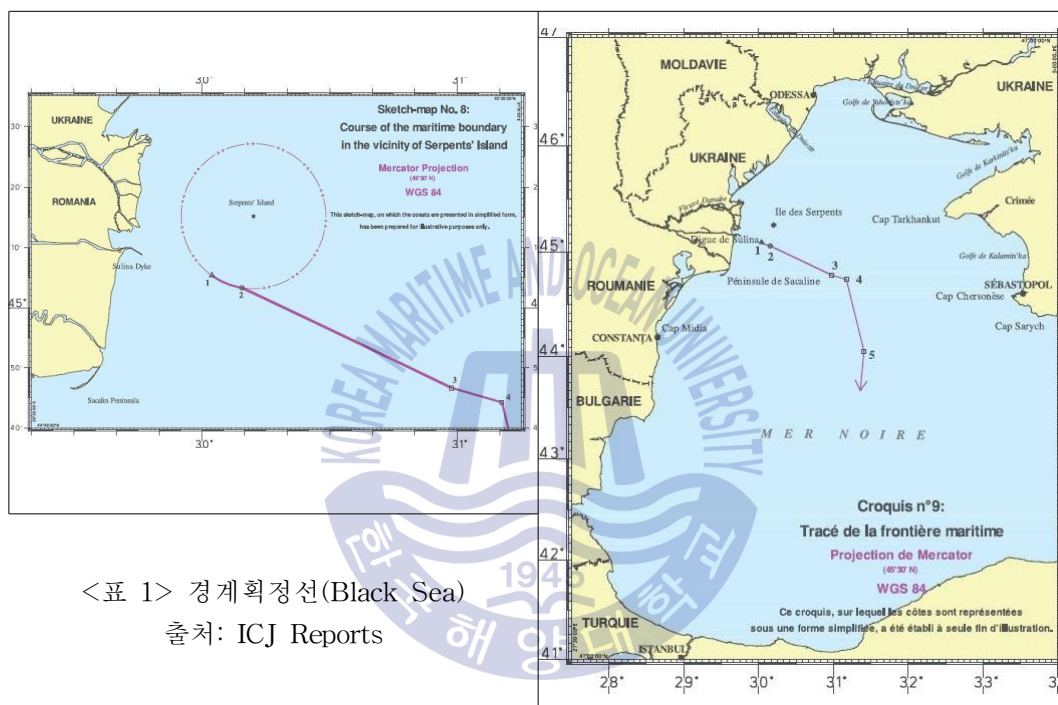
다섯째, 이 사건의 판결내용에서 당사국들의 안보사항이 관련 사정으로 인정 되지 않았으나 동북아 해역의 해양경계획정을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이어도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중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어도는 사실적으로 수중암초로서 해양경계선의 기점이 될 수 없으며

172)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도서제도)

① 도서는 만조시에 수면상에 있고, 물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 ② 제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기타 육지영토에 적용가능한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③ 사람이 거주를 지속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로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이를 확실히 함으로서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판결내용은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하지 않은 동북아 해역의 주변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도서의 처리 방법과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을 위한 기점의 선택 변화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할 경우에 대비해야 할 사항이다.



<표 1> 경계획정선(Black Sea)  
출처: ICJ Reports

## 제2절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

### I. 사실관계

이 사건은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의 캐리비언(Caribbean)해역에서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건이며, 2001년 12월 06일 니카라과가 콜롬비아를 상대로 소송 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소장을 ICJ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당사국들

은 캐리비언해역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섬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였으며<sup>173)</sup>, 니카라과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선을 주장하였다. ICJ는 해양경계획정 방법에 대해 앞선 다수의 판례<sup>174)</sup>에 나타나 있듯이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이 서로 중첩하는 경우에는 3단계(Three-stage procedure)<sup>175)</sup>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ICJ는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을 위하여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듣고 잠정적 중간선의 설정을 위해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 및 해역과 양국이 주장하는 해상 지형물들에 대한 소유 여부를 결정하였다. 잠정적 중간선 설정 후 그 선의 조정 및 이동이 필요한 관련 사정으로서 관련 해안 길이의 불균형, 전반적인 지리적 정황, 안보와 법적 효력, 이미 발효된 경계획정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불균형 심사를 시행하여 완성된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 판결을 내렸다.

## II. 판결내용

ICJ는 이 사건에 대한 적용 법규를 고려함에 있어 콜롬비아가 유엔해양법협약의 회원이 아님을 인지하고, 당사국들이 적용가능한 법이 관습적인 국제법이라는 점에 동의한 것과 유엔해양법협약이 관습적인 국제법을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 점에 주목하였다.<sup>176)</sup> 이에 ICJ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82조의 해양경계획정의 원칙들이 관습적인 국제법을 반영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sup>177)</sup>, 제121조 제1항에 기술된 섬의 법적 정의도 관습적인 국제법의 일부로 취급하였으며<sup>178)</sup>, 제121조 제2항에 대해

173) 당사국들의 섬에 대한 통치권 주장의 근거는 ① 해상지형물의 전유 가능 여부, ② 1928년 협정, ③ Uti Possidetis Juris원칙, ④ Effectivies(실효적 주권행사), ⑤ 니카라과의 인정, ⑥ 3자에 의한 권리 인정, ⑦ 지도의 증거 가치로 요약된다.

174)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ara. 60.;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Reports 2009, paras. 115~116.

175) First stage: 당사국들 사이에 잠정적 중간선을 설정, Second stage: 잠정적 중간선의 조정이나 이동이 필요한 관련사정을 고려, Third stage: 불균형심사.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3.

176) 그들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제74조<인접 또는 대항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와 제83조<인접 또는 대항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 관습적인 국제법의 선언으로 고려되는 섬들에 대한 법적 제도에 관한 제121조<도서제도>에 동의하였다. Ibid, paras. 137~138.

177)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I.C.J. Reports 2001, para. 167.

178)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I.C.J. Reports 2001, para. 167, para. 195.

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sup>179)</sup> 중요한 제121조 제3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제121조 제2항에 의한 섬에 일치하는 해양의 권리는 명백히 제121조 제3항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관습적인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ICJ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기술된 섬의 법적 제도는 불가분의 제도이며, 그 모든 것은 관습적인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하였다.<sup>180)</sup>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중첩되는 사이에 경계획정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ICJ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3단계<sup>181)</sup>의 소송절차와 관련이 있음이 다수의 사건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sup>182)</sup> 결과적으로 ICJ는 이 사건에서 잠정적 중간선을 설정하면서 3단계에 이르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경계획정을 실행하였다.

“Quitasueño”에 대한 섬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ICJ는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sup>183)</sup>에 관한 사건을 상기하면서 국제법이 지형이 섬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어느 최소한의 크기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QS32”<sup>184)</sup>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ICJ는 “QS32” 지형물이 전유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QS32” 이외의 해상 지형물에 대해서는 섬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그들은 간출지(low-tide elevations)라 판결하였다.

당사국들은 분쟁 중인 해상지형물의 통치권에 대한 근거로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

---

179)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185.

180) Ibid., para. 139.

181) 첫 번째 단계에서 당사국들의 영해를 포함한 영토사이에 잠정적 경계선을 설정, 두 번째 단계에서 공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의 이동 또는 조정이 필요한 어떤 관련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등거리선/중간선을 이동 또는 조정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 불균형심사를 통하여 당사국들의 개별적 할당이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는지를 평가한다.

182)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ara. 60;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Reports 2009, paras. 115 ~116.

183)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I.C.J. Reports 2001, para. 197; 판결에 따르면 만조 시 수면상 0.4미터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Qit’at Jaradah”는 섬이라 하였다.

184) Quitasueño에 대한 Dr. Robert Smith의 보고서에 따르면 Quitasueño에 대한 해상 지형물을 “QS1”에서 “QS54”까지로 나타냈다.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29.



하였는데, ICJ는 1928 협정에 대하여 콜롬비아가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에 대한 통치권과 San Andrés Archipelago의 일부를 형성하는 다른 섬들/작은섬들/암초들에 대한 통치권을 갖는다고 하였으나, 그 협정 Article I이 San Andrés Archipelago의 구성원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그 규정은 적어도 섬들에 매우 가까운 해양지형물을 포함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Alburquerque Cays, East-Southeast Cays(San Andrés 섬에서 각각 20해리/16해리에 놓여 있음)는 Archipelago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거리를 고려했을 때, Serranilla, Bajo Nuevo는 그의 일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1928 협정은 당사국들의 통치권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았다.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분쟁하는 지형물이 독립당시 또는 그 이전에 콜롬비아 또는 니카라과의 식민지 지역에 기인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분쟁중인 해양지형물에 대한 통치권을 결정함에 있어 부적합한 도움을 산출한다고 결론 내렸다.<sup>185)186)</sup>

앞서 살펴본 1928 협정과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서 통치권의 답을 찾지 못한 ICJ는 다음으로 Effectivités(실효적 주권행사)를 검토하였다. ICJ에 따르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의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에서 관련 해양지형물에 행한 법률제정, 행정통치, 민·형사법의 집행과 적용, 이민관리, 어로와 기타 경제활동의 행위, 탐색과 구조활동을 비롯한 해군 순찰과 같이 통치권 수행으로 간주되는 행위와 활동들을 상기하였다.<sup>187)188)</sup> 또한 ICJ는 통치권을 주장하는 다른 국가에 의해

185) Ibid., paras. 64~65.

186) ICJ는 당사국들이 인용한 어느 식민지 명령서에도 특별하게 분쟁중인 해양 지형물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와 동등한 예로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I.C.J. Reports 1992, para. 333.”를 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when the principle of the uti possidetis juris is involved, the jus referred to is not international law but the constitutional or administrative law of the pre-independence sovereign, in this case Spanish colonial law; and it is perfectly possible that that law itself gave no clear and definite answer to the appurtenance of marginal areas, or sparsely populated areas of minimal economic significance”.

187)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I.C.J. Reports 2007(II), paras. 176 ~208.

188) 동 사건에서 통치권은 “sovereignty over minor maritime features . . . ma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relatively modest display of State powers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라고 하였다.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I.C.J. Reports 2007(II), para. 174.

수행된 분쟁 중인 해상지형물과 관련한 어떤 행위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sup>189)</sup> 위와 같은 판례를 상기하며 ICJ는 이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결정적 기일 이후에도 분쟁하는 해상지형물에 수행한 여러활동(법률제정, 어로활동 규제, 관련 조치의 실시, 등대 및 부이의 정비, 해군 방문)이 분쟁 중인 해상지형물의 통치권에 대한 콜롬비아의 주장에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결론지었다.<sup>190)</sup>

니카라과의 인지에 대해서는 실효적 주권행사와 더불어 “Loubet Award”에 대한 니카라과의 반응이 콜롬비아를 지지하는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여겼다. 또한 1928 협정의 Article I의 제2항이 당시에 니카라과가 Roncador, Quitasueño, Serrana에 대한 통치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여겼다(니카라과는 이후 1972년 Vázquez-Saccio Treaty에서 3가지 지형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ICJ는 니카라과의 상기와 같은 행위가 분쟁 중인 해상지형물에 대한 콜롬비아의 통치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였지만, 그것은 콜롬비아에게 다소의 지지를 주었다고 간주하였다.<sup>191)</sup>

제3자에 의한 권리의 인정에 대하여 ICJ는 제3국의 관행의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이 관행이 분쟁 중인 해상지형물에 대한 콜롬비아의 통치권에 제3국이 인지하는 것으로 여길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콜롬비아의 주장에 대해 지지의 몇몇 방책을 제공한다고 여겼다.

지도에 대한 증거력에 대해서는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Judgment, I.C.J. Reports 1986”<sup>192)</sup>사건을 상기하였으며, 1980년 이전에 니카라과에 의해 출판된 지도들 중 어느 것도 분쟁 중인 해양지형물을 표시하지 않았

---

189) “It is impossible to read the records of the decisions in cases as to territorial sovereignty without observing that in many cases the tribunal has been satisfied with very little in the way of the actual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provided that the other State could not make out a superior claim.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case of claims to sovereignty over areas in thinly populated or unsettled countries.”,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Judgment, 1933, P.C.I.J. Series A/B, No.53, p.46.

190)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84.

191) Ibid., paras. 88 ~90.

192) “of themselves, and by virtue solely of their existence, [maps] cannot constitute a territorial title, that is, a document endowed by international law with intrinsic legal forc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erritorial rights.”,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I.C.J. Reports 1986, para. 54.

으나, 콜롬비아 지도들과 니카라과가 출판한 몇몇 지도들이 적어도 중요한 지형물의 몇몇을 콜롬비아에 속하게 나타내고 니카라과에는 속한다고 나타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ICJ는 지도의 증거가 제한된 가치를 지닐지라도 그것은 콜롬비아의 주장을 지지하는 다소의 방책을 제공한다고 하였다.<sup>193)</sup>

위와 같은 통치권에 관련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ICJ는 니카라과가 아닌 콜롬비아가 Alburquerque, Bajo Nuevo, East-Southeast Cays, Quitasueño, Roncador, Serrana, Serranilla에 있는 섬들에 대한 통치권을 갖는다고 판결하였다.<sup>194)</sup>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주장하는 니카라과에 대하여 ICJ는 니카라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sup>195)</sup>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에 대한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sup>196)</sup>를 따라야 하며, 이하에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197)</sup> 위와 더불어 ICJ는 콜롬비아가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라고 하여 니카라과의 의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니카라과가 유엔해양법제76조 제8항<sup>198)</sup>에 따라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에 대한 요구 정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비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 사건의 소송과정에서도 ICJ는 니카라과가 콜롬비아의 본토해안으로부터 측정된 대륙붕에 대한 콜롬비아의 200해리 권원에 중첩될 만큼 충분히 멀리 확장되는 대륙붕 한계를 가진다고 확립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상기하며 ICJ는 어느 한 당사국의 확장된 대륙붕이 관계되어 중첩되는 권원의 경계획정이 다른 당사국의 대륙붕에 대한 200해리 권원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해 제기된 어느 다른 논쟁에 중점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sup>199)</sup> 즉 니카라과를 지지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 중인 해상지형물에 대하여 콜롬비아가 통치권을 갖

193)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102.

194)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103.

195)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을 확장하였으나 대륙붕에 대한 200해리 이원의 외측한계를 판정한 것은 아니었다.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ITLOS(2012), para. 462.

196)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의 정의)

197)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I.C.J. Reports 2007(II), para. 319.

198)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8항

199)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s. 130 ~131.

는다고 ICJ는 판결하였다. 다음으로 ICJ는 이러한 지형물에 대한 권원을 판결하였는데, Serranilla와 Bajo Nuevo는 제3국(자메이카)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 판단에서 제외하고, Roncador, Serrana, Alburquerque Cays, East-Southeast Cays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언급된 예외에 이들이 포함되는지에 관계없이 12해리 영해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한 섬들 중 어떠한 것이 제121조 제3항의 예외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단지 그들이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권원을 갖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ICJ는 관련 해역 전체가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sup>200)</sup>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섬들의 200해리 이내에 놓여 있음에 주목하였다. ICJ는 유사한 상황인 흑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세르팡 섬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결<sup>201)</sup>하였던 것을 상기하였다. ICJ는 이 사건에서 작은 섬들이 관련해역 내에서 발생시키는 해역에 대한 어떠한 권원은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의 섬들에 의해 발생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권원과 중첩되기 때문에 작은 섬들에 대한 명확한 지위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다.<sup>202)</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지형물로 구성된 Quitasueño에 대하여 ICJ는 ‘Q32’만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 구체화된 정의 내에 있는 섬이라 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지형물은 간출지(low-tide elevations)라고 하였다. 그리고 영해를 측정함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제13조<sup>203)</sup>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였다. 따라서 ‘Q32’의 12해리 이내에 있는 간출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간출지 중에서 ‘Q53’과 ‘Q54’를 제외한 모든 간출지가 Quitasueño에 포함되며, ‘Q32’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적용되므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권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결에서 ICJ는 관련 해안의 길이는 니카라과 531km 및 콜롬비아 65km이며 그 비율은 1:8.2라고 하였다. 단순히 200해리 권원이 측정될 해안의 부분이 아니라 잠재적 권원이 중첩되는 해역을 투영하는 전체 해안을 니카라과의 관련 해안으로 하였

200) 현 사건에서 당사국들은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168.

201)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Reports 2009, para. 187.

20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180.

203) 유엔해양법협약 제13조(간출지)

다.<sup>204)</sup>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본토해안이 관련 해안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잠재적 권리가 중첩되는 해역은 콜롬비아 섬들의 동쪽까지 확장하므로 서쪽 해안 뿐만 아니라 섬의 전체 해안선이 관련 해안이라고 여겼다. 특히 세 개의 섬(San Andrés, Providencia/Santa Catalina)이 중요한데 이들이 마주보는 각각의 섬 해안의 일부는 관련 해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들 세 섬의 관련 해안의 길이를 58km로 추산하였다. 제3자의 권리가 관련되는 Serranilla, Bajo Nuevo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에 대한 해안의 길이는 7km로 추산하였다. 그리하여 총 65km가 콜롬비아 관련 해안으로 되었다.

당사국간의 관련 해역에 대한 ICJ의 판결은 북쪽에서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사이의 해양경계선<sup>205)</sup>을 따라 동쪽으로 'joint regime area'의 경계선에 이르며, 남쪽해역의 경계선은 니카라과로부터 200해리 떨어진 선이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에 합의된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의 동쪽에서 시작하여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경계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그 선은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사이에 합의된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이동한다. 서쪽으로 향하는 경계선은 이후 북쪽을 향하다가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해안 사이에 가상의 등거리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이어진다고 하였다.<sup>206)</sup>

경계획정 2단계의 과정에서 중요한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의 이동 또는 조정이 필요한 어떤 관련 사정에 대하여 ICJ는 ① 관련 해안 길이의 불균형, ② 전반적인 지리적 정황, ③ 당사국들의 행위, ④ 안보 및 법률제정의 고려, ⑤ 천연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⑥ 해역에 이미 발효된 경계선을 고려하였다.

① 관련해안의 길이와 관련한 ICJ의 판례를 살펴보면 2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첫째로 잠정적 중간선/등거리선의 이동 또는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련 해안의 길이에서 불균형이 상당한 지역에서 이며<sup>207)</sup>, 둘째로 해안선 길이의 불균형을 고려하는 것은 당사국들 해안의 길이 사이에 직접적이고 계산적인 관계의

204) Ibid., para. 145.

205)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I.C.J. Reports 2007(II), p.659.

206)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s. 164 ~165.

207)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nada/United States of America), I.C.J. Reports 1984, para. 185.;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Reports 2009, para. 164.

적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208)</sup> 이 사건에서, 관련된 콜롬비아 해안과 니카라과의 해안 사이에 불균형은 대략 1:8.2이다. ICJ는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sup>209)</sup>’와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Jamahiriya/Malta<sup>210)</sup>’ 사건을 예로 들며 이 사건에서 해안선의 길이의 비율의 불균형으로 잠정적 중간선/등거리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필요로 한다고 간주하였다.<sup>211)</sup> ② 전반적인 지리 상황을 살펴보면 설정된 잠정적 중간선의 효력은 니카라과의 해안이 돌출하는 특정해역의 4분의 3쯤으로부터 니카라과를 차단한다. 게다가 차단효과는 수 해리 떨어져 있는 작은 섬들에 의해 발생된다. ICJ는 그러한 섬들이 그들의 동쪽에 있는 해저와 해상에 대한 니카라과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100해리 이상 뻗어있는 연속적인 본토의 해안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ICJ는 차단효과는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잠정적 중간선의 이동이나 조정을 요구하는 관련 사정이라고 판결하였다.<sup>212)</sup> ③ 당사국들의 행위에 대하여 ICJ는 1928 협정이 82°자오선을 당사국들 사이의 해양경계선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앞서 판결하였으며<sup>213)</sup>, 관련 사건에서 관련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는 행위는 금지될 수 없으나, ICJ와 중재재판정들의 판결기록은 행위가 관련 사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sup>214)</sup> 결론적으로 현 사건에서 당사국들의 행위를 관련사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④ 안보 및 법률제정을 고려함에 있

208)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case

209)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I.C.J. Reports 1993, para. 61.; “비율은 대략 1:9”

210)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aras. 74 ~75.; “비율은 대략 1:8”

211)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211.

212) Ibid., para. 215.

213)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Preliminary Objections, I.C.J. Reports 2007(II), para. 120.

214)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I.C.J. Reports 1993, para. 86;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I.C.J. Reports 2002, para. 304;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Reports 2009, para. 198; Award of the Arbitration Tribunal in the Barbados/Trinidad and Tobago case 2006, RIAA, Vol. XXVII, para. 269;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139, p.533; Award of the Arbitration Tribunal in the Guyana/Suriname case(2007),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ward Series 2012, pp.147 ~153;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139, pp.673~678.

어서 ICJ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관리는 일반적으로 안보사정과 관련이 없으며 항행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나, 적법한 안보 관심사는 해양경계획정이 특별히 한 국가의 해안에 가깝게 실행되었다면 관련 사정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ICJ는 잠정적 중간선에 어떤 조정을 설정할지와 무슨 방식으로 선을 이동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고려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하였다.<sup>215)</sup> ⑤ 천연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관련해서는 중재재판소의 “Barbados/Trinidad and Tobago”사건에서 준수된 판례<sup>216)</sup>를 주목하면서, 이 사건이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관련 사정으로 여길 만큼 매우 특별한 사항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ICJ는 ⑥ 해역에 이미 발효된 경계선에 대하여 콜롬비아의 관련 해역 주장에 대하여 콜롬비아와 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인정여부, 위 협정들이 ICJ가 제3국의 권리를 고려해야 하는 요건으로 인하여 ICJ가 이 사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먼저, 콜롬비아와 파나마, 코스타리카, 자메이카가 맺은 협정은 적어도 상대국이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관련 해역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인정이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사이에 해양경계획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ICJ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관련 사정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ICJ는 두 국가 사이의 협정은 제3국의 권리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이 국제법의 근본적인 원칙이라 하였으며, “Island Palmas”사건<sup>217)</sup>의 판결내용을 인용하였다. 둘째로, ICJ는 ICJ 규정 제59조가 명확하게 하였듯이 ICJ의 판결은 그 사건에 관련된 당사국들 이외에 어느 국가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ICJ는 경계선의 한계를 정한 판결은 제3국의 어떠한 주장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3국에 제기하는 어떠한 주장에 편견 없이 니카라과의 권리에 역점을 두었다.<sup>218)</sup> 즉 여러 협정에 의한 해역에 이미 발효된 경계선을 관련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경계획정의 마지막 단계인 불균형심사(disproportionality test)을 실행함에 있어서

215)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222.

216) “관련자원의 기준은 국제적인 재판정의 판결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져 왔으며, 그러한 판결들은 일반적으로 관련자원을 관련사정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Award of 11 April 2006, RIAA, Vol. XXVII, para.241;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139, p.523.

217) “It is evident that whatever may be the right construction of a treaty, it cannot be interpreted as disposing of the rights of independent third Powers” Arbitral Tribunal in the Island of Palmas case, RIAA, Vol. II, p.842.

218)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228.

ICJ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하며, 해양경계획정은 관련 해역에 대해 당사국 각각의 몫과 당사국들 관련 해안의 길이 사이의 상호관계를 산출하고자 고안된 것이 아니라<sup>219)</sup>, 상당한 불균형을 검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경계획정 전 단계에서 고려사항들은 각 사건에서 특별한 상황에 따라 바뀔 것이라 하였으며<sup>220)</sup>, 최근의 판례에서 이를 ‘significant disproportion’<sup>221)</sup>, ‘비례성’<sup>222)</sup>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ICJ는 이전 단계에서 잠정적 중간선/등거리선의 조정 또는 이동시키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 경계선을 이동시켰으며, 최종적으로 경계획정 마지막 단계인 불균형심사(disproportionality test)에서 그러한 경계선의 적용에 따라 달성된 결과는 불공평한 결과를 발생시킬 만큼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sup>223)</sup>

### III. 검토·분석

이 사건은 서로 이웃하지 않지만 대항하는 국가 간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으로서 그 속에서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여 ICJ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했다. 이 사건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CJ는 동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규를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하였으며 경계획정 실행 방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3단계 방법(three stage)<sup>224)</sup>이라고 하였다.

둘째, 분쟁중인 섬에 대하여 상대국의 인지, 제3자에 의한 권리의 인정, 지도에 대한 증거력은 통치권에 대한 다소의 지지를 나타내지만, 무엇보다도 통치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결정적 기일 이후의 실효적 주권행사라고 하였다.

219)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ara. 58.

220)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Reports 2009, para. 213. “다양한 법정들과 ICJ 스스로는 해안선의 길이에 있어서 경계획정선이 불공평하고 여전히 조정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상당한 불균형을 구성하는 어떠한 불일치에 대하여 오랫동안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왔다.”

221)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499.

222) Award of 11 April 2006, RIAA, Vol. XXVII, para. 238.

223)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247.

224) 첫 번째 단계에서 당사국들의 영해를 포함한 영토사이에 잠정적 경계선을 설정, 두 번째 단계에서 공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의 이동 또는 조정이 필요한 어떤 관련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등거리선/중간선을 이동 또는 조정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 불균형심사를 통하여 당사국들의 개별적 할당이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원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를 따라야 하며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니카라과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예비정보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에 대한 요구정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니카라과의 주장을 거절하였다.

넷째, 동 사건에서 분쟁 중인 섬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재판소는 그러한 섬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언급된 예외에 이들이 포함되는지에 관계없이 12해리 영해를 갖는다고 하였다. ICJ에게 그들이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권원을 갖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뿐이라고 하였으며, 판례<sup>225)</sup>를 통하여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의 섬들에 의해 발생하는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권원과 중첩되는 작은 섬들에 대한 지위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다섯째, 3단계(three stage) 방법 중 2단계에서 고려하는 관련 사정의 사항으로서 당사국간의 해안길이의 불균형과 차단효과를 고려하였다.

여섯째, 상기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불균형 심사(disproportionality test)에 대하여 ICJ는 당사국들에게 할당된 관련 해역의 넓과 관련 해안의 길이 사이의 상호관계를 산출하고자 고안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불균형을 검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ICJ는 이전단계에서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이동시켰으며 현 단계, 즉 불균형심사에서는 불공평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기와 같은 이 사건의 판결내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주변국가와 해양경계획정에 관하여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관련 해안의 길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원 문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예비정보의 사항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 시 참고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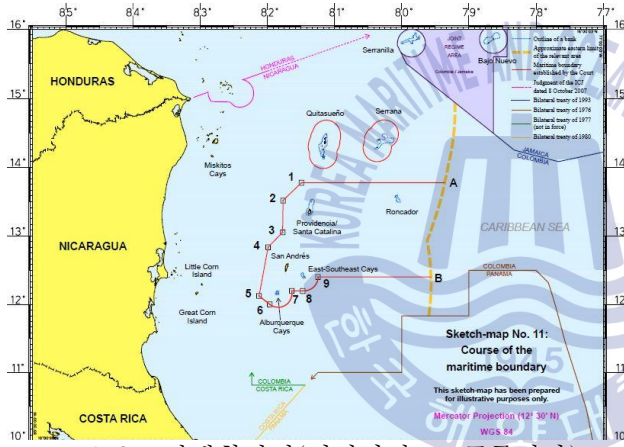
이 사건에서 관련 해안선의 길이의 차이에 대하여 관련 사정으로서 중간선/등거리선의 이동을 필요로 한다고 간주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경계획정에 있어서 해안선의 길이 문제를 겪을만한 곳은 서해와 동중국해로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비율의 차이는 1:0.8이라고<sup>226)</sup> 하였다. 우리가 해안선 길이의 차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해역에 대한 해안선의 길이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서 대응해야 하며 많은

225) Ibid., para. 187.

226)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한중간 황해 해안선 비율은 약 1:0.8이라고 한다. 양희철, 앞의 논문 (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33쪽.

사건의 판례에서 해안선 길이에 관련한 판결내용을 종합하여 해안선 길이의 차이가 관련 사정으로서 합당한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동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양국해양 경계획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에서 양국은 제주도 남동쪽에서 시작하여 동해 포항 앞바다 해역까지 대륙붕 경계획정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동중국해 쪽의 대륙붕과 동해의 포항 앞바다에서 북동쪽으로 향하는 대륙붕에 대하여 경계획정을 체결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동해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동중국해에서 대한민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계속된다는 주장<sup>227)</sup>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쟁점이었던 각 섬들에 대한 통치권에 대하여 ICJ는 결정적 기일 이후 행한 실효적 주권행사를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하였다. 이



<표 2> 경계획정선(니카라과 v. 콜롬비아)  
출처: ICJ Reports

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주권행사는 앞으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 체결 시 유리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동중국해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하는 우리의 자세와 이 사건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하는 니카라과와 비교하였을 때 양국은 모두 본토의 자연연장을 고려하여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ICJ는 니카라과의 주장에 대하여 대륙붕한계위원회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에 대한 요구 정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비정보를 제출한 것을 상기하며 니카라과의 대륙붕이 콜롬비아 대륙붕에 중첩될 만큼 충분히 멀리까지 확장하는 대륙붕 한계를 가진다고 여기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와 함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227) 2012년 12월 26일자 대륙붕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동중국해에서 우리 측 대륙붕 외측한계는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에 따라 200해리를 넘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르며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350해리 범위 내에서 FOS(6개)+60해리까지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였으며 일본 측 영해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 외측한계를 일부를 축소 조정하였다. 대륙붕 보도자료,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2012.12.26.

을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예비정보도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서 니카라과의 미흡한 예비정보가 ICJ로 하여금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반대를 야기하였듯이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를 통한 대륙붕의 자연연장을 주장하는 우리는 오키나와 해구에 대한 더욱 철저한 해양조사와 그를 뒷받침하는 학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이 불가할 경우 해양경계획정을 다루는 재판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그와 관련한 판례를 분석하여 대비하는 것도 해양경계획정에 임하는 좋은 자세라 하겠다.

### 제3절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

#### I. 사실관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갈만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 Bay of Bengal Case)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ITLOS)는 2012년 03월 14일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ITLOS의 사건 목록에 16번째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동안 ITLOS가 다루지 않았던 최초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건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sup>228)</sup>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가 2012년 09월 08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재판을 통하여 자국 및 미얀마, 인도 사이의 해양경계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중재절차를 시작하였다.<sup>229)230)</sup> 이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벵갈만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의 분쟁해결을 위해 ITLOS의 관할권을 받아들여<sup>231)</sup>

228) Robin Churchill, "The Bangladesh/Myanmar Case : Continuity and Novelty in the La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Cambridg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1 No.1(2012), p.137.

229)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3국은 당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었으나, 3국이 동 협약 287조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방글라데시는 동 협약 제287조에 기술된 분쟁 해결 방법 중 중재재판을 선택하였다. 이석용, 「ITLOS의 벵갈만 해양경계획정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징 분석」, 「강원법학」 제3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13.06.), 282쪽.

230)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중재) 제1조(소송절차의 제기)

“제15장의 규정에 따라 분쟁당사자는 타방 분쟁당사자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분쟁을 본부속서에 규정된 중재절차에 부탁할 수 있다. 통고는 청구 및 청구가 기초한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ITLOS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다.<sup>232)</sup> 해양경계획정의 대상 수역은 벵갈만의 북동쪽 해역이다. 벵갈만은 인도양 북동쪽에 위치하며 그 면적은 2,200,000km<sup>2</sup>이고, 미얀마, 쓰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가 접하고 있다.<sup>233)</sup> 방글라데시는 벵골만의 북쪽과 북동쪽에 위치하고 그의 육지영토는 인도와 미얀마에 접해있으며, 미얀마는 벵골만의 동쪽에 위치하고 그의 육지영토는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접하고 있다.<sup>234)</sup> 해양경계획정 대상은 영해,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으로 나뉘었으며 영해의 경계획정에서는 합의의사록, 묵시적 또는 사실상의 인정, 금반언의 원칙, St.Martin's 섬에 대하여 양국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서는 경계획정의 관련요소<sup>235)</sup>에 대하여 양국의 주장이 상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ITLOS의 관할권 여부와 설령 ITLOS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관할권을 행사해야만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국의 주장이 서로 달랐다.

## II. 판결내용

### 1. 영해의 경계획정

ITLOS는 영해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고려하였던 사항들, 즉 합의의사록과 묵시적 또는 사실상의 협정, 금반언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고려하여 영해에서의 경계획정을 판결하였다. ITLOS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1974년 및 2008년 합의의사록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가 의미하는 협정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방글라데시의 묵시적 또는 사실상의 해양경계협정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 거부하였으며 금

231) Bay of Bengal Case, ITLOS(2012), para. 2.

232)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간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상은 197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14번 있었으며, 그 중 8번은 1974년~1986년 사이에, 나머지 6번은 2008년~201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Ibid., para. 35.

233) Ibid., para. 33.

234) Ibid., paras. 34~35.

235) 당사국들이 살펴본 관련요소는 단일해양경계선, 관련해안, 경계획정 방법,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이었으며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이나 이동이 필요한 관련사정으로서 해안의 오목한 형상과 절단효과, St.Martin's 섬, 벵갈만의 퇴적계로서 상기 사항들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주장을 내세웠다.

반언의 필요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위의 사항 모두가 영해경계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ITLOS는 이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법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동의했던 점을 상기하며 유엔해양법협약이 적용 가능한 법이라고 하였다. 영해경계획정에 앞서 당사국들은 특별한 사정(St.Martin's 섬), 경계선, 방글라데시 St.Martin's 섬의 영해를 통한 미얀마 선박의 통항권리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웠으며 동 재판소는 이를 고려해야 했다. ITLOS는 판례와 국가관행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섬에 주어지는 효과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칙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St.Martin's 섬이 방글라데시 해안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본토 해안으로부터 12해리 영해 한계 내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미얀마가 제시한 대부분의 국가관행과 판례들은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이 있을 뿐 영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ITLOS는 St.Martin's 섬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며 영해의 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sup>236)</sup>

이로서 ITLOS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따라 당사국들의 영해는 등거리선에 의해 경계획정된다고 하였으며, 경계선은 양국이 사용하는 Admiralty Chart No. 817 상에 나타난 저조선에 등거리선을 그린다고 하였다. 경계선의 시작점은 양국이 동의한 Point A(20° 42' 15.8"N, 92°22' 07.2"E.)이며 방글라데시가 그린 2A(20° 40' 45.0"N, 92°20' 29.0" E)지점<sup>237)</sup>을 지나 C지점까지 이어졌다.<sup>238)</sup> C지점을 지나서부터 St.Martin's 섬의 효과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로 각기 주장하는 경계선이 달랐으나 동 섬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ITLOS의 판결에 따라 경계선은 당사국들의 영해가 중첩되지 않는 해역에서 등거리선에 따라 그려졌다.<sup>239)</sup>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제시한 좌표 8A까지 검토한 후 당사국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측정된 등거리선을 적절하게 정의하여 8개의 좌표로서 양국의 영해에 대한 경계획정을 판결하였다.<sup>240)</sup> 또한

236) Ibid., paras. 147~152.

237) 시작점 다음 두 번째 지점에 대하여 당사국들 사이에 의견이 달랐으나 ITLOS는 해도 817호에 나타나 있는 당사국들의 해안을 검토한 후 방글라데시가 그린 2A 지점을 인정했다. Ibid., paras. 159~161.

238) 2A지점을 지나서부터는 양국이 주장하는 변환점들이 C지점에 이를 때까지 유사하였다. Ibid., para. 162.

239) Ibid., paras. 163~164.

St.Martin's 섬 주변의 영해내에서 미얀마의 항해권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방글라데시의 답변으로서 1974년 11월 협정에 의거하여 방글라데시는 St.Martin's 섬 주변에서부터 Naff river 사이에서 미얀마 선박에게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은 권리를 허용했다고 하였으며 이를 공약하였다.<sup>241)</sup>

## 2.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200해리 이내에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그 경계선이 단일경계선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sup>242)</sup>, 이에 ITLOS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단일경계선을 획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상기 경계획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하는 법규에 대하여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라고 하였으며, 두 조항은 해역의 명칭만 다를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또한 ICJ 규정 제38조<sup>243)</sup>에 언급된 국제법의 규칙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동 규정을 참조한 국제 법정과 재판소의 결정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하에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적용 가능한 법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였다.<sup>244)</sup>

다음으로 살펴볼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에 대하여 ITLOS는 해양경계획정에서 하나의 해안이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지려면 그 해안은 다른 국가 해안의 투사와 중첩되는 투사를 반드시 산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ITLOS는 Meghna River 하구의 서쪽과 동쪽의 육지에 의해 형성된 방글라데시의 해안선 부분을 관련 해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미얀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 구역의 투사는

240) Ibid., paras. 165~166.

241) Ibid., paras. 172~176.

242) 방글라데시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적 관행은 두 구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단일 경계선을 그리는 것에 집중되었다고 하였다(Ibid., para. 179).

243)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법칙, 라.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최원목, 앞의 책, 90쪽.

244) Ibid., paras. 183~184.

미얀마 해안의 투사와 중첩되므로 관련 해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전체 해안은 미얀마 해안에서 비롯되는 투사와 중첩되는 투사를 만들어내므로 모든 해안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해안의 만곡과 복잡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는 2개의 직선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방글라데시의 관련 해안의 길이는 총 413km라고 하였다.<sup>245)</sup> 미얀마의 관련 해안과 관련하여 ITLOS는 Bhiff Cape 남쪽의 미얀마 해안선은 관련 해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글라데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미얀마의 해안은 방글라데시와의 육지 경계의 끝에서 Cape Negrais까지이고 방글라데시 해안으로부터의 투사와 중첩되는 투사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ITLOS는 미얀마의 해안을 측정함에 있어 해안 만곡으로 측정이 어려우므로 2개의 선으로 관련 해안을 측정하였으며 그 길이는 약 587km이다.<sup>246)</sup>

이 사건에서 ITLOS는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 방법에 대하여 그 동안의 판결기록들이 지지하는 등거리선/관련 사정의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며<sup>247)</sup>, 등거리선/관련 사정의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법정과 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하여 최근의 판례에서 발전한 3단계 접근법을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sup>248)</sup> ITLOS는 3단계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잠정적 등거리선을 작도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해안에 기점 총 6개를 바탕으로 ITLOS는 잠정적 등거리선을 작도하였다.<sup>249)</sup>

다음에서 ITLOS는 상기 설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에 대하여 조정이나 이동이 필요한 관련 사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ITLOS는 방글라데시 해안의 오목한 형태는 오목한 해안의 전형적인 예라 하였으며, 이는 North Sea 사건에서 독일이 인용했다고 하였다.<sup>250)</sup> 그러나 이러한 해안의 오목한 형태는 필연적으로 관련 사정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ITLOS는 방글라데시의 오목한 상태 때문에 설정

245) Ibid., paras. 198~202.

246) Ibid., paras. 203~204.

247) Ibid., paras. 219~238.

248) 3단계 접근법은 “i) 당사국들의 해안지형 과 수학적 계산에 기초하여 잠정적 등거리선 작도, ii)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요하는 관련사정의 여부 결정 및 관련사정 있을 시 조정 시행, iii) 조정된 경계선이 당사국들의 해안선 길이의 비율과 당사국들에게 할당된 해역의 비율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검토.”이다(Ibid., para. 240).

249) Ibid., paras. 271~274.

250) I.C.J. Pleadings, North Sea Continental Shelf, Vol.I, p.42.

된 잠정적 등거리선이 방글라데시의 해양으로의 투사에 대한 절단 효과를 야기하고 조정되지 않은 선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필요로 하는 공평한 해결을 달성할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ITLOS는 그려진 잠정적 등거리선이 그 선의 조정을 요구하는 해안에 대해 절단 효과를 만들어 내므로, 방글라데시의 오목한 상태의 해안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관련 사정으로 인정하였다.<sup>251)</sup> 그러나 ITLOS는 St.Martin's 섬에 대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서 동 섬에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획정 선의 부당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련 사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선을 그리는데 있어서 그 섬에 어떠한 효과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sup>252)</sup> 벵갈만의 퇴적계도 동 섬과 같이 관련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200해리 한계 내에서 상부수역, 하층토, 해저에 적용 가능한 단일 해양경계선의 방향과 위치는 경계획정구역의 해저의 지질 또는 지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당사국들의 해안의 지형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253)</sup> 상기 관련 사정을 살펴본 ITLOS는 방글라데시의 해안의 오목한 형태를 관련 사정으로 인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조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은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방글라데시 해안의 바다를 향하는 투사를 절단하기 시작한 지점(판결 전 Point X, 판결 후 Point 11)에서 편향되었다.<sup>254)</sup> 그리하여 200해리 이내에서 당사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위하여 조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은 Point 9에서 시작하여 Point 10(T), Point 11(X)를 차례로 연결하는 측지선을 따르며 그 이후부터는 경계선의 조정이 시작되어 방위각 215°로 이동하여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위치하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측지선으로 계속되었다.<sup>255)</sup>

### 3.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단일 대륙붕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으며 제7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연안국은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과 그 한계 이원의 대륙붕 사이에

251) Bay of Bengal Case, ITLOS(2012), para. 297.

252) Ibid., paras. 318~319.

253) Ibid., para. 322.

254) Ibid., para. 329.

255) Ibid., paras. 337~340.



발생하는 차별에 상관없이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는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들 사이에서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았다. 이점에 대하여 ITLOS는 “Arbitration between Barbados and Trinidad and Tobago”에서 중재재판소가 다루어야 할 분쟁은 외면의 대륙붕을 포함한다고 하였던 점에 주목하였다.<sup>256)</sup> 위와 같은 까닭으로 ITLOS는 전체 대륙붕을 경계획정할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였으며<sup>257)</sup>,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ITLOS 규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되었듯이 ITLOS의 결정은 그 특정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 이외에는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ITLOS에 의한 대륙붕 경계획정은 제3국의 권리를 손상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sup>258)</sup> ITLOS는 판례를<sup>259)</sup> 통하여 국제적인 법정과 재판소가 그의 관할권의 실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그리고 실제적인 각 사건의 사정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이 사건에서 ITLOS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의 협상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검토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적절한 권고를 발부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ITLOS는 이 사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제15장 제2절에 의거하여 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ITLOS는 분쟁을 판결하고 200해리 이원의 당사국 간 대륙붕을 획정할 의무를 가진다고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경계획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에 따르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의 설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260)</sup>

256) “the dispute to be dealt with by the Tribunal includes the outer continental shelf, since [...] it either forms part of, or is sufficiently closely related to, the dispute [...] and [...] in any event there is in law only a single ‘continental shelf’ rather than an inner continental shelf and a separate extended or outer continental shelf” Decision of 11 April 2006, RIAA, Vol.XXVII, p.147, at pp.208-209, para. 213.

257) Bay of Bengal Case, ITLOS(2012), paras. 361 ~363.

258) Ibid., paras. 361~367.

259) 중재재판소는 그의 관할권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그의 관할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실행하지 않았다. “As will become apparent, however, the single maritime boundary which the Tribunal has determined is such that, as between Barbados and Trinidad and Tobago, there is no single maritime boundary beyond 200 nm.” Decision of 11 April 2006, RIAA, Vol.XXVII, at p.242, para. 368.

당사국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였는데, ITLOS는 “자연연장(natural prolongation)”의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려해야 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sup>261)</sup> 제1항에서 사용된 “자연연장(natural prolongation)”이라는 용어는 그 다음 항에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 ITLOS는 이와 관련하여 대륙붕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North Sea 사건에서 소개되었으나 자연연장은 정의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하였다. 자연연장의 개념은 대륙변계에 대한 국가적 사법권을 확장하는 경향에 대한 지지를 더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의 자연연장 개념과 제4항의 대륙변계의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둘은 서로 같은 구역을 언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언급된 자연연장이 다른 것과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준을 구성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ITLOS는 자연연장의 언급은 대륙붕과 대륙변계를 정의하는 그 다음 조항들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즉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확인된 대륙변계의 외선을 참조하여 결정되며,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제76조 또는 그의 목적과 목표 모두에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ITLOS는 인도판과 버마판을 나누는 중요한 지질학적 단절의 이유로 미얀마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방글라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ITLOS는 벵갈만에 대한 방글라데시가 제출한 전문가 보고서, 즉 벵갈만의 해저는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된 퇴적물의 두꺼운 층으로 덮여있고<sup>262)</sup> 이는 벵갈만에 수 천년 동안 축적되었다는 것을 납득하였으나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의 구절이 대륙변계의 퇴적암석의 지리적 기원이 대륙붕 권리의 쟁점과 관련이 있거나, 한 국가가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구성하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따라서 ITLOS는 미얀마도 200

260) Bay of Bengal Case, ITLOS(2012), paras. 374~394.

261)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의 정의)

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을 정의하였으며 동 조 1항은 대륙붕의 범위를 정의했고 이후의 항들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262) Joseph R. Curray, “The Bengal 130 Depositional System: The Bengal Basin and the Bay of Bengal”, 23 June 2010; Joseph R. Curray, “Comments on the Myanmar Counter-Memorial, 1 December 2010”, of 8 March 2011; and Hermann Kudrass, “Elements of Geological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the Bay of Bengal: From the Coast to the Deep Sea”, of 8 March 2011.

해리 이원으로 확장하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ITLOS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쟁점사항인 적용법규와 경계획정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가 구역의 한계에 관계없이 인접 또는 대항하는 국가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초점을 둔 것에 주목하면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경계획정 방법은 200해리 이내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으며, 등거리선/관련 사정 방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ITLOS는 다음으로 관련사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사정으로 방글라데시는 벵갈만의 해저 하층토의 지질과 지형, 방글라데시 해안의 오목한 형태 및 단절효과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ITLOS는 가장 많은 자연연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방글라데시가 분쟁구역에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sup>263)</sup> 그러나 방글라데시 해안의 오목한 형태는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서 관련 사정으로 인정했음을 고려하여 이 관련 사정이 200해리 이원으로 계속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하였다.<sup>264)</sup> 결론적으로 ITLOS는 당사국들의 200해리 이내의 조정된 등거리선이 제3국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 지역에 이를 때까지 같은 방향으로 계속된다고 하였다.<sup>265)</sup>

해양경계획정의 마지막으로서 ITLOS는 당사국들의 관련 해역과 관련 해안의 길이 각각의 비율을 참조하여 등거리선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당사국들의 관련 해역에 대하여 ITLOS는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의 투사로 생긴다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당사국들이 ① Cape Negrais로 확장하는 Rakhine 해안의 남부구역에 관련된 남쪽 방향의 해역을 포함시키는 것과 ② 북서쪽 부분에서 관련 해역의 정확한 면적에 동의하지 않음을 상기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ITLOS는 상기 해역이 관련 해역에 포함된다고 했던 것을 상기하며 Cape Negrais로 확장하는 남쪽해역은 불균형심사를 위하여 관련 해역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중첩해역에 포함되는 해역의 남서쪽 부분에 대하여 ITLOS는 그것이 불균형 심사의 목적을 위해서 관련 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당사국들의 중첩되는 권리에 속하는 해역을 관련 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여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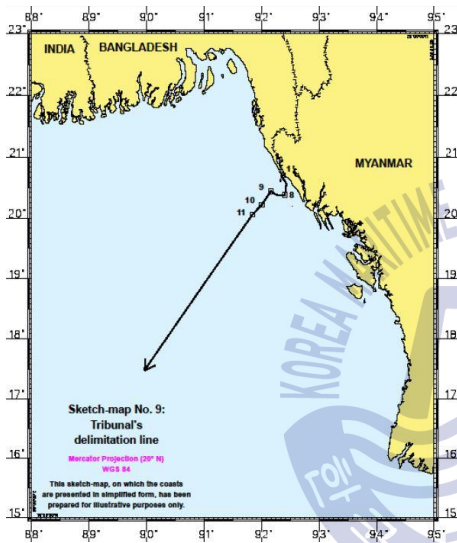
263) Bay of Bengal Case, ITLOS(2012), para. 460.

264) Ibid., para. 461.

265) Ibid., para. 462.

다.<sup>266)</sup> 그리하여 관련 해역의 총 면적은 약 283,471km<sup>2</sup>로 계산되었다.<sup>267)</sup> ITLOS는 계산된 관련 해역을 당사국들에게 할당하여 할당된 각 당사국들의 관련 해역의 비율과 관련 해안의 비율을 비교하여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그 비율<sup>268)</sup>이 조정된 등거리선의 이동을 요하는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sup>269)</sup>

### III. 검토·분석



<표 3> 경계 획정선(방글라데시 v.

미얀마) 출처: ITLOS Reports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벵갈만에서의 해양경계 획정 분쟁을 해결한 사건이고 ITLOS는 해역을 영해,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200해리 이원의

이 사건은 ITLOS 사건 목록 16번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동안 ITLOS가 다루지 않았던 최초의 해양경계 획정 사건으로서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분쟁 중인 여러 나라를 비롯하여 ITLOS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기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sup>270)</sup> 특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을 이행하는 ITLOS가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서 앞으로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함으로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266) Ibid., paras. 492~493.

267) Ibid., paras. 491, 495, 496.

268) 관련해안의 길이로서 방글라데시 413km, 미얀마는 587km이며 그 비율은 미얀마가 우세한 1:1.42, 할당된 관련해역은 방글라데시 111,631km<sup>2</sup>, 미얀마 171,832km<sup>2</sup>로서 그 비율은 미얀마가 우세한 1:1.54이다.

269) Ibid., para. 499.

270) ITLOS는 동 사건에 이전에 신속한 석방(prompt release)과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에 관한 사건만 다루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이행하는 ITLOS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해양경계 획정문제를 다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석용, 앞의 논문(ITLOS의 벵갈만 해양경계 획정 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징 분석), 305쪽.

대륙붕으로 나누어 판결하였다. 각 구역의 판결내용의 특징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변국과 관련한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하거나 협정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앞으로 분쟁 중인 해양경계획정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 영해의 경계획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영해경계선의 경계획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가 적용되어 이루어졌다. 둘째로 당사국들의 1974년 합의 의사록과 묵시적 또는 사실상의 협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로 본토에서 12해리 이내에 있는 St.Martin's 섬에 대하여 영해에서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특징은 첫째, 분쟁 해역에 대한 경계획정을 단일경계선으로 하였다. 둘째, 해안의 만곡과 복잡함으로 인하여 해안 길이의 측정을 위해 2개의 직선을 사용하였다. 셋째, 상기 해역에서 경계획정의 방법으로 그 동안의 판결기록들이 지지하는 등거리선/관련 사정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근에 발전한 3단계 접근법<sup>271)</sup>을 따랐다. 넷째, 해안선의 오목한 형태를 관련 사정으로 인정하였으나 St.Martin's 섬은 관련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ITLOS는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St.Martin's 섬에 효과를 부여하면 상기 구역에 부당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사정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벵갈만의 퇴적계도 관련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200해리 이내에서 상부수역, 하층토, 해저에 적용 가능한 단일 해양경계선은 경계획정구역의 해저 지질 또는 지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국들 해안의 지형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의 경계획정의 특징은 첫째, ITLOS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sup>272)</sup>와 제77조<sup>273)</sup> 제1항과 제2항, 제83조를 언급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중재재판소의 판례<sup>274)</sup>를 예로 들었다. 둘째,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ITLOS

271) 동 사건에서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한 재판소는 첫 번째 단계에서 당사국들 해안의 지형과 수학적 계산에 기초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작도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요하는 관련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존재한다면 공평한 결과를 산출하는 조정을 행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재판소는 조정된 경계선이 당사국들의 해안선 길이의 비율과 당사국들에게 할당된 관련 해역의 비율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을 가져오는지 검토한다. Bay of Bengal Case, ITLOS(2012), para. 240.

272)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의 정의)

273)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의 관할권 행사는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f the Limits of Continental Shelf)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확정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적용되어야 할 적용법규는 200해리 이내의 적용법규와 다르지 않으며 등거리선/관련 사정 방법이 적용되었다. 넷째, ITLOS는 관련 사정으로 벵갈만의 해저 하층토의 지질과 지형을 무시하였으며, 200해리 이내의 경계획정에서 인정되었던 방글라데시 해안의 오목한 형태는 200해리 이원의 경계획정에서도 관련 사정으로 인정하였다. 다섯째, 불균형 심사의 방법으로 당사국들의 관련해 역의 비율과 관련 해안의 길이의 비율을 참조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해,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은 각 해역별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3가지로 요약되며 그 중 첫째, St.Martin's 섬의 지위이다. 영해에서는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았으나 200해리 이내의 경계획정에서는 해양경계선에 지나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는 까닭으로 관련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섬과 관련한 사항은 독도가 유일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를 섬으로서 일본과의 해양경계선 설정 시 독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따르는 섬으로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향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St.Martin's 섬보다도 작고 섬이라기 보다는 암석에 가까운 독도가 경계선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이 사건의 St.Martin's 섬과는 성질이 다른 문제이나 어찌되었든 독도에 대한 섬의 완전한 효과 부여가 유엔해양법협약을 따른 것이든 아니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이든 간에 명확한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 현재 독도를 기준으로 하는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주장은 일본에게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에 정당성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무인도인 섬들에 대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하는 전초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사항은 벵갈만의 퇴적계가 관련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섬의 효과보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St.Martin's 섬

---

274) "Arbitration between Barbados and Trinidad and Tobago"사건에서 중재재판소가 다루어야 할 분쟁은 외면의 대륙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Decision of 11 April 2006, RIAA, Vol. XXVII, p.147, at pp.208~209, para. 213.

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상 명백한 섬으로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향유할 수 있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명백히 미얀마 해안의 투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ITLOS가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필요로 하는 관련 사정으로서 맹갈만의 퇴적계를 무시한 판결은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해저 지형의 퇴적물의 근원이 중국이라는 주장에 반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한국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역으로 해양경계획정 구역의 해저 지형을 관련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일본에게 오키나와 해구를 근거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하는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 주장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항은 경계획정의 방법으로서 ITLOS가 실행한 등거리선/관련 사정의 방법이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모든 재판소가 최근에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등거리선/관련 사정의 방법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 ITLOS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니 사실상 해양경계획정을 다루는 모든 재판소가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남중국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장하는 육지자연연장의 원칙은 북해대륙붕사건 이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반면에 등거리선/관련 사정의 방법의 사용은 더욱더 명백해지고 있다.<sup>275)</sup> 따라서 해양경계를 획정할 경우 관련 사정으로 여겨질 만한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불균형 심사를 관련 해안의 길이의 비와 관련해 역의 면적 비율을 비교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선행적 계산의 시행도 필요하다.

## 제4절 페루와 칠레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

### I. 사실관계

페루는 칠레를 상대로 2008년 01월 16일 양국의 해역 사이에 해양경계선을 획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ICJ에 제기하였다. 페루와 칠레는 남아메리카

275)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ara. 60.;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Reports 2009, p.101, paras. 115~116;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 190; Maritime Dispute(Peru v. Chile), ICJ Reports 2014, para. 180.

서쪽에 위치하고 그들의 육지 해안은 태평양을 향하며 해안의 형태는 뚜렷한 돌기 또는 다른 구별되는 특징이 없이 복잡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매끈하다. 양국은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 국가였으며 독립 후 1929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볼리비아 해안지방 Tacna는 페루로 Arica는 칠레의 영토가 되어 서로 인접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육지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80개의 표지를 지표에 설치하였다.<sup>276)</sup> 이 사건에서 쟁점은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 여부로서 페루는 합의된 해양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등거리선 방법을 사용하여 해양경계선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칠레는 1952 Santiago Declarations이 최소 200해리까지 확장하고 페루와 칠레의 시작점을 통과하는 위도 평행선을 따르는 국제적인 해양경계선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페루는 양국 간의 해양경계선이 끝나는 지점의 이원에서 그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에 놓인 해역에 대한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양국은 위와 관련하여 1947년선언<sup>277)</sup>, 1952년산티아고 선언<sup>278)</sup>, 다양한 1954년 협정들, 1968-1969년 등대 협정<sup>279)</sup>에 대하여 합의된 해양경계선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하였는데 칠레는 위 사항들이 해양경계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페루는 해양경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ICJ는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 여부 및 그 경계선의 범위와 페루가 주장하는 200해리 이원의 해양관할권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했다.

## II. 합의된 해양경계선에 대한 판결

당사국들은 과거의 선언과 협정들에서 해양경계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ICJ는 각각의 주장을 확인하고 각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

먼저 재판소는 페루와 칠레의 1947년 선언에 대하여 당사국들의 동 선언이 국제적인 해양경계선을 설립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던 점에 주목하였으며, 양국의 선언<sup>280)</sup>에서 나타난 각각의 평행선이 해양의 경계선으로 인정될 수 없다

276) Maritime Dispute(Peru v. Chile), ICJ Reports 2014, paras. 17~18.

277) Ibid., paras. 31~35.

278) Ibid., paras. 46~47, 50.

279) Ibid., para. 96.



고 판단하였다. 또한 ICJ는 1947년 선언에 관한 용어는 당사국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을 배제하였다. 결국 ICJ는 1947년 선언에서 합의된 경계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sup>281)</sup>

두 번째로 ICJ는 1952년 산티아고 선언<sup>282)</sup>을 검토하였다. ICJ는 동 선언이 당사국의 대륙 해안에 의해 발생하는 구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언급을 표현하지 않았고, 이는 해양경계선을 결정하는 협정에서 예상되는 정보의 부족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ICJ는 동 선언의 목적과 목표에 대하여 페루는 주로 고래 포획의 문제에 역점을, 칠레는 각 당사국 해역의 경계선을 식별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ICJ는 동 선언의 전문의 내용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천연자원의 보존과 보호 그리고 그들 해안에 인접한 해역의 확장을 통한 칠레, 에콰도르, 페루 국민의 경제적 발전에 집중하고 있음을 깨달았고<sup>283)</sup>, 결국 ICJ는 즉 페루와 칠레가 육지경계선의 바다 쪽 끝에서 태평양으로 달리는 위도의 선을 따르는 당사국들 사이에 바깥쪽 해양 경계선의 성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sup>284)</sup>

세 번째, ICJ는 1954년 다양한 협정들 중 그 첫 번째로 1952년 산티아고 보충협약을 검토하였다. ICJ는 1954년에 칠레, 에콰도르, 페루가 역점을 둔 주요 법률문서는 보충협약임에 공통된 입장을 취한 것에 주목하였다. 동 협약의 주요 목적은 주요 해양강국들에 대하여 1952년에 공동으로 만든 관할권과 통치권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ICJ는 주요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 또는 그 주요 목적이 각국의 회의와 1954년 회의의 유일한 결론을 결정짓는 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sup>285)</sup>

다음으로 재판소는 조약국들 해역의 관리와 통제의 방법에 관한 협정을 살펴 보았다. 재판소 ICJ는 Onassis 고래 포획 선단에 대하여 페루가 취한 조치가 좋은 예가 되었던 1952년 산티아고 선언에 의하여 3국이 취하는 실제로 구별되는 해역이 있을 것으로 여겼으나 조약국들 해역의 관리와 통제의 방법에 관

280) “Peru’s 1947 Decree”, Ibid., para. 38 및 “Chile’s 1947 Declaration”, Ibid., para. 37.

281) Ibid., paras. 39~44.

282) “1952 Santiago Declaration”, Ibid., para. 49.

283) Ibid., para. 63.

284) Ibid., para. 70.

285) Ibid., para. 77.

한 협정은 위치 또는 구역의 경계선의 본질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없으므로 동 협정을 해양경계선이 존재하는 협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sup>286)</sup>

1954년의 다양한 협정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ICJ는 특별 해양경계구역에 관한 협정(Special Maritime Frontier Zone Agreement)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CJ는 동 협정의 조항이 단지 에콰도르와 페루의 해양경계에 대한 것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견해이고 동 협정에 모든 국가의 대표들이 서명하였던 것에 주목하였다. ICJ는 동 협정에 대한 ICJ의 관심은 해양경계선의 존재 여부에 있으며, 그러한 사항은 동 협정의 제1항에<sup>287)</sup>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당사국들은 해양경계선이 이미 존재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협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았다.<sup>288)</sup> 그러나 동 협정은 해양경계선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 동의 되었는지 나타내지 않으며, 해양경계선의 존재에 대한 당사국들의 명확한 인지는 단지 그들이 이전에 합의한 묵시적 협정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ICJ는 1947년 선언과 1952년 산티아고 선언의 특정 요소들이 그들의 해양경계에 관한 당사국들 사이에 이해를 이끌어 낸 것을 암시한다고 하였다.<sup>289)</sup> 결론적으로 ICJ는 1954년 협정 당사국들이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네 번째로 1968-1969년 등대 협정에 대하여 ICJ는 협정의 지리적 범위와 목적은 제한적이라 하였으며, 해양경계선의 본질과 범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았다.<sup>290)</sup>

ICJ는 상기에서 살펴본 합의된 해양경계선에 대하여 그 한계로서 당사국들의 어로활동을 고려하였으며 해양경계선의 한계가 8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임시적으로 결정하였고<sup>291)</sup>, 동 결정에 문제가 관련될지 모르는 1954년 이후의 관행 요소<sup>292)</sup>를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ICJ는 위에서 결정한 임시적 결

286) Ibid., para. 79.

287) 1954 Special Maritime Frontier Zone Agreement 제1항 : “1. 특별구역은 해안으로부터 12해리의 거리에 설립되어있으며, 두 국가사이에 해양 경계선을 구성하는 평행선의 양쪽으로 10해리 폭으로 확장된다.” Maritime Dispute(Peru v. Chile), ICJ Reports 2014, para.81.

288) Ibid., paras. 85, 90.

289) Ibid., paras. 43, 69.

290) Ibid., para. 99.

291) Ibid.. paras. 116 ~117.

292) 당사국들의 입법관행, 1955가입의정서, Enforcement Activities, 1968-1969등대설치, 볼리비아와의 협상(1975-1976),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당사국들의 입장, 1986 Bákula 비망록,

론, 즉 당사국들의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한계가 8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없으므로<sup>293)</sup> 해양경계선은 그 선의 시작점으로부터 평행선을 따라 80해리까지 확장된다고 판결하였다.<sup>294)</sup> 또한 1954년 협정에서 승인된 묵시적 협정은 반드시 1947년 선언과 1952년 산티아고 선언의 정황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률문서들은 해저와 해저의 상부수역, 그들의 자원에 대한 주장을 나타냈으며 이점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그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그러한 공간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았으므로 ICJ는 해양경계선이 칠레가 주장하는 다목적 경계선<sup>295)</sup>이라고 결론 내렸다.<sup>296)</sup>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에 대하여 ICJ는 당사국이 등대 협정으로 신호로 보내려고 하는 해양경계선은 경계 표지 1번을 지나는 평행선에 의해 구성된다고 여겼으며, 양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합의된 대로 등대를 설치하여 1969년 조례의 권고를 이행하였고 경계 표지 1번을 통과하여 지나는 평행선을 신호로 알렸다. ICJ는 그러므로 1968-1969년 등대 협정은 합의된 해양경계선이 경계 표지 1번을 통과하여 지나는 평행선을 따른다는 강력한 증거의 대용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은 간조선과 경계 표지 1번을 통하여 지나는 위도 평행선의 교차점이라고 결론 내렸다.<sup>297)</sup>

위와 같이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를 판결함으로써 페루가 제기한 200해리 이원에서의 관할권에 대한 판결은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그 문제는 미결로 남게 되었다.

### III. 해양경계선의 방향 및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J는 당사국들 사이에 합의된 해양경계선이 존재하

1986년 이후의 관행.

293) 1947선언에서 당사국들은 200해리 해양 관할권을 공포하였으나 재판소는 1954년에 해양경계선의 존재에 대한 당사국들의 인식은 경계선이 그 당시에 당사국들의 실행능력을 넘어서 멀리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근거라 하였다. *Ibid.*, para. 149.

294) *Ibid.*, paras. 150~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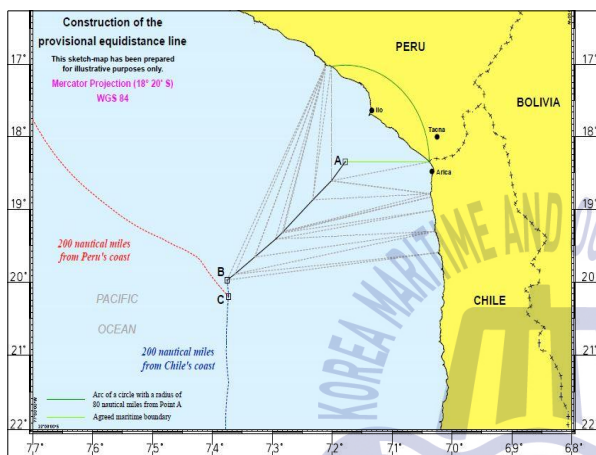
295) 칠레는 경계선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관습법에 따라서 그들의 자원에 대한 권리와 함께 해저, 하층토, 상부수역에 적용되는 다목적의 경계선이라 하였다.

296) *Ibid.*, paras. 100~102.

297) *Ibid.*, paras. 174, 176.

고 그 경계선은 간조선과 경계 표지 1번을 통과하여 지나는 위도 평행선의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그 평행선을 따라서 80해리까지 이어진다고 하였다. 80해리까지 나아간 지점을 A지점이라 하며 ICJ는 A지점 이후의 해양경계선의 방향을 결정해야 했다.<sup>298)</sup>

ICJ는 해양경계선의 진행 방향의 결정을 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 제1항과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으며 관습적인 국제법을 반영하였다.<sup>299)</sup> 그리고 공정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ICJ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3단계(three stage)” 방법이며 그 첫 번째는 잠정적 등거리선 설정, 두 번째는 잠



<표 4> 경계획정선(페루 v. 칠레), 출처: ICJ

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이 필요한 관련 사정의 존재 여부 확인, 세 번째는 불균형 심사를 실행하며, 불균형 심사는 조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이 관련 해역의 당사국들 각각의 할당이 그들의 관련 해안의 길이에 대하여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sup>300)</sup> ICJ는 이 사건에서 해역의 경계획정은 길이가 80해리라고 결정한 합의된 경계선의 끝점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시작점은 해안으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진 점에서 보통과 다르다고 하였다(칠레해안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80해리, 페루해안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45해리).<sup>301)</sup>

ICJ는 해양경계획정을 위해서 기점들을 선택하였으며, 각 당사국의 기점은 Point A로부터 80해리의 원호에 있는 육지와 만나는 점에서 시작되어 서로 동등한 거리에 있는 해안의 기점들이 선택되었다. 칠레는 그 기점이 해안의 북쪽

298) Ibid., paras. 174, 177.

299)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I.C.J. Reports 2001, p.91, para. 167;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II), p.674, para. 139.

300)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Reports 2009, pp.101-103, paras. 115~12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II), pp.695~696, paras. 190~193.

301) Maritime Dispute(Peru v. Chile), ICJ Reports 2014, paras. 174, 183.

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페루는 80해리 원호와 페루의 해안이 만나는 지점에서 거의 이동하지 않았다. 선택된 기점을 바탕으로 설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은 Point A에서 남서방향으로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고 그 선은 칠레 기선으로부터 측정된 200해리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이어진다(Point B). Point B 이후에는 당사국들의 해양 권원의 200해리 경계는 더 이상 중첩되지 않는 등거리선을 기초로 하여 확정된다. ICJ는 Point B 이후 칠레의 해양 권원의 200해리 경계는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Point B에서 해양경계선은 칠레와 페루의 200해리 해양 권원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어진다(Point C).<sup>302)</sup>

이제 ICJ는 앞서 결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에 조정을 필요로 하는 관련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은 당사국들의 해양 투사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절단을 피하므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ICJ가 이미 인지하였던 것처럼<sup>303)</sup> 위도 평행선을 따라 80해리 거리로 이어지는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는 그것이 특별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해안선의 길이와 관련 해역의 범위의 계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경계선의 존재는 수행될 비율의 통상의 수학적 계산을 어렵게 하므로 ICJ는 특별한 사정으로부터 야기되는 실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계산을 실행하지 않았던 사례<sup>304)</sup><sup>305)</sup>를 상기하였다. 그리하여 ICJ는 이 사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기와 같은 접근법을 따랐으며 잠정적 등거리선의 공평한 성질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불균형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정된 Point A, Point B, Point C를 연결하는 선이 해양경계선이 된다.<sup>306)</sup>

302) Ibid., paras. 174, 185~190.

303) Ibid., para. 188.

304)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53, para. 74.

305) 경계획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계산이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것이라고 한 사례; “[t]he object of delimitation is to achieve a delimitation that is equitable, not an equal apportionment of maritime areas”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Reports 2009, p.100, para. 111; see similarly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I.C.J. Reports 1993, pp.66~67, para.64, and p.68, para. 67.

306) Maritime Dispute(Peru v. Chile), ICJ Reports 2014, paras. 174, 191~195.

#### IV. 검토·분석

페루와 칠레간의 해양경계선 분쟁은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 국가였던 페루와 칠레는 독립 후 남태평양을 바라보는 해역에 대한 서로의 관할권 주장으로 해양경계획정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ICJ에 판결을 요청한 사건이다. 동북아 해역의 해양경계분쟁 상황과 동 사건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페루와 칠레의 해안선의 형태는 다소 단조롭고 무엇보다 도서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대항하는 국가가 아니므로 서로가 주장하는 해역의 중첩이 동북아 해역의 상황보다 적다. 실제로 페루와 칠레의 주장 내용은 주로 기존의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 ICJ의 판결내용을 요약해 보면 당사국들 간에 기존에 합의된 해양경계선이 존재하며, 그 해양경계선의 한계는 육지경계선으로부터 80해리까지이다. 80해리까지 나아가는 경계선은 그 지점에서부터 200해리까지의 경계선 획정 방법은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3단계(three stage)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그 이후의 경계선은 칠레와 페루의 200해리 해양 권원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어진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첫째, 당사국들 간에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육지경계선으로부터 그 해양경계선의 한계는 80해리까지 이어진다고 하였다. ICJ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소는 1954년의 다양한 협정들 중에서 1954년 특별 해양경계구역에 관한 협정(1954 Special Maritime Frontier Zone Arrangement) 제1항의 규정에서 해양경계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대하여 해양경계선이 이미 존재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협정으로 인식하였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동 협정은 경계선이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합의 되었는지 나타내지 않으며 경계선의 존재에 대한 당사국들의 인지는 그들이 이전에 합의한 묵시적 협정(tacit arrangement)을 나타내고, 이는 1947년 선언과 1952년 산티아고 선언의 특정 요소들이 해양경계선에 관한 당사국들 사이의 이해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ICJ는 1954년 협정 당사국들이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여겼다.

위의 판결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의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가 간의 행

위나 협정 체결 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tacit arrangement)의 존재와 그 이후의 협정에서 그러한 묵시적 합의의 확인은 묵시적 합의사항에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해역의 주변국들, 특히 우리나라를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묵시적 협정이 존재하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부구역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일본과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1974년 01월 30일 서울에서 양국이 서명하였으며, 1978년 06월 22일 발효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주도 남동쪽 해역에서 동해 포항앞바다까지 대륙붕의 경계선이 설정되었다. 이는 앞으로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판결내용의 특징 중 두 번째는 합의된 경계선 이후의 해양경계선의 획정 방법은 오늘날 일반적인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3단계(three stage) 방법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최근의 여러 재판정에서 3단계 방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해역의 주변국들과 해양경계획정 체결 시 3단계 방법에 따른 시나리오 작성 후 각 단계별로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인지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 시행되는 관련 사정<sup>307)</sup>에 대한 고려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판결내용의 특징 중 세 번째는 해양경계선은 단일 해양경계선(single maritime boundary)으로서 해저, 하층토, 상부수역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명백히 대륙붕제도와 배타적경제수역 제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대륙붕에 대하여 200해리 이원의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국가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근거자료인 예비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동북아 해역의 주변국들은

307)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그러한 원칙의 고려요소로서 황해 해저의 퇴적물(sedimentation), 해안선의 형성, 해안선 길이와 비율, 도서의 존재, 항구 등 지리적 요인과 지질 및 지형적 요인, 당사국의 행위, 제3국의 이익, 천연자원에 대한 평등한 이용을 주장하였다. 김용환, “중국의 해양경계선과 그 획정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해양정책연구』 제23권 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8), 53쪽; 양희철, 앞의 논문(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26쪽, 131쪽.

상호간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으로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하게 되면 서로 중첩되는 구역이 발생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갖추고 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관련 국가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308)</sup>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한계를 달리 주장하는 우리나라는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단일 해양경계선(single maritime boundary) 또는 이중 해양경계선(double maritime boundary)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308)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은 최근 판례: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s. 130~131.



## 제4장 양자협정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 사례

### 제1절 중국과 베트남 간의 해양경계협정

#### I. 사실관계

중국과 베트남 양국 사이에 통킹만(The Gulf of Tonkin)<sup>309)</sup>은 중국 남해안과 레이저우반도·하이난섬 및 베트남 북부해안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의 만으로서<sup>310)</sup> 양국이 오랫동안 어업활동과 해양경계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통킹만에서의 어업활동은 양국이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여 사용하였다. 통킹만은 중국과 베트남에게 있어 중요한 어업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4대어장 중에 하나이며, 동 해역에 상당한 천연자원이 예상되면서 양국에게 중요한 해역이다. 동 해역에서 양국은 서로에 대한 영유권을 부인하면서 1887년 중국과 프랑스 협약 및 지역적 기반을 둔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1957년 양국이 맺은 해양경계 및 어업관련협약은 1961년에 발효되었으나 2년 후 1963년 07월 31일에 종료하고 이후 1963년 08월 어업협정을 새로이 맺었다. 동 협정은 1969년까지 유지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2000년도까지 무협정의 상태로 방치되었다.<sup>311)</sup> 1993년 이전에 해양경계선에 대하여 베트남은 통킹만에서의 해양경계선의 기준을 “1887년 중국과 프랑스 조약”에서 규정한 기준선을 주장하였으나 중국은 그 선이 섬의 영유권을 구분할 뿐이라며 반대하였다.<sup>312)</sup> 이후 1993년

309)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항. “통킹만은 북쪽으로는 중국과 베트남의 육지영토의 연안에 접하고, 동쪽으로 중국의 Leizhou(레이저우반도 또는 뇌주반도)와 Hainan섬(해남도)에 접하고, 서쪽은 베트남의 육지해안에 의하여 반 폐쇄된 만이며, 그 남쪽한계는 중국 Hainan섬(해남도)의 Yingge Zui의 최외측점인 북위 18도 30분 19초/동경 108도 41분 17초, 베트남의 Con Co섬(콘코)을 통과하여 베트남해안의 북위 16도 57분 40초/동경 107도 08분 42초의 좌표를 연결한 직선인 지역이다.”

310)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법분쟁사례연구IV」(서울:해양수산부, 2006), 11쪽.

311) Zou keyuan, “The Sino-Vietnamese Agreement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Gulf of Tonkin”,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36 No.1(2005.), p.13.

08월 양국이 “1993 기본협정(1993년 양국간 육지 경계 및 통킹만에서의 해양경계협정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의 영토 및 해양경계 확정에 관한 협상이 본격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양국 간의 어업과 해양경계협정에 대하여 중요한 진척<sup>313)</sup>이 있었고 그에 따라 2000년 12월 25일 어업협정과 해양경계협정 체결에 이르렀다. 동 협정은 2004년 06월 30일에 발효되었다.

## II. 협정의 주요내용

### 1. 어업협정

양국이 체결한 어업협정은 총 7부<sup>314)</sup>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동 협정의 특징은 각 부의 표제에 잘 나타나있다. 동 협정의 특징은 4가지로 압축되는데 첫째, 양국이 선린우호관계를 반영하여 전통적인 어업질서를 확립하였다. 큰 차이점은 동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인 1957년 협정, 1961년 협정, 1963년 협정에서 양국은 연안에서 12해리까지 경계로 하고 그 외의 해역은 자유로운 어업을 서로 허용하였으나 동 협정에서 양국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외측까지를 경계선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동 협정 제3조~제10조<공동어업구역>와 제11조<잠정협정수역>, 제12조<소형어선들을 위한 완충수역>의 규정을 두어 기존의 어업질서를 존중하였다. 둘째, 동 협정 제2부<공동어업구역>의 규정에 기술된 공동어업구역의 관리를 위해 공동어업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공동어업위원회에서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양 당사국의 국내법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공동어업구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립한 규칙에 따라 양 당사국의 국민과 어선을 관리, 감독한다고 하였다.<sup>315)</sup>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정에

312) Nguyen Hong Thao, “Maritime Delimitation and Fishery Cooperation in the Tonkin Gulf”,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36(2005.), p.27.

313) 1993년부터 2000년 사이 당사국간에는 7차례의 정부간 협상, 3번의 협상대표회담, 18번의 공동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회의가 이루어졌다. 최진모, “중국-베트남간 통킹만 어업협정 및 해양경계협정 사례에 관한 소고”, 「해양정책연구」 제21권 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6), 118쪽.

314)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통킹만에서의 공동어업에 관한 협정의 구성 제1부(일반규정), 제2부(공동어업구역), 제3부(잠정협정), 제4부(소형어선의 관리를 위한 완충수역), 제5부(중국-베트남 공동어업위원회), 제6부(잡칙), 제7부(최종규정).

315)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통킹만에서의 공동어업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

서 잠정조치수역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점은 공동어업구역 내에 해양경계선이 존재하며 각 당사국은 자국 측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권의 행사는 공동어업위원회의 규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sup>316)</sup> 셋째, 동 협정 제3부에 기술된 <잠정협정>이다.<sup>317)</sup> 잠정협정 수역은 일반적으로 해양경계획정 이전에 체결되는 어업협정에 나타나는데 동 협정에서는 어업협정과 해양경계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에 나타났다. 규정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잠정협정이 동 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간 유효하며 동 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효된다고 하였다.<sup>318)</sup> 즉 4년의 기간을 두어 양국의 어민들이 자유로이 조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당사국 간의 선린우호관계를 고려하고 동 수역 내에서의 전통적인 어업질서를 존중하기 위함이다.<sup>319)</sup> 넷째, 동 협정은 제4부에 <소형어선을 위한 완충수역>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항해장비가 열악한 소형어선들이 조업 중 실수로 상대국의 영해 내로 진입하는 것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한국, 일본과 체결한 어업협정의 내용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 2. 해양경계협정

중국과 베트남 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은 총 11조문으로 구성되며 동 협정의 특징은 전문에서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조문에 잘 나타나 있다.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동 협정의 전문<sup>320)</sup>에 기술된

항.

316) 위의 협정 제9조.

317) 위의 협정 제3부(잠정협정) 제11조

1. 각 당사국은 공동어업구역 북쪽(북위 20도 이북)의 타방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위한 잠정협정을 체결한다. 잠정협정은 이 협정 발효시부터 이행한다. 타방 당사국은 매년 조업어선을 감소시킬 방법을 마련한다. 잠정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간 유효하다(잠정협정은 이 협정발효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효된다).

2. 잠정협정수역의 범위와 관리방법은 이 협정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는 당사국간의 추가의 정서에서 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잠정협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타방당사국의 자국 수역 내에서의 조업을 의 정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18) 위의 협정 제3부(잠정협정) 제11조.

319) 최진모, 앞의 논문, 115쪽.

320)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의 전문

바와 같이 해양경계획정을 우호적 협의 하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당사국들은 또한 공평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관련 사정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해안으로부터 돌출된 도서에 대한 효과의 정도와 해안선의 길이 비율과 관련 해역 비율을 고려한 비례성이 관련 사정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당사국들이 해양경계획정을 위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국제법원칙과 국제관행을 적용법규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추가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통킹만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형평의 원칙, 우호적 협의를 통한 것을 규정하였다.<sup>321)</sup> 셋째, 당사국들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의 방식을 단일경계선으로 하였다. 동 협정 제2조는 당사국들의 영해,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경계선을 좌표를 연결하는 선으로서 기술하였으며, 제4조에서 통킹만에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경계하는 선으로서 동 협정 제2조에서 기술한 좌표 제9지점부터 제21지점을 연결한 선이라고 하였다.<sup>322)</sup> 넷째, 당사국들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해서 대상해역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는 동 협정 제1조 제2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된 해역이 경계획정협의의 대상해역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당사국들은 동 협정의 제2조에 기술된 해양경계선에 걸쳐서 존재하는 자원(석유, 가스, 기타 광물자원)이 단일한 지구물리확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양국이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자원의 개발의 이익이 동등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원에 대한 개발 합의를 이룬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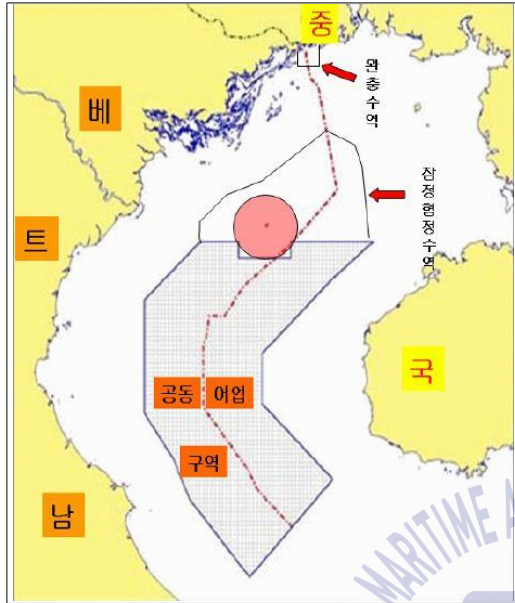
### III. 검토·분석

중국과 베트남이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낸 어업협정과 해양경계협정은 중국에게는 최초의 해양경계획정 협정이므로 중국과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하지 못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협정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국 간에 체결한 어업협정의 특징은 전통적인 어업질서의 존중, 공동어업구역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공동어업위원회 설립 및 운영, 타 당사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을 위한 4년 시효의 잠정협정, 공동어업구역 설정, 완충수역의 설치등이다. 전통적인 어업질서의 존중은 상설중재판소와 ICJ의 판결<sup>323)</sup>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당사국

321) 위의 협정 제1조.

322) 위의 협정 제2조 및 제4조.

이 이를 이해하고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어업구역 내에서 관할권은 기국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설정된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타 당사국 수역에서 불법어



<표 5> 양자협정사례(중국과 베트남)

출처: 최진모 논문 “중국-베트남간 통킹만 어업협정 및 해양경계협정 사례에 관한 소고”

로 또는 무허가진입의 경우에는 그 해역의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공동어업위원회의 역할은 상기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공동어업위원회를 통하여 우호적인 협의로서 해결하도록 하여 사법적 해결을 배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제대로 된 항법장치(특히 위치시스템)를 갖추지 못한 어선이 조업활동 중 상대국의 영해로 진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수역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sup>324)</sup> 이는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어업협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수역이다. 위와 같이 살펴보았듯이 중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어업협정은 당사국들이 서로 우호적 협

의를 통하여 합의한 협정으로 보인다.<sup>325)</sup>

다음으로 살펴 볼 내용은 중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해양경계협정으로서 이는 중국이 주변국과 최초로 체결한 해양경계협정에 관한 양자협정이며,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국과의 해양경계협정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양경계협정에 대한 중국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협정이다. 당사국 간에 체결된 협정 내용에서 해양경계협정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사항들을 경계협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였

323) 관례에 따르면 “지역의 특유한 관습 또는 특별한 관련 사정으로서 그 지역만의 특유한 공존형태의 공동어업방식이 있는 경우 이를 경계협정의 결과와 무관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I」(서울:해양수산부, 2005), 304~308쪽;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III」(서울:해양수산부, 2005), 328~330쪽.

324)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통킹만에서의 공동어업에 관한 협정 제12조.

325)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통킹만에서의 공동어업에 관한 협정의 전문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두 나라와 두 나라 국민들 간의 전통적인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 유지하기 위하여.....통킹만에서 두 나라의 주권, 주권적 권리 그리고 관할권에 관한 상호주의 관점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우호적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나타난다.

으며 고려된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당사국 간에 해양경계획정이 필요한 해역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인데 이중 쟁점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분리하여 설정하거나 혹은 단일경계선을 설정할지 여부인데 동 협정에서는 단일경계선을 설정하였다.<sup>326)</sup> 물론 통킹만이 반폐쇄해이고 당사국 간의 거리가 110~180해리로서 유엔해양법협약상 주장할 수 있는 200해리 이내에<sup>327)</sup> 동 해역이 존재하며, 최대 수심이 97m로서 단일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단일경계선의 설정은 당연한 결과 일지도 모른다. 동 협정 체결 당시의 해양경계획정의 여러 사건에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 단일경계선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sup>328)</sup>, 동 협정의 목적이 우호적 합의<sup>329)</sup>임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이 국제적 추세를 받아들이고 다툼 없이 경계획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각국이 200해리를 주장할 시 서로 겹치는 곳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중국이 우리와의 해양경계획정 시에 단일경계선을 설정할지는 확실치 않으나, 현재 중국이 해양경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마찰을 피하는 것으로 볼 때 베트남과 체결한 해양경계획정처럼 단일경계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동 협정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이 우리나라와 단일해양경계선을 설정 하더라도 해양경계선에 걸쳐서 존재하는 자원에 대하여 우호적 협의를 통해 개발 이익을 공동으로 공유하자는 제안의 가능성은 열려있다.<sup>330)</sup> 둘째, 당사국은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대하여 동 협정 전문에

326)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제2조.

327) 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대륙붕의 정의>

328) 미국 대 캐나다간 메인만 해양경계획정 사건(I.C.J. Reports, 1984); 아르헨티나 대 칠레간 대륙붕 경계협정(I.C.J. Reports, 1984); 북한 소련간 영해경계협정(I.C.J. Reports, 1985); 덴마크 대 노르웨이간 그린랜드-안마이엔 해양경계획정 사건(I.C.J. Reports, 1988); 캐나다 대 프랑스간 생피에르 및 미크롱 해양경계획정 사건(중재재판소, 1989); 에리트리아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중재재판소, 1999); 카타르 대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 사건(I.C.J. Reports, 2001),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I.C.J. Reports, 2002)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법분쟁사례연구종합 V」(서울:해양수산부, 2006), 285쪽.

329)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전문 내용.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전통적인 선린 우호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각자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평등과 상호이익, 평화공존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통킹만의 경계획정문제를 우호적 협의, 공평성, 합리성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였다.”

330)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

기술하였으며, 해양경계획정의 관련 사정으로 해안선 길이의 비례성을 고려하였다. 국제적 재판정 판례에서 해안선 길이의 비례성을 관련 사정으로 판단하여 중간선/등거리선을 조정 또는 이동시킨 경우는 다수 존재한다.<sup>331)</sup> 일반적으로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관련 사정으로 고려되는 사항을 요약해 보면 해안 길이의 비례성<sup>332)</sup>, 자원 접근성<sup>333)</sup>, 도시의 효과 정도, 역사적 권리, 사회경제적 요소 정도로 압축된다. 해양경계획정에서 관련 사정으로 비례성이란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이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칙의 하나로서 당사국의 해안선의 길이의 비율과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 및 경계획정으로 귀속될 해역의 면적범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sup>334)</sup> 그러나 비례성 원칙이 해양경계획정 단계에서 잠정적 중간선/등거리선을 설정하는 원칙은 아니며 설정된 중간선/등거리선을 조정 또는 이동시키는 사항으로서 고려되는 요소이다. 동 협정에 대하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사국들이 해안선 길이의 비를 관련 사정으로 사용하였으나 정확한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경계획정의 대상이 된 해안선의 길이는 베트남 763km/중국 695km이며, 이에 따른 귀속된 수역의 비율은 베트남 53.23%/중국 46.77%라고 하였다.<sup>335)</sup> 서해(황해)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서로 대항하여 마주보고 있으며

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제7조.

- 331) - 대륙붕경계획정사례로는 1969년 북해대륙붕경계획정사례, 1977년 영불대륙붕경계획정 사례, 1982년 튀니지-리비아 사례, 1985년 리비아-말타 사례,  
 - 단일해양경계획정 사례로는 1984년 메인만 사례, 1985년 기니아-기네비소사례, 1992년 생피에르-미켈롱 사례, 1993년 그린랜드 안마엔 사례, 1999년 에리트리아-에멘 사례,  
 - 경계획정시의 국가관행(협정)으로는 1974년 프랑스-스페인간 비스카이만 경계협정, 1992년 영국-아일랜드간 대륙붕경계협정 추가의정서, 1978년 베네수엘라-네덜란드 경계협정, 1986년 버마-인도간 경계협정, 1988년 덴마크와 독일간 경계협정., Tanaka Yoshifumi,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Proportionality in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16 No.3(2001), pp.434~457; Robert Kolb, *Case Law on Equitable Maritime Delimitation-Digest and Commentaries*, (The Hague: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p.319.
- 332) 해안선 길이의 비례성은 북해(ICJ Reports 1969, p.52, para. 98)과 미국/캐나다 메인만 산건(ICJ Reports 1984, p.336, paras. 221-222.), 리비아/튀니지(ICJ Reports 1985, p.93, para. 1), 리비아/몰타(ICJ Reports 1985, p.50, para. 68, p.56, para. 7), 덴마크/노르웨이(ICJ Reports 1993, p.69, para. 69)의 대륙붕 경계획정 판결에서 고려되었다.
- 333)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자연자원을 경계획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하였으며(ICJ Reports 1969, p.54, para. 101.), 리비아/몰타 사건에서는 자연자원이 해저지역에 대한 권리 주장의 주요 목적이라 하였다.(ICJ Reports 1985, p.41, para. 52) 이외에도 튀니지/리비아 사건에서는 석유채굴권이 중요한 사정으로 인정되었다.(ICJ Reports 1985, p.71, para. 96.)
- 334) 최진모, 앞의 논문, 120쪽.
- 335)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앞의 책(국제해양법분쟁사례연구IV), 16쪽.

그 거리가 400해리 미만으로 중첩해역을 이룬다. 또한 수심이 깊지 않으며 단일한 대륙붕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양국이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할 경우 최근 국제적 경향인 잠정적 중간선/등거리선을 설정한 후 그 경계선을 조정 또는 이동시키는 관련 사정으로서 양국의 해안선의 길이와 관련 해역의 면적 비율을 고려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관련 해안의 길이 비교와 그에 따른 관련 해역의 비율을 연구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비율 비교 이전에 해당 수역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동 협정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통킹만 내에 각국이 소유하는 섬에 대하여 경계획정기준으로서 효과 부여를 달리하였다.<sup>336)</sup>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르면 만조시에 수면상에 있고 물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인 도서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337)</sup> 중국과 베트남은 유엔해양법협약상에 규정된 도서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 각각의 섬에 서로 다른 효과를 부여하였다. 백룡미도(25% 효과), 콘코섬(50% 효과), Chang Dong 및 Chang Tay(부분효과)이 베트남이 소유하는 섬에 대한 예이며, Bai Su Yan(부분효과)는 중국이 소유한 섬에 대한 예이다. 물론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라 할지라도 사람이 거주를 지속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섬은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당사국들이 소유하는 섬에 대하여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상기 섬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상기 섬들 중에서 베트남이 소유하는 백룡미도(25% 효과)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라는 점이다.<sup>338)</sup> 그 섬 주변으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권원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그 섬에 대하여 완전한 효과를 주장하지 않고 25%효과를 부여한 것에 동의한 것은 그 섬이 베트남 연안으로부터 약 38해리 떨어져 있고 중국의 해남도로부터 약 71해리 떨어져 있으므로 그 섬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서 동 협정을 평화적이고 우호적으로 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sup>339)</sup> 동 협정에서 백

336) 해양경계획정에서 섬에 대한 효과는 완전한 효과(full effect), 부분 효과(partial effect), 절반 효과(half effect), 무효과(zero effect)로 나타난다.

337)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도서제도)

338)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를 지속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섬을 암섬이라 하였으며 위 사항을 제외한 도서는 동 협약 2항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다 하였다.



룽미도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위요지(enclave)”로 설정하였으며 섬 주변의 15해리를 베트남에게 보장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해결해야 할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도서에 대한 문제는 기점 설정과 그러한 기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직선기선<sup>340)</sup>을 설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sup>341)</sup>에 따르면 영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제5조<sup>342)</sup>을 적용해야 하고 그 예외의 경우 직선기선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모든 기점에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sup>343)</sup> 또한 도서에 대하여 기점을 설정함에 있어 단순한 모래톱(tidal flats)인 사주에 설정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중국의 기점 9번과 10번에 해당). 가령 상기 사항에 대하여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2항<sup>344)</sup>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저조선에 본토 해안으로 분리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 기점 설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베트남은 통킹만에서 어업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각 당사국의 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을 예상해보면, ① 육지자연연장의 원칙, ②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분리 가능성,

339)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보다 돌출된 섬에 대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시 형평한 결과 도출을 달성하려는 해양경계획정의 목표에서 현저하게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섬에 대한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진모, 앞의 논문, 123쪽.

340) 중국의 영해에 대한 직선기선의 주장은 1958년 “자국의 영해선언(Declaration on China’s Territorial Sea)”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PRC’s Law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와 1996년 05월 “영해의 기선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Baselines of the Territorial Sea)”에 나타난다.

341)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직선기선)

342) 유엔해양법협약 제5조(통상기선)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의 폭을 규정하는 통상기선은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륙척해도에 표시된 연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343) 전반적으로 중국의 직선기선의 설정 해안은 깊게 굴곡하지도 않으며 또한 인근에 도서가 산재하지 않으며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각론), 45쪽.

344)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2항 “삼각주와 기타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극히 불안정한 경우, 저조선의 해양측 최장범위를 따라 적당한 지점이 선택될 수 있으며, 그 후 저조선이 후퇴되더라도 그러한 기선은 본 협약에 따라 연안국이 변경할 때까지는 유효하다.”

③ 해양경계획정과 어업협정의 분리 가능성, ④ 경계획정을 한·중 해역과 한·중·일 해역으로 한정하여 경계획정 체결 가능성, ⑤ 비례성 원칙, ⑥ 도서에 대한 부적절한 주장, ⑦ 해양경계선 주변의 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및 공동이익 추구로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철저한 해양조사와 활발한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해양경계획정에 임해야 하겠다.

## 제2절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의 해양경계협정

### I. 사실관계

바렌츠해(Barents Sea)는 러시아 북서부 해안과 노르웨이 북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극해의 일부이다. 러시아 북서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북해안, 노바야젬라 섬,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수심은 대부분이 200~400미터로서 얕다. 바렌츠해는 과거 러시아의 북해함대가 서유럽으로 직접 항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진로였으나 18세기 전반에 발트해를 얻음으로서 그 중요성은 약해졌다.<sup>345)346)</sup> 2008년에 미국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은 바렌츠해의 원유,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등의 평가를 시행한 결과, 바렌츠해에는 약 110억 배럴의 석유와 38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270만톤의 액화천연가스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발견되지 않은 석유는 동쪽 바렌츠 분지 지역(East Barents Basins Province)에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sup>347)</sup>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바렌츠해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며 본토를 기준으로 양국은 서로 인접하는 국가이며 노르웨이의 스발바르(Svalbard)의 존재로 양국은 또한 대항하는 관계에 있다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해양경계협정은 4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시작은 1957년 북극해에서 양국이 맺은 “1957년 협정”이다. 동 협정에 따르면 해양경계선은 “Varangerfjord”을 통하여 북동방향에서 육지 경계선의 북쪽 끝까지 미치며, “Varangerfjord”의 폐쇄선에서 종료됨으로서 바렌츠해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 이후

345)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Barents Sea.

346)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Limits and Ocean and Sea*, 3rd. ed.(IHO, 1953), pp.7-8.

347) Assessment of Undiscovered Petroleum Resources of the Barents Sea Shelf, U.S. Geological Survey(2008). <http://pubs.usgs.gov/fs/2009/3037/pdf/FS09-3037.pdf>

해양경계에 대한 문제는 1958년 대륙붕협약에 따라 1963년에 노르웨이(348), 1968년에 소련(349) 각국의 해안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해양경계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어졌다. 그리하여 양국은 1970년에 비공식적인 협상 그리고 1974년에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sup>350)</sup> 그러나 그 이후 배타적경제수역 개념의 등장으로 양국은 각국의 해역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해양경계협상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같이 다루어야만 했다.<sup>351)</sup> 그러나 양국 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업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에 양국은 분쟁해역에서 어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Grey Zone Agreement”를 1978년 01월에 체결하였다.<sup>352)</sup> 동 협정은 일시적인 협정으로서 협정 후 1년을 확대하여 유지되었으며, 양국은 협정해역에서 자국국기를 게양한 어선과 면허를 취득하여 동해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3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관리하였다.<sup>353)</sup>

양국은 1958년 대륙붕협약 당사국이었으며 대륙붕협약 제6조에 따르면 대륙붕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선이라고 하였으며 양국은 이를 지지하였다.<sup>354)</sup> 이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 대륙붕협약의 제74조와 제83조를 경계협정에 적용할 수 있었다. 해양경계선 설정에 있어서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단일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해양경계선 설정의 원칙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해양경계선 설정의 원칙에 있어 노르웨이

348) Royal Decree of 31 May 1963 Relating to the Sovereignty of Norway over the Sea-Bed and Subsoil outside the Norwegian Coast.

349) Decree of the Presidium of 6 February 1968 on the Continental Shelf.

350) Øystein Jensen, “Current Legal Developments The Barents Sea”,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6 Issue 1(2011), p.151.

351) Thilno Neumann, “Norway and Russia Agree on Maritime Boundary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14., Issue 34(2010.11).

352) Avtale mellom Norge og Sovjetunionen om en midlertidig praktisk ordning for fisket i et tilstøtende område i Barentshavet med tilhørende protokoll og erklæring (translated to “Agreement Between Norway and the Soviet Union on a Temporary and Practical Arrangement for the Fishery in an Adjacent Area of the Barents Sea”) Oslo 11 January 1978, in force 27 April 1978, Overenskomster med fremmede stater(1978), 436.

353) 예병환, “러시아-노르웨이 해양분쟁과 바렌츠해 조약”, 「독도연구」 제14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2013.6), 153쪽.

354) Alex G. Oude Elferink, “Arctic Maritime Delimitations: The Preponderance of Similarities with Other Regions,” in *The Law of the Sea and Polar Maritime Delimitation and Jurisdiction*, ed. A.G. Oude Elferink and D. Rothwell (The Hague: Martinus Nijhoff, 2001), n.33, pp.186 ~187 참조.

는 중간선 원칙을 내세우며 중첩되는 해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양국 간의 해양경계선은 노르웨이 본토 해안선 및 스발바르도(노르웨이)섬과 러시아의 바야 제플라 및 프란츠 이오시프 섬들 사이의 중간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러시아는 특별한 사정<sup>355)</sup>의 존재를 주장하며 해양경계선으로서 “Svalbard Treaty”에 따라 “Sector Line”을 내세웠다.<sup>356)</sup>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의견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40년동안 양국의 협상 노력으로 볼 때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협상의지는 확고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2010년 협정이 이루어졌다.

## II. 협정의 주요내용

2007년에 양국은 1957년 협정을 수정하였으나 동 협정은 2010년 04월에 이르러서야 노르웨이 Jens Stoltenberg 장관에 의해서 몇몇 요소들을 제외하고 협상이 완료되었음이 알려졌다. 이후 양국은 2010년 09월 15일 바렌해와 북극해(Artic Ocean)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협정에 각 당사국의 외무부장관이 서명함으로써 40년 동안의 긴 협의를 마무리하였다.<sup>357)</sup>

2010 협정에 따르면 양국 간의 해양경계선은 8개의 지점<sup>358)</sup>으로 이루어지며 해양경계선 획정 원칙에 대한 서로의 주장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분쟁해역<sup>359)</sup>을 거의 반으로 분할하였다. 협정의 전문에 따르면 동 협정은 양국 간의 우호적 이웃관계를

---

355) ...a number of special circumstances(i.e., geographic, geologic, demographic, strategic, and climatic factors)...., Thilo Neumann, “Norway and Russia Agree on Maritime Boundary in the Barent Sea and the Arctic Ocean”,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14 Issue 34(2010.11)

356) Treaty Concerning the Archipelago of Spitsbergen, signed in Paris on 9 February 1920, in force 14 August 1925, 2 L.N.T.S. 7. available at [http://www.sysselmannen.no/The\\_Svalbard\\_Treaty\\_9ssFy.pdf](http://www.sysselmannen.no/The_Svalbard_Treaty_9ssFy.pdf).file(The Svalbard Treaty recognizes the full and absolute sovereignty of Norway over the Arctic Archipelago of Spitsbergen (now called Svalbard)

357) Treaty between the Kingdom of Norway and the Russian Federation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Cooperation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이하 2010 Treaty)

358) 2010 Treaty Article I.

359) 분쟁해역은 노르웨이가 주장하는 동쪽중간선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Sector line의 사이로서 그 면적은 175,000km<sup>2</sup>이다.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며 협정 체결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양국 간의 Varangerfjord 해역에서의 2007년 해양경계협정을 참고하였다. 또한 바렌츠해에서의 특별한 경제적 중요성 및 양국의 전통적인 어업활동을 고려하였으며 국제법에 따라 북극해와 바렌츠해의 생물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연안국들의 책임과 그들의 주요 이익을 상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양국의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의 중요성을 본 협정에서 강조하였다.<sup>360)</sup>

협정 내용에 따라 설정된 양국 간의 해양경계선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단일해양경계선이며 그 경계선은 노르웨이가 주장하는 중간선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Sector line의 사이에 설정되었다. 동 경계선의 특징은 러시아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선을 넘어서 설정되었으며<sup>361)</sup>, 반면에 노르웨이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선의 안쪽에 설정되었다. 또한 어업문제를 동 협정과는 별개로 두었으며 이를 부속서에 명기하였다.

### III. 검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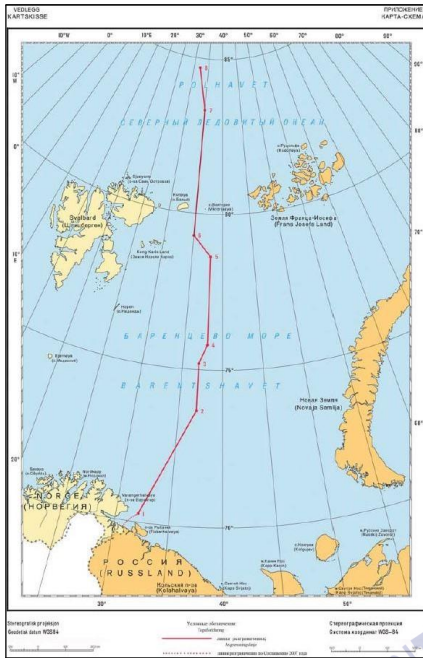
바렌츠해와 북극해에 걸쳐있는 양국 간의 해역에 체결된 해양경계협정은 경계획정에 대한 뚜렷한 원칙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북극해에 대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양국이 사법기관이 아닌 협의를 통하여 해양경계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수의 협정들이 그렇듯이 동 협정 또한 협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양국이 주고받았으며 해양경계협정에 영향을 끼친 사항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협정의 내용과 양국이 발표한 공동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동북아 해역의 국가들이 해양경계획정을 할 경우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협정 당사국들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어떠한 원리와 원칙에 바탕을 두었는지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2010년 공동선언<sup>362)</sup>에서 명시한 것처럼 국제법에 따라 이루었다고 하였으며 동 협정 전문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을 참고하였다고 하였다.<sup>363)</sup> 그러나 동 협정의 내용에 따른 양국이 주

360) 2010 Treaty 전문.

361) 2010 Treaty Article 3.

362) Joint Statement on maritime delimitation and cooperation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statement\\_delimitation/id601983/](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statement_delimitation/id601983/).



<표 6>

양자협정사례(노르웨이와 러시아) 출처: 노르웨이 외교부 사이트

장하는 해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선은 최근의 사법기관이 발전시켜온 해양경계획정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단지 양국의 공동 선언의 내용에서 양국의 해안선 길이가 주요한 불균형의 요소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협정 체결 시 공동 선언에서 명시된 양국의 오랜 시간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이룬 성과와 동 협정 전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평화적 해결을 우선시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국은 협정에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단일해양경계선을 설정하였으며, 동 경계선은 러시아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에 존 재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대륙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의 규

정에 따라 각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된다고 하였으나<sup>364)</sup> 협정에 의한 경계선은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이원의 해역에 대하여 러시아에게 더 넓은 해역을 할당하였다. 또한 위의 할당에 따라 러시아는 노르웨이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위치하는 해역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와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권리는 동 협정에 의해서 성립될 뿐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확장을 성립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65)</sup>

셋째, 협정에 의한 해양경계선은 양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선에서 중첩되는 해역을 양분하는 결과로서 나타났다. 중첩된 해역의 양분이 각국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협정된 해양경계선이 각국이 주장했던 노르웨이의 중간선

363) 2010 Treaty, 전언.

364)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Summary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regard to the Submission made by Norway in respect of areas in the arctic ocean, the Barents sea and the Norwegian sea on 27 november 2006",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nor.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nor.htm)

365) 2010 Treaty Article 3.

과 러시아의 Sector line의 중간선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볼 때<sup>366)</sup> 나뉜 해역은 서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동 협정은 어업문제와는 별도로임을 나타냄으로서 기존에 양국이 유지하는 어업관계를 존중하였다.<sup>367)</sup> 이는 현재 한·중·일 3국이 해양경계협정 체결 전에 이룬 어업협정을 유지하면서 해양경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동 협정에서 양국은 탄화수소의 자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부속서에서 더욱 자세히 기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탄화수소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대륙붕을 공유하는 양국은 탄화수소 자원이 경계선을 가로 질러서 존재하는 경우에 동 협정의 “부속서 II”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양국이 공유하는 대륙붕에 존재하는 탄화수소 매장물의 매장지역에 대하여 각국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동 협정에 기술하였다.<sup>368)</sup> 이는 해양경계협정 시 어업문제처럼 협정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미래의 해결과제로 남겨두고 현 시점에 해양경계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북아해역에서 한·중·일 3국이 해양 경계를 획정할 경우 단일 대륙붕의 공유로 인한 자원 개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조항으로 여길만하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의 해양경계협정이 협정으로 체결될 시 위 사항들은 참고할만한 사항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바렌츠해와 북극해에서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해양경계협정협정은 동북아해역에서 한·중·일 3국이 해결하지 못한 해양경계협정에 대한 접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 협정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체결되었던 점은 동북아해역에 한·중·일 3국이 현재까지 이루어온 성과를 고려하여 해양경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예시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협의로서 해양경계협정을 이룰 경우에 상기 협정과정을 자세히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사료된다.

---

366) Øystein Jensen, “Current Legal Developments The Barents Sea”,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6 Issue 1(2011), p.153.

367) 2010 Treaty Annex I, “Fisheries matters”.

368) 2010 Treaty Article 5.

## 제5장 동북아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방안

### 제1절 사법기관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해결 방안

#### I. 해양경계획정의 방법

동북아 해역에 존재하는 한국, 중국, 일본은 해양경계선에 대하여 각국의 이익 확대를 바탕으로 더 넓은 해역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주변국과 중간선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오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각 해당 해역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계획정 시 고려해야 할 관련 사정 또한 각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포장하고 있다. 즉 해양경계선에 대한 각국의 주장은 정해진 절차에 의한 정당한 주장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사법기관에 의한 해결의 첫 번째는 해양경계획정의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에 따라 해양경계획정을 진행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양경계획정 방법과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사법기관의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3단계(three stage)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J와 ITLOS역시 3단계 방법으로 해양경계획정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동북아 해역에서의 해양경계선 획정의 문제가 사법기관에 의해 해결이 된다면 다수의 판례 및 최근의 판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3단계 방법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 II. 해양경계획정 원칙

사법기관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단계 방법에 의해 진행이 되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해양경계획정 원칙이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북아 해역의 주변 국가들의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큰 쟁점은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있고 그러한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부가적인 쟁점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동북아 해역에 존재하는 국가 간의 해양경계획정 원칙은 중간선 원칙과 자연연장의 원칙의 대립이 가장 큰 쟁점이고 부가적인 사항으로 섬에 대한 효과 부여 정



도와 영유권 문제, 기점 및 기선의 문제이다.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상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서로 대항하는 국가 간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면 중간선 원칙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면에 중국은 자연연장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국제적인 판례는 이 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륙붕의 경계획정 시에 해저지질과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계획정을 시행한다는 것이다.<sup>369)</sup> 국제 판례의 경향이 대항하는 국가 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경우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동중국해에서 일본을 상대로 주장하는 자연연장 원칙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 중요한 점은 국제사법기관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상 대륙붕 제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sup>370)</sup>,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 설정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400해리 이내의 대항하는 국가 간에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하여 200해리 이원의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이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되면 동북아 해역의 주변국 간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만큼 자연스럽게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하나의 경계선을 따를 것이다. 이러한 단일경계선의 설정은 최근의 해양경계선 획정 사건의 일반적인 경향이며<sup>371)</sup>, 사건 관련국 중 어느 한 당사국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관련 재판소는 이를 부인하였다.<sup>372)</sup>

369)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 I.C.J. Reports 1982, p.53. para. 61.,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p.46~47, para. 60., Bay of Bengal Case, ITLOS, 2012, para. 322.

370) 유엔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규정은 제5장에서 대륙붕에 관한 규정은 제6장에서 별도로 기술되어 있다. 참조: 유엔해양법협약 제5장 및 제6장.

371)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v. Ukraine), I.C.J. Reports 2009;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Bay of Bengal Case, ITLOS 2012; Maritime Dispute(Peru v. Chile), I.C.J. Reports 2014. 단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해양경계획정 사건의 판결에서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하여 재판소는 그 권위를 인정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계획정 문제와 비교 시에는 200해리 이내의 경계선만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계선 획정은 각국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200해리 이원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372)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니카라과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하였으나 재판소는 이를 거부하였다.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위와 같이 사법기관에 의해 해결된 해양경계획정의 사례를 볼 때 사법기관에 의한 동북아 해역 주변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은 각국이 주장하는 경계선 보다는 판례에 의해 널리 인정된 원칙인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국간 400해리 이내에 존재하는 동북아 해역 주변국들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 하나의 경계선으로 설정하는 단일경계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III. 관련 사정의 고려

해양경계선 설정에 있어서 방법과 원칙은 앞에서 다루었으니 동북아 해역 주변국들이 주장하는 관련사정, 즉 해양경계획정 시 중간선/등거리선의 설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법기관은 해양분쟁 해결 시 위와 같이 중간선/등거리선의 설정에 영향을 주는 쟁점들을 관련 사정으로 보았으며 이를 해양경계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필요로 하는 사항 여부를 판결해왔다. 위와 관련하여 경계선 설정 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점 및 기선 설정, 도서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점 및 기선의 경우 일본은 1996년 06월 14일 기존의 영해법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선의 획정에 대하여 직선기선<sup>373)</sup>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의 기점은 194개, 직선기선은 165개이며 설정된 직선기선 중 직선기선의 거리가 1해리 미만은 65개, 3해리 미만은 18개로서 직선기선 전체의 50%를 넘는다.<sup>374)</sup>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은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sup>375)</sup>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조에 따라 통상기선을 적용하였으나 특수한 지리적 성질을 가지는 남해와 서해에 대해서는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하였다. 한국이 설정한 직선기점은 총 23개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기선의 설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선기선은 통상기선에 비하여 영해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sup>376)</sup>

Colombia), I.C.J. Reports 2012, paras. 125~131.

373)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직선기선)

374) 김백수·최윤수·박병문·전창동, 앞의 논문, 335쪽.

375)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각론), 36쪽~42쪽.

376) “통상기선의 영해는 해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인데 비해 직선기선의 영해는 외곽도서를 기점으로 삼아 12해리를 긋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해가 넓어진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 시에도 그만큼 중간선을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김백수·최윤수·박병문·전창동, 앞의 논문, 338쪽.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이 과도하게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을 따르지 않는 직선기선의 적용은 결국 해양영토 확장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에 대하여 우리나라와의 해양경계획정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하여 일본이 설정한 전체의 직선기선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적합한 직선기선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도서와 관련하여 양국이 주장하는 내용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이 독도에 대하여 기점으로서 동해에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독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을 주장하는 것과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보면 양국은 도서에 대한 입장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기 예에서 독도와 오키노토리시마를 살펴보면 상기 도서가 과연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예외로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향유할 수 있는 도서인지 의문스럽다.<sup>377)</sup>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상기 도서에 대하여 완전한 효과<sup>378)</sup>, 부분 효과<sup>379)</sup>, 효과를 부인한 경우<sup>380)</sup>로 나뉜다. 2006년 05월 한국

377)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도서제도)

378) 1974년 인도와 인도네시아 경계협정(Pulau Benggala), 1977년 미국과 쿠바의 해양경계협정(모든 바위섬과 섬에 완전한 기점 설정), 1983년 프랑스와 피지의 해양경계협정(Theva-i-Ra, Hunter Island), 1983년 프랑스와 영국의 해양경계협정(Oeno Island),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해양경계협정(Ball's Pyramid)

379) 사람이 거주하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의 해양관할권을 고려하여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지 못하는 섬의 예로는 “영국해협의 Jersey와 Guernesey, 튀니지 근해의 Kerkenna, 메인만의 Seal”를 들 수 있다. Jon M. Van Dyke, “The Role of Islands in Delimiting Maritime Zones: The Case of the Aegean Sea,” *Ocean Yearbook*, vol.8(1989), p.64.; 가장 최근의 관련 판례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St.Martin’s 섬에 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서 동 섬에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획정 선의 부당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련사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선을 그리는데 있어서 그 섬에 어떠한 효과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Bay of Bengal Case, ITLOS 2012, paras. 318~319.

38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ICJ Reports 1969, p.36, para. 57.; “ICJ는 경계 획정선을 결정함에 있어 ‘islets, rocks and minor coastal projections’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Cas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Can/U.S.), ICJ Reports 1984. pp.329, 332, paras. 201, 210.; “ICJ는 연안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고립된 바위섬’ (isolated rock)은 ‘대수롭지 않은 지리적 요소’(minor geographical features)로서 무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48, para. 64.; “ICJ는 잠정적 중간선을 설정함에 있어 사람이 살지 않는 몰타의 바위섬인 ‘Filfla’를 고려하는 것은 형평하지 못하다고 판결하였다.”, Black Sea Case, ICJ Reports 2009, p.45, para. 149.; “ICJ는 세르팡섬에 대하여 본토로부터 20해리나 떨어져 있는 외딴 섬으로 우크라이나의 연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기점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권원은 본토

은 울릉도와 오키도를 기점으로 하는 해양경계선을 주장하였던 것을 독도와 오키도를 기점으로 하는 해양경계선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상기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까닭은 알 수 없으나 독도에 대하여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독도를 암석이 아닌 섬으로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본으로 하여금 동중국해에서 단조군도와 토리시마에 기점 설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오키노토리시마에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고 350해리의 대륙붕 권원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다소 찬성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어찌되었든 독도를 섬으로 여긴다면 일본은 단조군도와 토리시마에 기점을 설정하여<sup>381)</sup>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해역은 줄어들 것이고 대신에 동해에서는 다소 더 넓은 해역을 영유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오키노토리시마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인하여 약 40만km<sup>2</sup> 달하는 해역을 일본에게 넘겨줘야 할 것이다.<sup>382)</sup> 그러나 도서와 관련한 국제사법기관의 판례를 고려할 때<sup>383)</sup> 독도를 해양경계획정의 기점으로서 완전한 효과를 부여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한 가장 적절한 최근 판례는 앞에서 살펴본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과 2012년 ICJ가 판결한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일 것이다. ICJ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에서 세르팡섬에 대하여 기점 설정을 부인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에서는 작은 섬들이 관련 해역 내에서 발생시키는 해역에 대한 어떠한 권원은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의 섬들에 의해 발생하는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권원과 중첩되기 때문에 작은 섬들에 대한 명확한 지위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곧 울릉도에 의해 발생하는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권원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독도 기점에 대한 주장은 동해해역에서만 이로울 뿐 동중국해와 오키노토리시마의 배타적경제수역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주장이 아니며 위와 같은

에서 생성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동 섬을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할 관련사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381) 이창위, 앞의 논문(일본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216쪽.

382) 강종희,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관할권확대 전략과 우리나라 대응방안」(서울: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89쪽.; “내용에 따르면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일본은 일본 영토 면적 37만km<sup>2</sup> 보다도 넓은 40만km<sup>2</sup>의 해역을 향유하게 된다.”

383) 김석균, “국제판례를 통해 본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소고”, 「해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2009.3), 240~241쪽.

최근의 ICJ와 ITLOS의 판례를 볼 때 완전한 효과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sup>384)</sup> 따라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동해해역에 쟁점이 되고 있는 도서문제에 대하여 효과를 부인하고(zero effect) 일본의 단조군도와 토리시마 그리고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하여 어떠한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에 반대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해해역에서 해양경계획정은 울릉도와 오키도를 기점으로 하는 경계선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분쟁 시도는 손해볼 것이 없는 도전이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손해볼 것 없는 일본의 시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므로 이번 기회에 독도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와 자료를 확보하여 동쪽 끝단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해역을 지키는 독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울릉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독도센터 설립과 해군기지의 설립 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sup>385)</sup>

중국은 한국과의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자연연장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지만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중국과 해안을 서로 인접하고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국가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중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라 합의를 하여 경계선을 확정한다고 하였다.<sup>386)</sup> 이러한 형평원칙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은 관련 사정으로서 해안선의 형상이나 길이의 비율, 도서의 존재, 항구 등 지리적 요인과 지질 및 지형적 요인, 당사국의 행위, 제3국의 이익, 천연자원에 대한 평등한 이용 등을 내세우며 이를 경계획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긴다.<sup>387)</sup>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는 요소들은 한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관련 사정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해안선의 형상은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보다 매끄러우며, 양국 간 해안선 길이의 비율 차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 간 분쟁 중인 도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오히려 중국과 일본의 문제에 해

384) 두 사건의 판결에서 ICJ와 ITLOS는 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명시적 언급을 피하였다.

385)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내용은 「독도 영유권 분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이진호저)를 참조.

386) 외교통상부 조약국,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서울:(주)일조각, 2006), 410쪽.

387) 沈文周 主編, 「海洋劃界技術方法」(北京: 海洋出版社, 2003), pp.94~102.

당된다. 무엇보다도 관련 해역의 지리적 요인과 지형적 요인을 관련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법기관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sup>388)</sup> 나머지 사항들은 부차적인 사항으로서 당사국의 행위와 제3국의 이익, 천연자원에 대한 평등한 이용 등은 한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국의 기점 및 기선의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형평원칙을 내세우며 관련 사정으로서 주장하는 사항들은 이미 국제 판례에서 많이 다루었던 사항들이고 그를 통하여 그러한 사항들이 해양경계획정의 결과에 끼치는 영향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의 기초 작업이 될 기점 및 기선의 설정에 불법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sup>389)</sup> 제3조에 따라서 영해의 폭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이며, 영해기준선은 직선기선방법에 의해 확정된다고 하였다. 동 법률에 따르면 통상기선의 내용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직선기선만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총 49개의 기점과 28개의 직선기선을 1996년 05월 15일 “영해의 직선기선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선언”을 통하여 공표하였다. 중국의 기점 및 기선의 설정의 행위는 자국의 해역에 산재하는 섬들 중 가장 최외곽의 섬에 기점을 설정하고 그 기점들을 연결하여 만든 직선기선의 외측 12해리를 영해로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중국이 발표한 기점 49개중에는 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기점들이 주변국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sup>390)</sup> 위와 같은 중국의 기점과 직선기선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며<sup>391)</sup>, 결과적으로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더 넓은

388)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 I.C.J. Reports 1982, p.53. para. 61.,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Malta), I.C.J. Reports 1985, pp.46-47, para. 60., Bay of Bengal Case, ITLOS 2012, para. 322.

389)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5호: 1992년 02월 25일 제7차 중국인민대표자 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당일 공포됨으로써 발효 됨. 외교통상부 조약국, 앞의 책, 386쪽.

390) 기점 9번과 10번은 등대나 기타 여구 구조물도 없는 단순한 모래톱(tidal flats)에 불과하다. PRC, China Navigation Press[Zhongguo Hanghai Tushuchubanshe], ‘Bo hai, Huang Hai, and Dong Hai’, chart 9201, 1:2,000,000, August 1976.; U.S. Defense Mapping Agency, ‘Lingui to Juehang’, chart 94260, 1:300,000, 5th ed., 26 August 1995.

391)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에 기술된 ‘직선기선’은 통상기선의 예외규정이며, 국제사법기관의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직선기선을 ‘특수한 경우에 대한 일반국제법의 적용’으로 보았으며 기선의 설정은 명백한 남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적절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이 설정한 직선기선 중 몇몇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직선기선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김현수, 앞의 책(해양법각론), 31~33쪽, 45~51쪽.

해역을 차지하기 위한 행위로 여겨질 것이다.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은 국제법 기초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시 반드시 설정된 기점과 직선기선의 쟁점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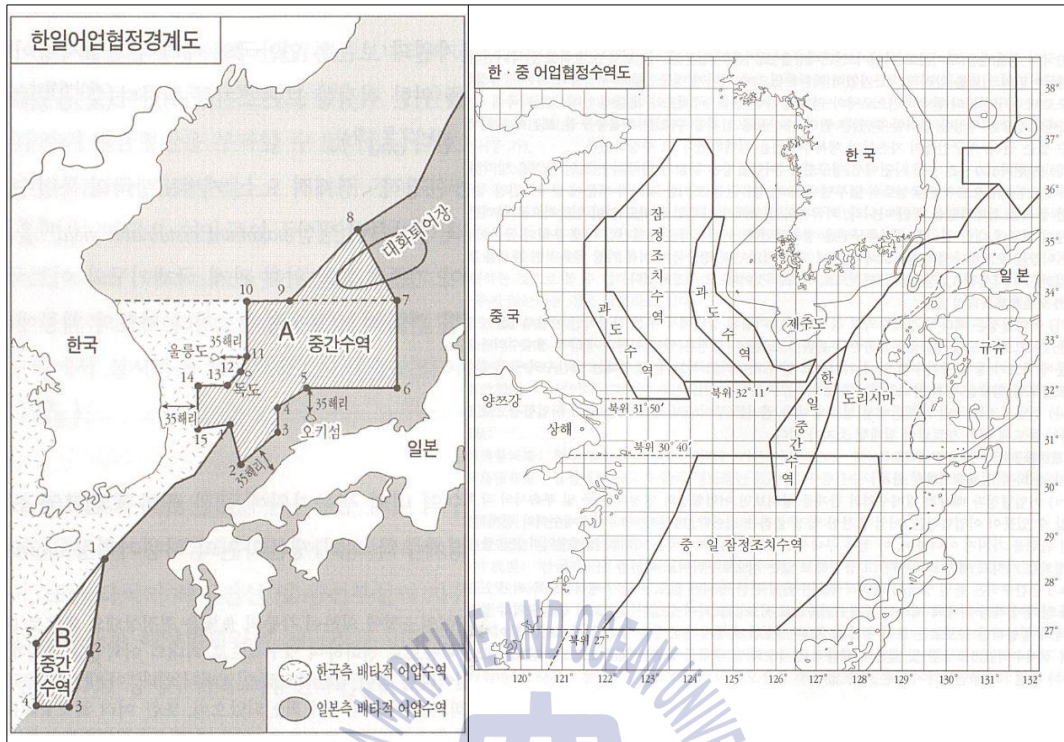
최근 중국의 행동을 볼 때 한국이 앞으로 이어도<sup>392)</sup>를 기점으로 해양경계획정을 주장하는 것을 우려하거나 또는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은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도는 명백하게 만조 시에 수면 하에 존재하는 수중암초이므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향유할 수 없으므로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변국에 그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해양관할권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어도를 기준으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한다면 주변국과 또 다른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분쟁을 가속화 시킬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국제사법기관의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 제2절 양자협정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해결 방안

### I. 어업협정

동북아 해역 주변국들은 해양경계획정 체결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당사국들 간에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이 주변국들과 체결한 어업협정은 해양경계선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해양경계획정의 과도적 협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협정의 내용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고 동 협정에 나타난 잠정조치수역과 중간수역을 제외

392) “이어도“는 동중국해와 서해의 남단이 교차하는 북위 32도 07분 32초, 동경 125도 10분 58초에 위치하며, 한국의 최남단 마라도로부터 약149km떨어져 있다. 또한 동서 1.4km, 남북 1.8km에 이르는 타원형의 수중 암초이고 주변 해역의 평균수심은 50m이지만 이어도의 정상은 해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에 잠겨 있어 파도가 심할 때면 해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현재 2003년 06월에 완공된 해양과학기지가 운영되고 있다.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JPI정책포럼 세미나 발표자료(2012.03), 2쪽.



<표 7> 한국과 중·일의 어업협정

출처: 이병조·이중범 공저, 「국제법신강」, (서울:(주)일조각, 2008), 506~511쪽.

한 협정수역은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과 주변국이 체결한 어업협정의 내용<sup>393)</sup>이 상기와 같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일본과 중국이 체결한 어업협정 역시 그 내용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사국들 간의 해양경계획정 협정 시에 어업협정을 배제하고 체결하는 것은 그 동안의 협상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어업협정을 무시하고 새로이 주변국들과 협상을 통하여 경계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현재의 어업협정의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도 없고 이 점은 주변국들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경계선 획정에 관한 협상의 새로운 접근은 현재 당사국들의 학자들이 거론하는 모든 문제들이 표면으로 나와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당사국들 간의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며 현재보다도 더욱 치열한 대립각을 세울 것이다. 이는 곧 해

393) 한국이 주변국과 체결한 협정에는 한일 대륙붕협정과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이 있으며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에는 중·일어업협정이 있다.



양경계획정이 당사국들 간의 평화적인 협정에 의한 해결보다는 사법기관에 의한 해결의 길을 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해역 주변국들은 현재까지의 협상의 결과를 존중하고 그 결과물인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당사국들의 주장내용을 서로 존중하여 해양경계획정을 이루는 것이 협정을 통한 방법으로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II. 해양경계협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해역 주변국인 중국은 베트남과 양자 협정을 통하여 관련 해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하였으며 동북아 해역 주변국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러시아와 노르웨이 역시 평화적으로 사법기관이 아닌 당사국간 협정을 통하여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하였다. 동북아 해역 주변국 역시 위와 같이 당사국 간의 대화를 통하여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해하여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을 통한 해결 보다는 우선적인 해양경계획정의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정을 통한 해양경계획정일지라도 근본적인 문제인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이나 해양경계선의 기준이 되는 사항인 기점 및 기선의 문제는 결국 협상 과정에서 표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법기관에 의해 해결된 해양경계획정 사례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동북아 해역 주변국들이 주장하는 해양경계선은 결국 자원 및 항로 확보, 자국의 안전 유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일제 침략시기에서 해방되는 시절에 명확하지 않은 도서 처리로 인하여 실제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 주변국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해양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협약의 내용이 조금씩 변함에 따라 그 해석에 있어서 당사국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해양경계선을 주장하거나 협약의 내용이 앞으로 당사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양경계획정을 미룸으로서 주변국들의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해역 주변국들은 위와 같은 상황속에서도 사법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양경계획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모습은 주변국들과 그 동안 이루어

은 협상 과정과 체결된 어업협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중국과 베트남 간의 해양경계협정과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의 해양경계협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자협정은 당사국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동북아 해역 주변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오랜 동안 해양경계협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법기관이 아닌 협정으로 해양경계확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동북아 해역의 주변국들이 협정을 통하여 해양경계확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점은 과거 협상의 내용을 존중하고 해양경계선의 기본 확인 사항인 기점이나 기선의 내용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해양경계선을 고려하여 서로 절충하였던 점이다.<sup>394)</sup> 이로 미루어 볼 때 동북아 해역 주변국들 간의 해양경계선 확정은 현재까지 이루어낸 협상의 결과를 존중하고 각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절충하여 미 해결해역에 대하여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바람직하다 하겠다.



---

394) 노르웨이와 러시아간 경계선의 출발점은 과거 협정으로 맺어진 경계선에서 시작하였으며 각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의 중간선이 해양 경계선과 거의 일치하였다.

## 제6장 결론

동북아 해역의 국가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한국, 중국, 일본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양관할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더욱이 3국이 서로 대항하고 그 거리가 400해리 이내로서 서로 중첩해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양관할권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달라 해양경계획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해양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해야 할 중국은 부적절한 기점설정과 직선기선의 적용, 형평의 원칙, 자연연장의 원칙 등을 내세우며 더 넓은 해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경계획정을 맺어야 할 일본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을 해양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중국과 같은 부적절한 기점 설정 및 직선기선의 적용 문제를 지니고 있다. 국가 간의 분쟁 또는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국의 주장을 지키기 위하여 자원 소모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북한의 분단은 서로의 국방력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냈으며 그에 따라 자원 소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동북아 해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한·중·일 3국은 가급적 평화적인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법과 원칙으로 동북아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해결 방법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사국들이 합의를 통하여 또는 국제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해양경계획정을 위해서 어떠한 해결 방법을 택하든 3국은 다수의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와 당사국들이 체결한 협정을 바탕으로 경계획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3국의 경계획정에 대한 문제점과 당사국들이 체결한 협정, 국제사법기관의 최근 판례, 양자 협정 사례를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기관의 판례는 400해리 이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하여 뚜렷하게 거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자연연장의 원칙은 그 중요성이 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 상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상기 두 구역의 해양경계선을 달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의 경향이 400해리 이내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단일경계선을 추구하고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판례로서 기준을 확립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유엔해양법협약을 자국 중심으로 해석·적용하는 각 국의 광활한 해양관할권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다수의 판례에서 해양경계획정의 방법과 원칙으로서 3단계(three stage) 방법<sup>395)</sup>을 사용하고 있고, 이 3단계 방법에서 해양경계선 설정에 적용되는 원칙은 중간선/등거리선의 원칙이므로 자연연장의 원칙은 그 중요성이 더욱 약해질 것이다. 그에 따라 한·일 양국이 체결한 대륙붕 협정은 2028년 그 효력이 다하는데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의 경향으로 볼 때 일본이 그 협정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그 협정을 바탕으로 해양경계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를 근거로 자연연장의 원칙을 주장하여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달리하려는 주장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형평의 원칙과 자연연장의 원칙을 내세워 보다 넓은 해역을 향유하려는 시도는 해양경계획정의 일반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다.

동북아해역에서의 3국이 관련된 해양경계협정은 중국이 베트남의 대륙붕 경계협정과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경계협정이 있으며, 두 협정에서 3국의 해양경계획정의 입장을 알 수 있는데 중국은 베트남과의 경계획정에서 관련 해역에 대한 양국의 상호주의 관점에 근거하여 우호적 합의로서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국의 거리가 100~180해리 이내로서 서로의 중첩해역이 발생하나 해안선 길이의 비례성을 관련 사정으로 고려하여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단일경계선을 설정하였다. 베트남과 중국의 관련 해역은 단일대륙붕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황해에서 중국은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대륙붕 협정은 동해와 동중국해에 적용되며 당시의 경계선은 중간선원칙을 따랐으나 동중국해에서 한국이 자연연장의 원칙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를 근거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함으로써 그 해역에 대한 경계획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였으며 동해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그 주변 해역에 대한 경계획정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상기 대륙붕 협정 체결 후 동북아 해역에서 한·중·일 3국은 서로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동 협정이 어업에 관한

395) 첫 번째 단계에서 잠정적 경계선을 설정, 두 번째 단계에서 공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의 이동 또는 조정이 필요한 어떤 관련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등거리선/중간선을 이동 또는 조정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 불균형심사를 통하여 당사국들의 개별적 할당이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는지를 평가한다.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계획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협정으로서 당사국들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한·중어업협정은 관련 해역을 반으로 나누는 가상선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과도수역, 잠정조치수역으로 구분되었으며 현재 잠정조치수역만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나머지 두 구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각각 포함되었다. 상기의 협정 내용과 두 협정이 3국이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한 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시작된 협상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 동북아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을 어업협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중간수역과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을 이룸으로서 3국의 경계획정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동북아 해역의 3국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을 각국이 체결한 대륙붕 협정과 어업협정에 나타내었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해역을 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자연연장의 원칙은 국제사법기관의 다수의 판례를 고려했을 때 설득력이 없고, 자연연장의 원칙이 통하였던 시기는 한·일 대륙붕 협정 체결 당시와 그 이전임을 고려했을 때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 상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제도를 분리하여 기술하였을지라도 당사국 간 400해리 이내의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은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이 합당할 것이다. 만약 국가 간 400해리 이내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자연연장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계획정 할 경우 어느 한 국가에게는 그 사항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평한 해결을 추구해야 하는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다수의 판례에서 인정되고 동북아 해역의 관련국들이 체결한 협정에서 인정되었던 중간선/등거리선의 원칙에 따라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단일경계선의 해양경계획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관련 사정에 관련하여 특히 중국은 다양한 사항을 언급하며 관련 사정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다수의 국제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일본과 중국이 설정한 기점과 부적절한 직선기선의 적용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은 도서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하여 광활한 해역을 자국의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도서들 중에는 상기 구역의 설정에 부적합한 도서들도 존재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 주변국과 관련이 없는 태평양 도서들에 대하여 상기 구역의 설정을 통해 광활한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국제 판례에 따르면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섬에 대하여 설령 사람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섬에 대하여 완전한 효과 보다는 제한 효과 또는 효과를 전혀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들을 통하여 해양관할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해양경계획정 시에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북아해역에서 서로 대항하는 위치에 있는 한·중·일 3국은 서로의 주장이 상이하더라도 관련 협정<sup>396)</sup>을 체결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이루었다. 이처럼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평화적 해결은 그 어떤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해양경계획정 관련 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체결한 협정의 결과를 존중하여 미해결된 해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미해결된 해역에 대하여 관련국들은 해양경계획정 사건과 관련한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에서 널리 인정된 3단계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판례를 비롯하여 관련국들의 주변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나타난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에 따라서 경계획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400해리 이내의 거리에서 해양경계획정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하나로 하는 단일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단계 방법의 진행과정에서 설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필요로 하는 관련 요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확대하고자 자국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련 법규를 해석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당사국들과 해양분쟁을 야기하므로 무시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해역에 주변국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국가들이고 이들의 해양관련 활동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선도적이고 적극적이며 특히 동북아해역의 한·중·일 3국은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러나 대륙붕 협정과 어업협정으로 이어지는 평화적인 해결자세와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에서 널리 인정된 3단계 방법에 따른 경계획정을 통하여 공평하고 올바른 경계획정을 이루어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입국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96) 중국과 베트남간의 대륙붕협정,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협정,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정, 한국과 일본의 어업협정, 일본과 중국의 어업협정.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1) 단행본

-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서울 : (주)북21, 2004.
- 김웅서·강성현, 「해양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안산 : 계백북스, 2012.
- 김현수, 「세계도서 영유권 분쟁과 독도」, 서울 : 연경문화사, 2009.
- 김현수, 「해양법총론」, 서울 : 청목출판사, 2010.
- 김현수, 「해양법각론」, 서울 : 청목출판사, 2010.
- 박찬호·이석용,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I」, 서울 : 해양수산부, 2005.
-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Ⅲ」, 서울 : 해양수산부, 2005.
-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법분쟁사례연구종합 V」, 서울 : 해양수산부, 2006.
-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법분쟁사례연구Ⅳ」, 서울 : 해양수산부, 2006.
- 울릉군편찬위원회, 「울릉군지」, 경상북도 : 울릉군청, 2007.
- 이석우 외,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 : 학영사, 2005.
- 이진호, 「독도 영유권 분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경기도 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2011.
- 李廷旭,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외교통상부 조약국,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서울 : (주)일조각, 2006.
- 최원목, 「국제법기본자료집」,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沈.文周 主編, 「海洋劃界技述方法」, 北京 : 海洋出版社, 2003.
- 강종희,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관할권확대 전략과 우리나라 대응방안」,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 2) 논문

- 강효백, “한-중 해양경계 획정문제-이어도를 중심으로-”, 「제86차 중국학연구회 정기 학술발표회」, 중국학연구회, 2008.
- 독도본부,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우리영토, 2007.
- 김백수·최윤수·박병문·정찬동, “한반도 주변의 영해기점 및 기선에 관한 연구-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GIS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GIS학회, 2008.11.
- 김석균, “국제관례를 통해 본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소고”, 「해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09.03.
- 김여선,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이어도 연구 학술세미나, 2009.12.
- 김용환, “중국의 해양경계선과 그 획정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해양정책연구」 제23권 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 김형수, “독도를 고려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6.
- 박찬호, “섬의 국제법상 지위 : 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2.10.
- 백진현, “海洋境界劃定原則의 변천과 韓半島 周邊海域의 境界問題”, 「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1.04.
- 三好正弘, “日韓大陸棚共同開發協定と國連海洋法條約”,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89호, 대한국제법학회, 2001.
- 양희철,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경계획정 추진 방향”, 한국해양조사협회 발표자료, 2010.11.
- 양희철, “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12.09.
- 예병환, “러시아-노르웨이 해양분쟁과 바렌츠해 조약”,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제14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06.
- 이석용, “국제사법재판소의 흑해해양경계획정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징 분석”, 「서울법학」, 제20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1.
- 이석용, “우리나라와 중국간 해양경계획정”,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7.08.
- 이석용, “ITLOS의 뱅갈만 해양경계획정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징 분석”, 「강원대학교 강원법학」 제3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06.
- 이창위, “일본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45권 제2호, 대



한국제법학회, 2009.08.

이창위,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제17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11.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JPI정책포럼」 No.2012-04, 제주평화연구원, 2012.03.

최진모, “중국-베트남간 통킹만 어업협정 및 해양경계협정 사례에 관한 소고”, 「해양정책연구」 제21권 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 2. 국외문헌

### 1) 단행본

Alex G. Oude Elferink and Donald R. Rothwell, *The Law of the Sea and Polar Maritime Delimitation and Jurisdiction*, The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1.

Elihu Lauterpacht & Christopher J. Greenwood, *International Law Report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139(2011.01.)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Limits and Ocean and Sea*, Bremerhaven : IHO, 3rd. ed., 1953.

Jeanette Greenfield,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Oxford : Clarendon Press, 1992.

Robert Kolb, *Case Law on Equitable Maritime Delimitation : Digest and Commentaries*, The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Satya N. Nandan and Shabtai Rosenn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82 A Commentary Vol II*, The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 2) 논문

K. P. Beauchamp. "The Management Function of the Ocean Boundaries". *San Diego Law Review*, University of San Diego law school, vol.23., 1986.

- Nguyen Hong Thao, "Maritime Delimitation and Fishery Cooperation in the Tonkin Gulf",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36., 2005.
- Park C.H., "Continental Shelf Issues in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Occasional Papers*, No.15., 1972.
- Øystein Jensen, "Current Legal Developments The Barents Sea",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6 Issue 1., 2011.
- Robin Churchill, "The Bangladesh/Myanmar Case : Continuity and Novelty in the La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Cambridg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1 No.1., 2012.
- Tanaka Yoshifumi,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Proportionality in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16 Issue 3., 2001.
- Thilno Neumann, "Norway and Russia Agree on Maritime Boundary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14 Issue 34.,(2010)
- Zou keyuan, "The Sino-Vietnamese Agreement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Gulf of Tonkin",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36 No.1., 2005.
- 梁熙喆, "從國際海洋劃界原則和實踐論中國EEZ與大陸架劃界問題 — 以黃海和東中國海劃界問題為中心 —", 國立臺灣大學教 博士學位論文, 2006.

### 3) 국제법원의 판례, 각종 보고서 및 선언서

- Decree of the Presidium of 6 February 1968 on the Continental Shelf  
ECAF(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Technical Bulletin(1969)
- Klett, Timothy R. and Gautier, Donald L., "Assessment of Undiscovered Petroleum Resources of the Barents Sea Shelf", U.S. Geological Survey Fact Sheet 2009-3037(2009).
- Limits in the Seas, No.106., 1987.
- PRC, China Navigation Press[Zhongguo Hanghai Tushuchubanshe], 'Bo hai, Huang Hai, and Dong Hai', chart 9201, 1:2,000,000, August 1976.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11 April 2006.

Royal Decree of 31 May 1963 Relating to the Sovereignty of Norway over  
the Sea-Bed and Subsoil outside the Norwegian Coast

U.S. Defense Mapping Agency, ‘Lingui to Juehang’, chart 94260, 1:300,000,  
5th ed., 26 August 199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일본 제2차 해양기본계획」, 정책연구소 정책자료 13-02,  
2013.

#### 4) 기사자료 및 기타 자료

대륙붕 보도자료, 대한민국외교통상부, 2012.12.26.

“그깃 섬이 뭔데…韓·中·日, 서로 먹겠다고”, 매일경제, 2012.09.21.

“韓·中 해양경계획정 회담 3년 만에 재개”, 세계일보, 2014.06.13.

“국제법 무시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시사저널, 1996.

“中이 이어도에, 日이 독도에 항모 보낸다면”, 조선일보, 2013.10.07.

“일본이 97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포함한 까닭”, OhmyNews, 2010.09.14.

<http://en.wikipedia.org/wiki/Haijiao>

[http://en.wikipedia.org/wiki/Sheshan\\_Island](http://en.wikipedia.org/wiki/Sheshan_Island)

<http://www.ieodo.kr/ieodo/ocean01.php>.

<http://www.ieodo.kr/ieodo/ieodo.php>.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statement\\_delimitation/id601983/](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statement_delimitation/id601983/)